“ 오늘을 여는 주인공, 청소년입니다! ”

제5대 성남시청소년행복의회

입법제안서

성남시청소년행복의회
Seongnam city Youth Happiness Council

성남시청소년재단
SEONGNAM CITY YOUTH FOUNDATION

“ 오늘을 여는 주인공, 청소년입니다! ”

제5대 성남시청소년행복의회

입법제안서

CONTENTS

1 성남시청소년행복의회 추진성과

- 성남시청소년행복의회란? 04
- 입법(정책)제안 및 반영현황 05
- 입법(정책)반영 절차 및 사례 06
- 의회 구성 및 선출방법 10
- 제5대 청소년의원 선거 12

2 제5대 성남시청소년행복의회 정책연구

- **[혁신특별위원회]** 「성남시청소년행복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 14
- **[예산심의특별위원회]** 「성남시 청소년 예산 검토 권한 부여」에 관한 제안 20
- **[보건의료 TFT]** 「성남시 초등학생 치과주치의 의료지원 조례」 개정 26
- **[보건의료 TFT]** 「성남시 학교 보건실 시설 지원 조례」 제정 32
- **[청소년 교통비 TFT]** 「성남시 청소년 교통비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36
- **[청소년 심리 TFT]** 「성남시 청소년 심리검사 지원 조례」 제정 42
- **[청소년 정치참여 TFT]** 「성남시 민주시민교육 조례」 개정 50
- **[청소년증 TFT]** 「성남시 청소년증 활성화 지원 조례」 제정 56
- **[문화지원금 TFT]** 「성남시 청소년 문화바우처 지원 조례」 제정 60
- **[올바른 성인식 TFT]** 「성남시 가출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조례」 제정 68
- **[올바른 성인식 TFT]** 「성남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개정 74
- **[학생회 연합 TFT]** 「성남시학생회연합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 82

제5대 성남시청소년행복의회

1. 추진성과

1. 추진성과

성남시청소년행복의회란?

구 분	내 용
추진배경	- 2014년 제9기 성남시청소년참여위원회(차세대위원회)에서 성남시 청소년 참여보장 방안으로 「성남시 청소년 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안 ⇒【정책반영】 2014. 11. 10. 경기도성남시조례-제2812호 「성남시청소년행복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
운영방향	- 【법적근거】 성남시조례 제2812호에 근거하여 성남시의 위탁을 받아 성남시청소년재단 (이사장 은수미)에서 운영 - 【청소년 의원 선출】 성남시 관내 14~19세의 청소년을 권역/교급별로 균등한 비율로 청소년 의원을 선출 - 【청소년의 의견 대변】 성남시 청소년의 의견을 대변하여 안전, 교육, 환경, 문화, 인권 등 청소년 관련 정책에 대해 의사 표명
조직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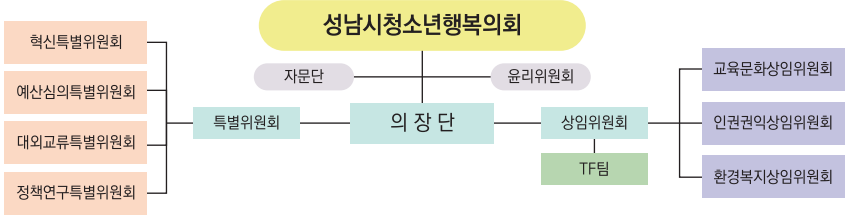

구 분	주요내용
의장단	- 의장(1), 부의장(2), 상임위원회(3), 특별위원회(4) 위원장 10명으로 구성
상임위원회	- 교육문화·인권권익·환경복지 분야에 관한 사안 심의
특별위원회	- 혁 신 : "행복의회"규정 검토 및 보완, 평가주관 - 예산심의 : 재단 예산 심의 및 검토 역할 추진 등 - 대외교류 : 의회홍보, 타 시도 교류, 관내 중·고 학생회 교류 등 - 정책연구 : 지역사회 청소년 의견수렴 및 정책제안창구 운영 및 관리 등
윤리위원회	- 의원의 표창과 징계에 관한 심사 - 각 위원회 별 윤리위원을 선출하여 7인 이내로 구성
TF팀	- 지역사회의 다양한 현안에 대한 정책의제 발굴 및 연구, 정책제안
자문단	- 청소년 정책 관련 의제발굴 및 정책제안 자문 - 「행복의회」 청소년 의원 의정활동(입법,의회운영) 관련 교육 - 「행복의회」 상임위원회 활동, 입법절차 등 의회운영 관련 자문 - 조례제정 및 정책제안 실현가능성 검토 등 - 구성 : 시의회 시의원, 지역언론인, 성남시 공무원 등

입법(정책)제안 및 반영현황

[지난 4년간 행복의회 입법(정책) 제안 비교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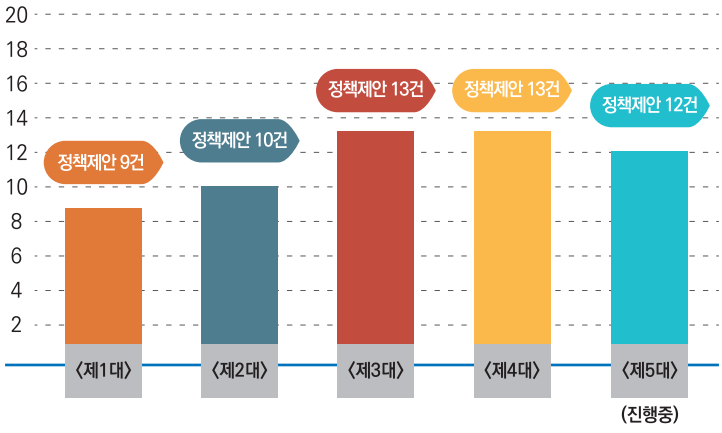

[지난 4년간 행복의회 입법(정책) 반영 비교추이]

입법(정책)반영 절차 및 사례

○ 【제1대 행복의회】 성남시조례 - 제3007호 성남시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조례 제정

「성남시 근로 청소년 인권 보호 및 근로환경 개선을 위한 제안」

· 청소년 노동 인권 보호 및 증진
· 성남시 청소년 노동인권 센터 설립 및 인권센터의 운영지원을 위한 운영위원회 구성
· 청소년 노동 인권 보호 증진 사업 추진(실태조사, 고용 사업장 점검, 노동인권 교육, 상담 등) 및 체계 구축

1. 추진경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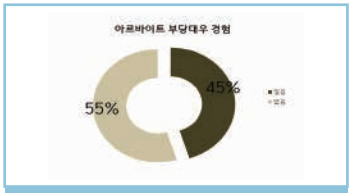

2015. 7. ~ 8. 전국 만 19세 ~ 24세
청소년 대상 실태조사 진행 (3,000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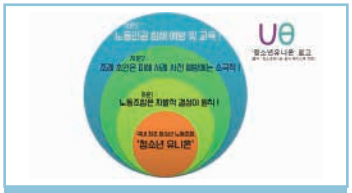

2015. 8. ~ 9. 노동조합
[청소년 유니온] 노동인권 관련 자문 의뢰

2016. 5. 7. 성남시의회 시의원간담회 및
정책 자문 및 피드백

2016. 5. 17. 제 1대 행복의회
본회의 의안발의

2016. 4. ~ 5. 입법청원활동 추진
성남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 및 市교육청소년과

2016. 6. 20. 성남시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 제정

2. 추진내용

구 분		내 용
2015. 7. ~ 8.	실태조사 진행	- 조사대상 : 전국의 만 19세~24세 청소년 - 표 본 수 : 3,000명 - 조사방법 : 이메일을 통합 웹서베이 - 조사내용 : 아르바이트 관련 기본 실태(근로조건, 임금수준, 부당처우경험), 노동인권 관련 교육 수준 - 조사결과 : • 45.3% 청소년들이 임금관련 부당대우 경험, • 노동인권교육 경험 없음(82.5%), 있음(17.5%)
2015. 8. ~ 9.	청소년 노동조합 [청소년유니온] 노동인권 자문	- 자문1: 노동조합은 자발적 결성이 원칙 - 자문2: 조례 초안은 피해 사례의 사전 예방적 측면에 소극적 - 자문3: 노동인권 침해 예방 및 교육의 필요성 - 자문내용을 기반으로 분과회의를 통해 정책연구 및 조례안 수정
2016. 5. 7.	성남시의회 시의원과의 간담회	성남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 지관근 위원장님과 노환인 시의원님과의 간담회를 통해 성남시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센터 설립 관련 정책제안서 전달 및 자문 요청

2016. 5. 17.	제1대 행복의회 본회의 의안발의	제1대 행복의회 본회의에서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센터설립, 운영위원회 구성, 청소년 노동인권 상담 및 구제 체계 구축 등의 내용을 담은 성남시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청소년 노동인권센터 설립 조례 발의
2016. 4. ~ 5.	입법청원활동 추진	성남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 소속 의원 및 市 교육청소년과를 방문하여 정책제안서 전달 및 입법을 제안하는 청원활동 추진
2016. 6. 20.	정책반영 조례제정	성남시조례 제3007호 「성남시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조례」 제정

○ 【제2~3대 행복의회】 성남시조례 - 제3212호 성남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제정

「청소년 정책 관련 예산 편성의 청소년 참여에 대한 제안」

▶ **시행 배경 :** 「지방재정법」과 「지방재정법 시행령」에 의거, 주민참여예산제를 실시함에 따라, 청소년과 관련된 정책의 예산 편성은 직접적인 당사자인 지방자치단체의 청소년들의 목소리를 듣고 의견을 반영하는 것이 타당하다. 선행 실시 중인 지방자치단체들 중 몇몇의 경우에는 청소년들에게 예산안 심의에 관한 전권을 위임해 운영하는 곳도 존재한다.

▶ **A방안 - ['성남시청소년행복의회'가 참여하는 방안]**

· 주민참여예산제 예산 심의를 위해 '주민참여예산위원회'를 설치
· 성남시청소년행복의회와 성남시청(예산법무과)간 주민참여예산 업무협약 체결
· 성남시청소년행복의회 내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설치해 주민참여예산 중 교육·청소년 부분 제안사업을 심사

▶ **B방안 - [별도의 '청소년위원회'를 설치하는 방안]**

· 주민참여예산제 예산 심의를 위해 '주민참여예산위원회'를 설치
· 청소년의 의견수렴과 권한이임을 위해 '청소년위원회'를 설치
· '청소년위원회'의 위원을 모집하고 '(가칭)청소년 예산 학교'등의 교육 시행

위와 같은 내용을 포함한 주민참여예산제 관련 조례를 제정

1. 추진경과

2017. 8. 25. 성남시청 예산법무과 정책제안서 전달

2017. 12. 20. 제 2대 행복의회 본회의 자유발언

2018. 5. 12. ~ 15. 성남시장 후보 대상 지방선거 공약제안서 전달

2018. 8. 8. 성남시청 예산법무과 정책제안서 전달

2018. 9. 12. 성남시의회 행정교육 체육위원회 시의원님과의 간담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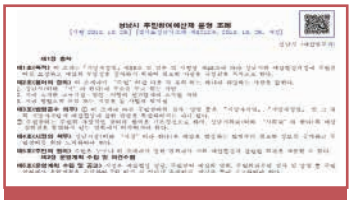

2018. 10. 29. 성남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 제정(제26조 청소년 위원회)

2. 추진내용

구 분		내 용
2017. 8. 25.	성남시청 예산법무과 정책제안서 전달 1차	성남시청 예산법무과에 성남시예산참여축제에 제안된 교육 및 청소년 관련 정책을 성남시청소년행복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의하는 방안의 정책 제안서 전달
2017. 12. 20.	제2대 행복의회 본회의 자유발언	제2대 행복의회 본회의에서 성남시예산참여축제에 성남시청소년행복의회가 참여하는 방안, 청소년이 주민참여예산제에 참여하는 것의 중요성 등의 내용으로 자유발언 진행
2018. 5.12. ~15.	성남시장 후보 대상 지방선거 공약제안서 전달	6.13 지방선거 성남시장 예비후보 3인(은수미, 박정오, 장영하 후보)과 간담회를 통해 성남시에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제정과 청소년의 참여보장, 성남시청소년행복의회와 연계 진행 방안 등을 담은 제안서 전달 및 피드백 진행
2018. 8. 8.	성남시청 예산법무과 정책제안서 전달 2차	성남시청 예산법무과에 방문해 주민참여예산의 청소년위원회 설치, 성남시청소년행복의회 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청소년 관련 예산과 정책을 심의하는 방안에 대한 정책 제안서 전달
2018. 9. 12.	성남시의회 행정교육 체육위원회 시의원님과의 간담회	성남시의회 행정교육체육위원회 조정식 위원장님과 박경희 의원님과의 간담회를 통해 청소년위원회 설치, 성남시청소년행복의회 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청소년 관련 예산과 정책을 심의하는 방안의 정책 제안서 전달
2018. 10. 29.	정책반영 조례제정	**성남시조례 제3212호 「성남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제정** 제26조(청소년 위원회) ① 시장은 주민참여예산제의 운영과 관련하여 청소년·교육 분야 제안 사업에 대한 청소년 의견 수렴 및 심의를 위하여 주민참여예산 청소년 위원회(이하 "청소년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청소년 위원회는 성별을 고려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청소년 위원의 임기 및 위·해촉은 제12조 및 제1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④ 청소년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2~4대 행복의회】 효성고등학교 통학 여건 개선

「효성고등학교 통학여건 개선 제안」

열악한 보행환경과 부족한 시내버스 노선, 버스 과속등의 문제로 교통사고 위험이 상존함에 따라 학교 앞 통학로 개선 요청

· 효성고등학교 연결 버스 노선 연장
· 효성고등학교 앞 버스정류장 환경 개선 요청
· 효성고등학교 앞 예외 스쿨존 지정을 통한 30KM속도 제한
· 왕복 8차선 도로를 6차선으로 축소하여 버스 정류소 공간 확대

1. 추진경과

2017. 12. 20. 제 2대
행복의회 본회의 자유발언

2019. 5. ~ 12. 지역사회 관계자
개별면담 및 정책제안

2018. 12. 18. 통학여건 개선을 위한
교육공동체 토론회 개최

2019. 3. ~ 4. 버스 노선 연장 및
버스정류장 환경 개선 완료

2. 추진내용

구 분		내 용
2017. 12. 20.	제2대 행복의회 본회의 자유발언	- 제2대 행복의회 본회의에서 등·하교 시간대 효성고 앞 버스노선 추가 증설 등의 내용으로 자유발언 진행
2018. 5. ~ 12.	개별면담 정책제안	- 성남시의회 의원 등 관계자 대상 개별 면담을 통한 지속적인 정책제안 추진 등 - 지역사회 공론화를 위한 토론회 개최 추진
2018. 12. 18.	통학여건 개선을 위한 교육공동체 토론회	- 통학여건 개선을 위한 교육공통체 토론회 주최 - 학교, 학생, 학부모, 지역사회 관계자 등이 함께 모여 현황 및 문제점, 해결방안 논의 · 성남시청 교통기획과, 분당·수정경찰서 교통관리계, 성남시의회 도시건설상임위원회 의원, 경기도의회 의원 등 참석, 의견공유
2019. 3. 4.	정책반영	**- 357번 버스 5대 증차 및 태평역을 종점으로 연장 운영** : 효성고~복정역, 가천대역, 태평역 경유 노선 연장 **- 효성고등학교 앞 버스정류장 환경 개선** · 효성고등학교 앞 회차지점에 학교 앞 서행 안내 팻말 설치 · 효성고등학교 앞 지그재그 정지선 정비 · 버스 정류소 공간 확장(118㎡ 규모의 보도블럭 189㎡로 확장) · 횡단보도 페인트칠 등 환경 개선 공사

의회 구성 및 선출방법

○ 선출인원 : 35명(연임 의원 3명 포함)
○ 활동임기 : 2020년 7월 ~ 2021년 6월
○ 지원자격 : 14세~18세 / 2003년생 ~ 2007년생 (2020년 기준)
- 성남시 관내 중 · 고등학교 재학 또는 거주 청소년
- 청소년 유관기관(대안학교 등) 등록 청소년 및 학교 밖 청소년 등
  ※ 중 · 고등 연령 해당자 / 중 · 고등학교 재학 중이면 2008년 1·2월생 가능
  ※ 2002년생(現 고3)의 경우 활동임기 내 성인이 되어 지원자격과 불일치하여 신청 불가

구 분		방 법	비 고
공개모집	학교추천	· 소속 학교 장 추천	35명
	기관추천	· 여성가족부 및 성남시 등록 청소년, 장애인기관 · 단체 시설장 등 추천	
	또래추천	· 또래 청소년의 추천서 30명 제출(별도양식 참조)	
연임신청		· 4대 행복의회 신규의원 대상, 연임희망자 신청서 제출	

○ 구성방법
- 연임 희망 의원 조사 진행 후 연임 의원 수를 제외한 선출 정원 확정
- 공개모집 시 지역구 모형을 반영, 청소년을 선출·구성함으로써 지역의 대표성을 확보
- 다양한 추천 전형을 통한 청소년 의원의 대표성 보장 및 균등한 기회제공으로 소수 청소년의 참여 보장

선출인원(35명)		공개모집(32명)			연임신청(3명)
구분	계	수정구	중원구	분당구	연임의원
선출정원	35명	9명	8명	15명	3명
신청자격		수정구 청소년	중원구 청소년	분당구 청소년	4대 행복의회 초선의원
		※ 거주지와 추천(소속)학교·기관 소재가 다른 경우 주 활동근거지로 본인 선택			

○ 내 용

1차 서류심사

2차 면접심사 및 오리엔테이션

3차 청소년 선거

최종 당선자 공고

1차 서류접수		1차 서류심사		서류 합격자발표	
- 학교 추천 - 기관 추천 - 또래 추천 (자기 추천)	▶	심사기준에 의거한 면접대상자 선정	▶	홈페이지 공지 (www.snyouth.or.kr) 및 개별통보	▶
2차 면접심사(40%)		**3차 청소년 선거(60%)**		**서류 합격자발표**	
심사기준에 의거한 심사위원 구축, 면접실시	▶	- 온라인 선거 진행 - 지역구 별 의원 구성	▶	홈페이지 공지 (www.snyouth.or.kr) 및 개별통보	

○ 제5대 행복의회 모집과정 및 일정

구 분	일 정
1차 서류접수	4. 1.(수) ~ 5. 29.(금)
1차 서류심사	5. 30.(토) ~ 6. 2.(화)
1차 서류 합격자 공고	6. 2.(화) 18:00
2차 면접심사 및 청소년 의원 선거 오리엔테이션	6. 13.(토) 13:00~19:00
3차 청소년 의원 선거	6. 19.(금) ~ 7. 8.(수), 20일간
최종 당선자 공고	7. 10.(금) 18:00
당선자 오리엔테이션	7. 18.(토) 10:00~12:40
제5대 행복의회 당선증교부식 및 의정연수	7. 25.(토) 08:30~13:00

- 2020. 4. 1.(수) ~ 5. 29.(금) 제5대 행복의회 청소년 의원 모집 홍보 및 서류 접수 **(청소년 37명 접수, 연임 3명 제외)**
- 2020. 4. 22.(수) 제5대 행복의회 선거관리위원회 구성
  · 서류 및 면접심사 진행, 청소년 선거 관리 등
- 2020. 6. 6.(토) 2차 면접심사 및 청소년 선거 오리엔테이션 **(청소년 36명 참여)**
  · 면접심사 및 선거안내, 프로필 사진촬영, 공약 확인, 청소년 선거 동의서 제출, 질의응답 등
- 2019. 1. 22.(화) ~ 2. 10.(일) 온라인 전자투표시스템을 활용한 제5대 성남시청소년행복의회 청소년 의원 선거 운영 **(청소년 3,208명 참여)**

○ 최종 선출 결과

- 최종 당선자 : 35명(연임 포함)

- 권역별 : 수정구 9명, 중원구 10명, 분당구 16명
- 교급별 : 중등 11명, 고등 24명
- 성　별 : 남 8명, 여 27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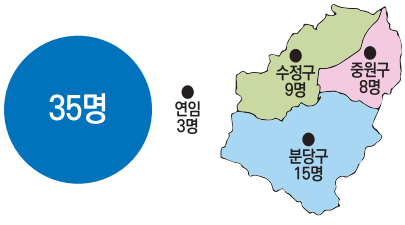

최종 당선자 구성					
수정구		중원구		분당구	
9명		10명		16명	
중등	고등	중등	고등	중등	고등
4	5	3	7	4	12
남	여	남	여	남	여
3	6	3	7	2	14

※ 청소년 선거를 통해 청소년을 선출·구성함으로써 지역의 대표성 확보

제5대 청소년 의원 선거

○ **선거기간 :** 6. 19.(금) ~ 7. 8.(수), 20일간
○ **선 거 권 :** 만9세 ~ 24세 청소년(선거 시작일 기준 1995. 6. 20. ~ 2011. 6. 19. 출생자)
○ **선출인원 :** 성남시 청소년 의원 32명
○ **총 참여인원 :** 청소년 3,208명
○ **투표방법 :** 온라인전자투표시스템 접속 ⇒ 투표하기 클릭 ⇒본인인증 ⇒ 투표(지역구별 2표씩, 총 6표)
⇒ 투표완료 (http://www.snyouth.or.kr/youthcouncil)

1. 온라인 전자투표시스템 접속 ⇒ 투표하기 클릭
(www.snyouth.or.kr/youthcouncil)

2. 개인정보 수집 활용 동의 여부 체크 후
본인인증 ⇒ 다음단계 클릭

3. 지역구 별 후보자의 공약을 확인하고 지역구 별 투표 할
후보자 2명을 선택 후 다음단계 클릭

4. 모든 지역구 투표시 투표 완료!

○ **선거 운영방법**

구 분	내 용
온라인	- 온라인 및 모바일을 통해 개별 전자투표시스템 접속 및 참여 (http://www.snyouth.or.kr/youthcouncil)
오프라인	- 오프라인 투표소 설치를 통한 현장투표 진행(노트북을 통한 전자투표 시스템 접속) · 번화가 및 기관, 단체, 학교 연계 투표소 설치 및 운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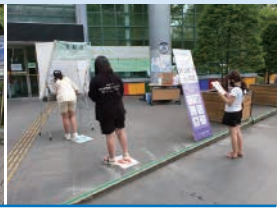

※ 사회적 거리두기 및 안전 수칙을 준수하며 운영

제5대 성남시청소년행복의회

2. 정책연구

2. 정책연구

제5대 성남시청소년행복의회 정책연구

「성남시청소년행복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

혁신특별위원회

김태연 민경환 민소윤 권희정
이민하 신가원 김예진

1. 문제인식

○ **성남시청소년행복의회의 운영 현황 및 성과**

- 성남시청소년행복의회는 지난 2014년 제정된 성남시조례-제2812호 '성남시 청소년 행복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성남시 청소년의 의견을 대변하여 안전, 교육, 환경, 문화 인권 등 청소년 관련 정책에 대해 의사를 표명하고 논의하며 주체적으로 참여하는 청소년으로 구성된 의회이다.

- 행복의회는 2015년 제1대 행복의회가 출범하여 **'성남시 청소년 정책제안대회', '토크콘서트', '포럼'** 등을 개최하여 지역 청소년들의 의견을 수렴하였으며, 이를 기반으로 의제를 선정, 현황 및 자료 조사 등의 정책연구 과정을 통해 직접 청소년 의회 본회의를 개최하고 의안을 발의하여 조례로 제정하는 등의 과정을 거쳐 지역 청소년의 의견이 반영되도록 입법제안 활동을 추진하며 청소년의 시민적 권리 보장을 위해 앞장 서고 있다.

- 더불어 지난 4대부터는 **'청소년 의원 선거'** 제도를 도입하여 성남시 청소년들의 직접선거를 통해 청소년 대표를 선출함으로써 대표성 보장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 그 결과 **성남시조례-제3007호 '성남시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조례'** 등 3건의 정책이 실제로 반영되어 추진되고 있으며, 매년 타 지차체 및 기관에 벤치마킹 및 관련 내용에 대한 자문 요청이 끊이지 않는 등 대한민국 청소년 참여 우수 모델로 자리 매김하였다.

[성남시청소년행복의회 운영절차 및 내용]

예비의제 발굴

- 제안대회, 포럼, 토크 콘서트 운영 등을 통한 청소년 의견 수렴
- 청소년의원 선거 공약

정책연구

- TF팀 회의를 통한 현황 및 사례조사 등 정책과제 체계화
- 입법, 의회 운영 등 자문

입법제안

- 정책 검토 및 자문 등을 통한 실현 가능성 확인
- 시 해당 주무부서 및 시의회 의원, 행복의회 자문단 간담회 운영

정책반영

- 행복의회 본회의를 통한 정책결정(내부)
- 의원 및 집행부 발의 등을 통한 정책 반영

[성남시청소년행복의회 추진성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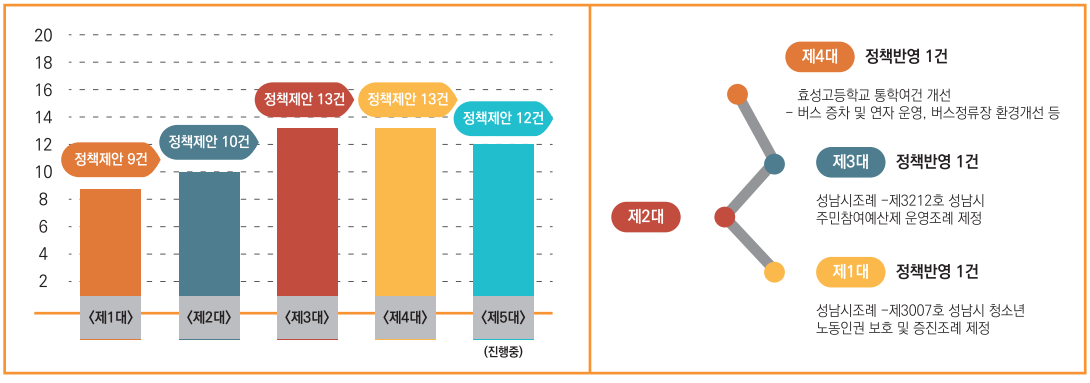

○ **'성남시청소년행복의회' 명칭의 한계 : 정체성 혼란 및 모호성**

- 하지만 이러한 활발한 활동과 우수한 성과에 비하여 '성남시청소년행복의회'는 **행복의회라는 명칭** 때문에 무슨 활동을 하는지, 어떤 단체인지 알리는데 정체성과 모호성을 가지고있어 청소년들에게 혼란을 주고 있다.
  물론 다소 딱딱할 수 있는 명칭에 '행복'이라는 단어를 추가함으로써 정감가고 '행복'이라는 가치를 추구한다는 인상을 줄 수 있지만 보다 성남시 청소년을 대표로 하는 단체인만큼 전문적이고 공신력있는 정식 단체로서의 이미지에 부합하기 위해서 '성남시청소년 의회'로 명칭을 변경하는 것이 시민과 청소년에게 보다 명확히 인식되고 행복의회를 알리는데 도움이 될 것 이라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되는바 의회명 변경을 제안한다.

- 더불어 성남시 청소년 의원 선거를 도입하여 청소년의 투표로 선출됨에 따라 연임 규제제한을 없애고, 전체적인 행복의회 조례 재 정비를 통해 지역 청소년의 선택을 받아 선출된 의원의 활동 지속성을 보장하고, 보다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의정 활동을 도모하고자 한다.

2. 현황 및 문제점

○ **'성남시청소년행복의회' 명칭의 한계**

성남시청소년행복의회 출신 의원들을 대상으로 개별 인터뷰를 진행한 결과 행복의회라는 이름이 청소년을 대표하는 법적 기구임에도 불구하고 전문성이 잘 드러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책임감과 무게감이 저하된다는 의견도 있었고, 어떤 단체인지 인식함에 있어서 혼란을 초래한다고 답하였다. 그래서 성남시 청소년 행복의회에서 '행복'을 빼고 성남시 청소년 의회라고 쓰는 것이 보다 전문적이고 공신력있는 참여기구 활동할 수 있다는 의견이 많았다.

"저희가 의원들끼리 토론만하는 것도 아닌데, 대외적으로 다른 청소년 의회를 만나거나 할 때, 저희만 성남시 청소년 '행복' 의회니까 청소년의회랑은 또 다른 동아리처럼 보이기도 하고 딱 들었을 때 '뭐가 다른거지?' 하는 혼란도 주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 '행복' 의 의미도 너무 모호해서 '굳이 있어야 하나'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구요. 사실 궁극적으로 청소년의회가 청소년의 행복을 추구한다고 하더라도 그걸 직접적으로 명칭에 넣거나 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성남시혁신의회라고 이름을 짓지 않는 것 처럼요. 그래서 저희 이름을 '행복'을 빼고 그냥 성남시 청소년 의회라고 쓰는게 활동하기에도 더 편할 것 같습니다."

"저는 성남시청소년행복의회에서 제 2대와 3대 의원으로 활동했습니다. 활동하면서 학교 친구들이나, 만나는 다른 참여기구의 청소년들에게 저를 소개할 때마다 성남시청소년 '행복'의회라고 이야기 하면 상대방의 반응이 한결같았습니다. 항상 '행복'에 대해 되물었고, 친한 친구들의 경우 웃기도 했습니다. 저는 청소년 의회 모델의 청소년 참여 활동을 하면서 의회에 대해 많이 배웠습니다. 의회는 어느 정도의 책임감과 무게감이 있어야 마땅한데, 이를 위해서는 '행복'을 빼고 성남시청소년의회라거나, 행복을 대체할 단어를 고려하는 게 마땅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행복의회는 이름 때문에 동아리 같은 느낌이 컸던 것 같아요. 청소년들을 대표하는 법적 기구인데 정책이나 조례를 제안하면서 이름 때문에 피해를 본 적도 있거든요. 그냥 동아리차원에서 제안하는 것처럼 받아들이시는 경우도 많아서, 특히 이름이 기존 청소년의회랑 다른 기구처럼 느껴져서 또래 청소년들이나 시의원분들한테 혼란을 준 적도 있고, 어떤 활동을 하는 단체인지 한 번에 알 수 없는 것도 문제가 있죠.
그래서 다른 청소년의회처럼 행복을 빼고 성남시청소년의회로 명칭을 변경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출처] 성남시청소년행복의회 출신 의원 개별 인터뷰

○ **전국 청소년 의회 명칭 현황**

전국에 청소년 의회 현황을 살펴보면, 청소년·아동 등 참여 대상을 명시한 것에는 차이가 있으나 모두 공통적으로 청소년 의회라는 명칭을 사용하여 공신력 있는 참여기구로서의 인식을 높이고 있다.

지자체명	청소년 의회 명칭	지자체명	청소년 의회 명칭
경기도 고양시	고양시청소년의회	서울시 용산구	용산구청소년의회
경기도 수원시	수원시청소년의회	서울시 광진구	광진구아동청소년의회
경기도 화성시	화성시청소년의회	서울시 성북구	성북구어린이·청소년의회
경기도 이천시	이천시청소년의회	서울시 강북구	강북구아동·청소년의회
경기도 안산시	안산청소년의회	서울시 도봉구	도봉구어린이청소년의회
경기도 오산시	오산시어린이·청소년의회	서울시 은평구	은평구청소년의회
경기도 하남시	하남시청소년의회	서울시 서대문구	서대문청소년의회
경기도 양평군	양평군청소년의회	서울시 구로구	구로구청소년의회
경상남도 양산시	양산시청소년의회	서울시 금천구	금천구청소년의회
광주광역시	광주광역시 아동·청소년의회	서울시 동작구	동작구청소년의회
전라북도 군산시	군산시어린이·청소년의회	서울시 관악구	관악청소년자치의회
서울시 종로구	종로구어린이·청소년의회	서울시 강동구	강동구청소년의회

3. 입법 제안

○ **제안내용**

- **'성남시청소년행복의회' ⇒ '성남시청소년의회'로 명칭 변경**
  : 성남시 청소년을 대표로 하는 단체인 만큼 전문적이고 공신력있는 정식 단체로서 이미지에 부합하기 위해서 '성남시 청소년의회' 로 명칭 변경
- **청소년의원 연임 제한 해제**
  : 의원의 임기는 1년이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는 현 조례 개정을 의원의 임기는 1년 이되, 선출된 의원의 연임기간은 규제하지 않도록 변경
- **전체적인 조례 재정비**
  : 행복의회 구성에 대한 세부 사항 재정비

○ 「성남시 청소년 행복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

전국에 청소년 의회 현황을 살펴보면, 청소년·아동 등 참여 대상을 명시한 것에는 차이

현행 조례	개정 조례(안)
조례제목개정 성남시 청소년 행복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제목개정** 성남시청소년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구성) ① 성남시 청소년행복의회(이하 "행복의회"라 한다) 의원은 성남시(이하 "시"라 한다) 관내에 거주하는 청소년으로 구성하고, 연령이나 거주 지역 및 성별 등을 안배하여 선정한다. ② "청소년행복의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삭제 2017. 3. 29.〉 2. "청소년 행복의회"란 시 관내 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이거나 거주중인 만 12세 이상 만 18세 이하의 청소년들이 시의회에서 지방의회 운영방식과 유사하게 진행하는 회의를 말한다. ③ 행복의회 청소년의원 수는 40명 이내로 한다.	**제2조(구성)** ① 성남시 청소년의회(이하 "청소년의회"라 한다) 의원은 성남시(이하 "시"라 한다) 관내 중·고등학교 재학 또는 거주 및 활동 청소년으로 구성하고, 연령이나 거주 지역 및 성별 등을 중원구, 수정구, 분당구 세 개의 지역구로 안배하여 청소년들의 선거를 통해 선출한다. ② "청소년의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삭제 2017. 3. 29.〉 2. "청소년의회"란 시 관내 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이거나 거주, 활동중인 만12세 ~ 만18세 이하의 청소년들이 시의회에서 지방의회 운영방식과 유사하게 진행하는 회의를 말한다. ③ 청소년의회 의원 수는 35명 이내로 한다.
제3조(의원 임기 및 사퇴) ① 의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다만,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3조(의원 임기 및 사퇴)** ① 의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제4조(의장단 구성) ① 의장단은 의장 1명과 부의장 2명으로 구성하되 전체회의에서 선출한다. ② 의장은 행복의회를 대표하며 정기회의 및 임시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③ 부의장은 의장 부재 시 연장자 순으로 의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4조(의장단 구성)** ① 의장단은 의장 1명과 부의장 2명으로 구성하되 전체회의에서 선출한다. ② 의장은 청소년의회를 대표하며 정기회의 및 임시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③ 부의장은 의장 부재 시 연장자 순으로 의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상임위원회) 〈본조제목개정 2017. 3. 29.〉 ① 행복의회는 필요시 상임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각 상임위원회는 그 소관에 속하는 직무를 수행한다. 〈일부개정 2017. 3. 29.〉 ② 상임위원회에 위원장 1명을 두고, 상임위원장은 분과위원회에서 선출하며, 이 경우 소속 상임위원회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일부개정 2017. 3. 29.〉	**제5조(상임위원회)** 〈본조제목개정 2017. 3. 29.〉 ① 청소년의회는 필요시 상임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각 상임위원회는 그 소관에 속하는 직무를 수행한다. 〈일부개정 2017. 3. 29.〉 ② 상임위원회에 위원장 1명을 두고, 상임위원장은 상임위원회에서 선출하며, 이 경우 소속 상임위원회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일부개정 2017. 3. 29.〉
제6조(회의 및 의결정족수) ① 행복의회의 정기회의는 연 2회 개최한다. 다만, 시장 또는 행복의회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임시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② 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회의장소는 시의회 회의장을 사용하되 시의회 회기 일정 등으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시에서 관리하는 다른 공간을 사용할 수 있다.	**제6조(회의 및 의결정족수)** ① 청소년의회의 정기회의는 연 2회 개최한다. 다만, 시장 또는 청소년의회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임시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② 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회의장소는 시의회 회의장을 사용하되 시의회 회기 일정 등으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시에서 관리하는 다른 공간을 사용할 수 있다.

제7조(운영기관) 시장은 행복의회의 원만한 운영과 사무처리를 위해 청소년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운영 할 수 있다.	**제7조(운영기관)** 시장은 청소년의회의 원만한 운영과 사무처리를 위해 청소년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운영 할 수 있다.
제9조(지원) 시장은 행복의회의 활성화를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제안된 정책 추진에 필요한 사항 2. 행복의회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 3.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사항	**제9조(지원)** 시장은 청소년의회의 활성화를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제안된 정책 추진에 필요한 사항 2. 청소년의회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 3.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사항
제11조(운영규정) 행복의회의 세부 운영규정은 구성원이 자체적으로 의결하여 정한다.	**제11조(운영규정)** 청소년의회의 세부 운영규정은 구성원이 자체적으로 의결하여 정한다.

4. 기대효과

○ 성남시 청소년들이 '성남시청소년의회' 의 개념과 활동내용 등 직관적으로 이해하기 쉽다.
○ 별도의 부가 설명 없이 청소년의회의 취지와 목적이 잘 드러나게 된다.
○ 성남시 청소년 대표로서, 전문적이고 공신력있는 활동을 전개할 수 있다.

제5대 성남시청소년행복의회 정책연구

「성남시 청소년 예산 검토 권한 부여」에 관한 제안

예산심의특별위원회

유재석 정규연 양다원 이가희
황혜정 조서윤 김영중

1. 문제인식

○ **성남시청소년행복의회의 역할 및 권한의 한계**

성남시청소년행복의회는 성남시 청소년의 의견을 대변하여 안전, 교육, 환경, 문화 인권 등 청소년 관련 정책에 대해 의사를 표명하고 논의하며 주체적으로 참여하고자 성남시조례 – 제2812호 '성남시 청소년 행복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2015년 제1대를 시작으로 현재 5대 의회가 활동하고 있다.

특별히 지난 4대 부터는 '청소년 의원 선거' 제도를 도입하여 성남시 청소년들의 직접선거를 통해 청소년 대표를 선출함으로써 대표성을 보장하고 의제발굴, 정책연구, 입법제안 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수행하고 있다.

하지만 청소년 관련 정책에 대해 의사를 표명하고 논의하며 주체적으로 참여하고자 하는 본래의 목적을 수행하기에는 현재 수행하고 있는 입법제안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실제 제안하는 정책이 조례로 반영되기에는 오랜 시간과 과정이 걸리며, 1년이라는 임기의 의정활동 중에 반영되기에 한계가 있으며 제안한 정책들의 피드백을 받기 어려운 실정이다. 또한 청소년의 참여 보장을 위해 실제 의회를 모델로 하여 청소년 의회를 구성 하였음에도, 이에 부합하는 권한과 역할은 부족하다. 따라서 즉각적인 청소년 정책 제안 및 피드백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성남시 청소년 예산 편성과정에서 검토 권한을 부여하여 청소년의 의견수렴이 필요하다.

○ **청소년 관련 예산을 청소년이 심의해야 할 필요성**

현재 성남시의 청소년 관련 예산은 성남시 집행부에서 편성하여 성남시의회의 심의를 거쳐 승인된 예산을 집행부에서 예산을 집행하고, 의회의 결산 및 회계감사를 받는 과정으로 편성된다.

[예산편성 과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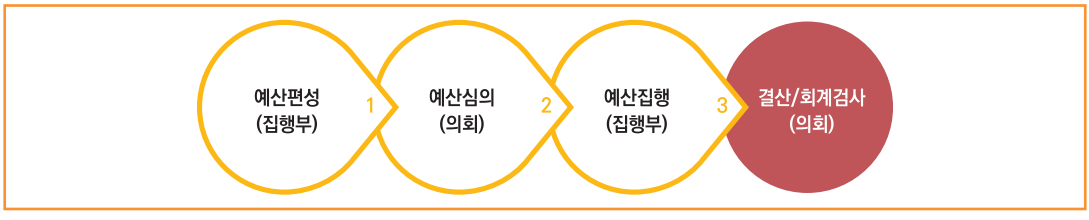

정책을 수립하고 전개하는 과정에서 당사자의 의견수렴은 가장 중요하며, 필수적인 요소이다. 하지만 어느 과정에서 실질적인 정책사업의 적용 대상인 청소년 당사자의 의견이 전해지고, 반영되기 위한 절차와 과정은 부재하다. 따라서 성남시 청소년 관련 예산 편성과정에서 행복의회에게 검토 권한을 부여하여 청소년 당사자로써, 또 성남시 청소년을 대표로써 청소년 관련 정책 사업에 청소년의 생각과 목소리가 전할 수 있도록 역할 부여가 필요하다.

2. 현황 및 문제점

○ **주민참여예산제 청소년 관련 예산 편성의 청소년 참여에 대한 제안과 반영**

지난 2~3대 행복의회에서는 청소년 정책 관련 예산 편성의 청소년 참여에 대한 필요성을 인식하고, 그 첫걸음으로 「지방재정법」과 「지방재정법 시행령」에 의거, 실시하는 주민참여 예산제의 청소년과 관련된 정책의 예산 편성은 직접적인 당사자인 지방자치단체의 청소년들의 목소리를 듣고 의견을 반영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교육·청소년 부문 제안사업 심사 등의 청소년 참여에 대하여 제안하였다.

그리고 단순히 제안에서 끝나지 않고 실현될 수 있도록 시 주무부서 및 성남시의회 간담회 등 다양한 소통창구를 활용한 정책제안 활동을 추진하였다.

그 결과 지난 2018년 10월 29일 성남시조례-제3212호 「성남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가 제정되었고, 그 안에는 제26조(청소년위원회)의 설치에 관한 조항이 포함되었다.

그리고 2년 후 우리는 한 발자국 더 나아가 지방자치단체의 청소년 정책 분야 예산에서도 직접적인 당사자인 지방자치단체의 청소년들의 목소리를 듣고 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행복의회에 성남시 청소년 예산 검토 권한 부여를 통해 선도적인 청소년 참여 모델로 앞장 서 있는 성남시가 한 발자국 더 진보하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

[주민참여예산제 청소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제안의 정책 반영 과정]

2017. 8. 25. 성남시청
예산법무과 정책제안서 전달

2017. 12. 20. 제 2대
행복의회 본회의 자유발언

2018. 5. 12. ~ 15. 성남시장 후보 대상
지방선거 공약제안서 전달

2018. 8. 8. 성남시청 예산법무과
정책제안서 전달

2018. 9. 12. 성남시의회 행정교육
체육위원회 시의원님과의 간담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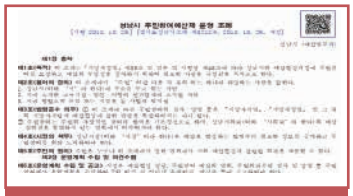

2018. 10. 29. 성남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 제정(제26조 청소년 위원회)

○ **청소년 대상 국가 재정 및 예산 편성 등의 교육에 대한 움직임**

지난 10월 여성가족부에서는 청소년들이 마련한 정책을 실제 국가 정책에 입안하도록 지원하는 '청소년 특별회의,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꿈드림센터' 등에 재정배움 콘텐츠를 지원하기 위하여 한국재정정보원과의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이처럼 청소년들이 정책 제안 단계부터 정책에 필요한 예산을 직접 생각해 보는 등 체험을 통해 배우고 경험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하는 등 청소년의 재정역량에 대한 필요성이 최근 대두되며 정부 단위의 정책의 움직임이 전개되고 있다.

['청소년에게도 국가재정 가르치자'…여가부-재정정보원 협약체결]

여성가족부(여가부)와 한국재정정보원이 청소년에게도 국가 정책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는 사고를 길러주기 위해 손을 맞잡고 교육 기회를 마련한다.
여가부는 오는 20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한국재정정보원과 '청소년을 위한 재정역량 성장협약'을 체결한다.
양측은 여가부가 청소년들이 마련한 정책을 실제 국가 정책에 입안하도록 지원하는 '청소년특별회의', 학교밖청소년 '꿈드림센터' 등에 재정배움 콘텐츠를 지원한다.
청소년 재정교육을 위한 지도자 직무교육을 지원하고, 청소년특별회의와 국민참여예산제 연계도 강화한다.
여가부는 청소년들이 지역과 일상에서 정책을 발굴하고 토론하는 과정에서 한국재정정보원의 콘텐츠를 보고 활동에 보탬이 되리라 기대하고 있다.

[출처] 공감언론 뉴시스

○ **성남시청소년재단 예산심의 절차에 행복의회 참여를 통한 가능성**

올해 5대부터는 '의회' 본연의 역할과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입법제안을 넘어 예산심의로 활동 범위를 확장하였다. 그 시작으로 **2021년 성남시청소년재단 예산 편성과정에서 성남시청소년행복의회 예산심의** 단계를 추가하여 청소년 사업 부분의 정책 당사자인 청소년의 의견을 반영하고자 하였다.

먼저 예산의 구조 및 수립과정 등 재단 예산담당부서 팀장님의 전문교육을 받고, 이를 기반으로 1차적으로 소속 지역구별 해당 수련시설의 청소년 사업 예산을 심의하였고, 이후 그 결과를 바탕으로 행복의회 예산심의 특별위원회에서 종합심사를 진행하였다. 그리고 심의된 내용을 해당 시설에 전달하였고, 그 내용을 바탕으로 검토의견을 제출받았다. 그 결과 **반영 4건, 일부반영 2건**의 성과를 거두었다.

이는 처음 진행된 시도였으나, 명백히 청소년이 주도하고 검토함으로서 객관적, 사회적으로 예산 수립은 성인(어른)들이 도맡아 한다는 편견을 깬 것 뿐만 아니라 청소년들도 예산편성에 관한 사고와 책임감, 역량을 갖췄으며, 충분히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계기가 되었다 또한 수혜 대상자인 청소년의 입장과 생각을 반영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이처럼 성남시의 청소년 관련 예산과정에서도 충분한 교육과 자료제공이 된다면 행복 의회의 예산심의 과정을 통해 보다 실효성있는 청소년 정책 수립 및 운영의 기반을 가질 수 있을 것이다.

[2021년 성남시청소년재단 청소년사업 예산심의 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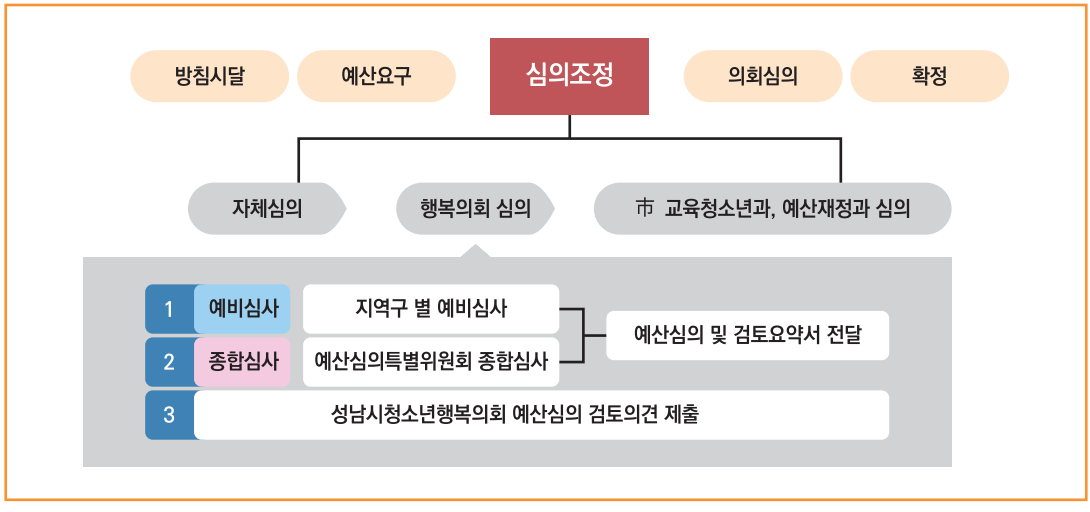

○ **'성남시청소년행복의회'의 정당성**

성남시청소년행복의회는 2020년 4월 1일 ~ 4월 24일 (1차 서류접수) ⇒ 2020년 5월 9일 (2차 면접심사) ⇒ 2020년 5월 16일 ~ 6월 25일 (3차 청소년의원 선거)를 통해서 선출된 성남시 청소년의 대표이다. 의회는 선거를 통해 선출된 대표자들의 정치적 의사결정을 위한 합의 기관이며, 법률의 제정, 예산의 심의 등의 기능을 갖추고 있다.

성남시의회와 마찬가지로 성남시청소년행복의회 또한 성남시 내의 청소년들의 투표를 통해 선출된 청소년 의회인 만큼 성남시 청소년 예산 검토 권한을 행복의회에 부여함으로써 정책 수요 당사자의 의견이 반영된 효율적이고 능동적인 예산 편성을 이룰 수 있다.

[성남시청소년행복의회 선출 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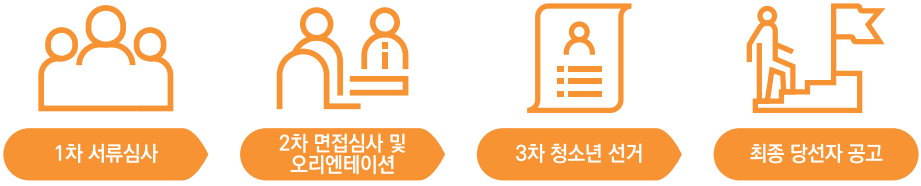

- **선거기간 :** 6. 19.(금) ~ 7. 8.(수), 20일간
- **선 거 권 :** 만9세 ~ 24세 청소년(선거 시작일 기준 1995. 6. 20. ~ 2011. 6. 19. 출생자)
- **선출인원 :** 성남시 청소년 의원 32명
- **총 참여인원 : 청소년 3,208명**
- **투표방법 :** 온라인전자투표시스템 접속 ⇒ 투표하기 클릭 ⇒본인인증 ⇒ 투표(지역구별 2표씩, 총 6표)
  ⇒ 투표완료 (http://www.snyouth.or.kr/youthcouncil)

1. 온라인 전자투표시스템 접속 ⇒ 투표하기 클릭 (www.snyouth.or.kr/youthcounci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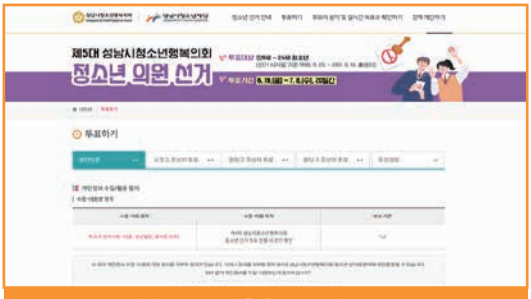

2. 개인정보 수집 활용 동의 여부 체크 후 본인인증 ⇒ 다음단계 클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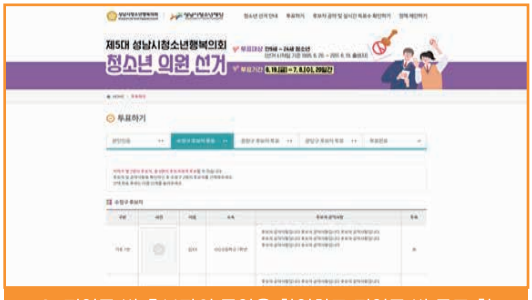

3. 지역구 별 후보자의 공약을 확인하고 지역구 별 투표 할 후보자 2명을 선택 후 다음단계 클릭

4. 모든 지역구 투표시 투표 완료!

○ **최종 당선자 : 35명(연임 포함)**
- 권역별 : 수정구 9명, 중원구 10명, 분당구 16명
- 교급별 : 중등 11명, 고등 24명
- 성　별 : 남 8명, 여 27명

성남시청소년행복의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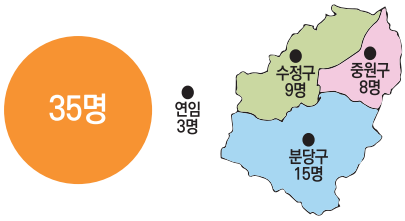

최종 당선자 구성

수정구		중원구		분당구	
9명		10명		16명	
중등	고등	중등	고등	중등	고등
4	5	3	7	4	12
남	여	남	여	남	여
3	6	3	7	2	14

○ **해외 청소년 예산 심의 사례**

[오리간 주 포틀랜드 시의 커뮤니티 예산 검토위원회]

매년 포틀랜드시의 교육위원회는 연간 예산 과정을 지원하기 위해 커뮤니티 예산 검토위원회인 (CBRC)를 임명을 한다. 학생 구성원과 자원 봉사 위원으로 구성된 CBRC는 교육감의 제안된 예산과 학생 관련 사업의 기타 예산 문제에 대해 검토와 평가하고, 이를 이사회에 권고하는 역할도 진행한다.

[출처] CBRC 홈페이지

3. 정책 제안

○ **제안내용**

- 예산 및 청소년 정책사업 관련 전문교육 실시
- · 성남시 예산 담당부서 및 청소년 담당부서의 전문교육 실시
- · 예산재정과 : 예산의 구조 및 수립과정 등
- · 교육청소년과 : 청소년 정책 사업 안내 등

- 성남시 청소년 관련 예산 검토 권한 부여
- · 지방자치단체(성남시)의 예산편성 절차 중 '의회심의' 과정의 소관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이전에 '성남시청소년행복의회'의 성남시 청소년 정책 관련 예산 검토 단계 추가
- ·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과정 이전에 행복의회 참여 및 검토의견 전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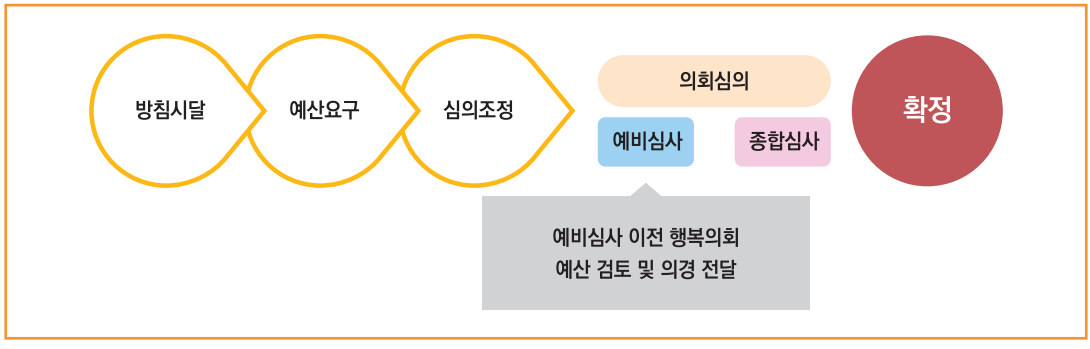

- 추진계획(안)

2021년	3 ~ 4월	5 ~ 6월	7월	8월 ~ 10월	11월	12월
	홍보 및 모집	청소년 의원선거	당선증 교부식 및 의정연수	예산교육 및 정책연구	예산검토	자문단 간담회
2022년	1 ~ 4월		5월		6월	
	정책연구		본회의		해단식	

4. 기대효과

○ 성남시의 청소년 관련 정책 조성에 직접 참여함으로써 청소년 정책의 실효성 확보
○ 청소년 관련 정책에 청소년들의 참여 기회를 확대하여 청소년의 권리 보장 및 사회적 인식 제고
○ 당사자인 청소년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청소년 정책 관련 예산을 편성함으로써 청소년의 권익을 증진

제5대 성남시청소년행복의회 정책연구

「성남시 초등학생 치과주치의 의료지원 조례」 개정

보건의료 TFT
김서진 김서현 김예진 김태연 신가원
신서연 이가희 이민하 황혜정 허다인

1. 문제인식

○ 소득에 따른 치과 의료 이용의 불평등

치과 의료 이용 불평등에 영향을 미치는 결정요인분해(안은숙, 신호성) 논문에 따르면, 소득과 교육 등 사회경제적 위치가 낮은 집단의 경우 치과 의료 이용 필요도는 증가 하지만 분석 결과 치과 의료 이용의 집중 지수 및 수평적 형평성 지수는 모두 고소득층에게 유리한 불평등을 보였으며, 의료 필요도를 반영할 경우 불평등 정도는 약간 감소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치과 의료 이용의 불평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중에서 소득은 단일변수로는 가장 큰 기여도를 보였으며, 인구학적 요인보다는 사회경제적 요인이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경제적 지위가 낮은 집단에 대한 치과 의료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실효성 있는 정책개발이 요구된다. 이를 바탕으로 보건 의료 측면에서 다각적인 노력이 계속되어야 할 것이다.

○ 중학생의 구강 건강 관리에 대한 어려움

중학생 시기가 치아우식이 더 심하다는 연구 결과를 기반으로 성남시의 중학교에 재학 중인 중학생 3명을 대상으로 치아 관리에 대한 인터뷰를 진행했다.

그 결과 우리가 중학생 때 경험했던 것처럼 지금도 역시 많은 중학생들이 구강 건강 관리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이에 본래의 제도의 대상 확대를 통해 중학교 시기에 의무 구강검사가 한번 더 이루어 진다면, 본래의 조례가 제정된 취지대로 평생 구강 건강의 기반을 마련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게 되었다.

"초등학생 때는 치과 주치의 의료지원을 받을 수 있어서 지정된 병원에서 관리도 받고, 아프면 진료도 받을 수 있었는데 지금은 오히려 그때보다 치아가 쉽게 썩는데에도 지원을 받을 수 없으니까 너무 힘들어요"

"초등학생 때는 치아가 아프기 전에 검사 받고 하다 보니 관리가 잘 되는 편이였는데, 지금은 혼자 관리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아프서 병원에 가기 전까지는 치아 관리를 잘하고 있는지도 모르고, 그때보다 더 문제가 많이 생기는 걸 보면 저 혼자 관리하기에는 부족함과 어려움이 있는 것 같아요."

"초등학생 때는 치아에 문제가 생기면 초기에 구강 검사를 통해서 발견하고 치료할 수 있었는데, 지금은 아파도 치과 가기 싫어서 말하지 않기도 하고, 나중에 가면 엄청 썩어 있어서 치료하느라 힘들었어요."

2. 현황 및 문제점

○ **성남시 초등학생 치과주치의 사업 현황**

- 구강질환 예방 효과가 높은 초등학생 4,5학년에게 예방중심의 구강건강관리 서비스를 연속적으로 제공하여 평생 구강건강의 기반을 다지기 위한 구강보건사업

- 사업내용
  - **대 상 :** 성남시 관내 72개교 초등학생 4,5학년
    (초등학교 4학년 : 8,161 / 초등학교 5학년 : 8,195 통계청 2020.11.3. 기준)
  - **장 소 :** 참여 치과 의료기관

- 세부내용
  ① 필수서비스 : 구강검사, 구강위생검사 및 관리, 구강보건교육, 불소 바니쉬 도포
  ② 선택서비스 : (구강상태에 따라 필요시) 치석제거, 치아홈메우기, 방사선 파노라마 촬영
  - **비 용 :** 연 1회 무료
  - **소요예산 :** 1인당 4만원 편성 (초등학생 4학년은 경기도에서 3억원을 편성하여 지원, 초등학생 5학년은 성남시에서 3억원을 편성하여 지원)

[출처] 성남시청 홈페이지

· **참여방법**

[일반 참여방법]

① "덴티아이" 앱 접속 및 로그인
② 구강검진문진표 작성
③ 방문 희망하는 참여 치과 선정, 예약
④ 치과 방문 및 서비스 이용
⑤ 추가적인 치료가 필요한 저소득층 아동은 수정구보건소 재능나눔 토요치과 연계 지원

※ 덴티아이
앱을 이용하여, 치과 병원 시스템과 실시간 연동되어 구강검진결과를 맞춤형 예방리포트로 쉽고 빠르게 확인 가능하며, 서울·경기·성남·부산·밀양·인천 치과주치의 참여

[코로나 상황 속 현 사업 진행 현황 : 치과주치의 온라인 서비스]

① 치아를 촬영해 전송
② 치아 표면의 세균막인 플러그를 검사하고, 인공지능 분석을 통해 치간, 잇몸 등 치아 구역별 검사 결과를 알려줌
③ 구강 건강과 위생 상태에 관해 치과주치의가 코멘트를 달고, 바른 칫솔질, 치실질 바른 식습관, 불소 이용법 등을 교육 (온라인 구강 관리 서비스의 이용률을 높이기 위해 대상자 들에게 신청 안내 문자와 함께 칫솔 치약 세트, 구강용 치면 착색제 등을 집으로 택배 발송함)

○ **성남시 초등학생 치과주치의 사업 문제점**

- 현재 성남시 초등학생 치과주치의 사업은 초등학교 4, 5학년을 대상으로 영구치가 완성되는 12세 전후로 검진을 받는 시스템인데, 두 학년으로만 국한하는 것은 이 사업의 목적인 평생 구강 건강의 기반을 다지기에 한계가 있다.

- 성남시는 가정에 따라 경제적인 소득 차이가 심한 자치단체이기 때문에 초등학생만을 벗어나 청소년들의 구강 상태도 지속적으로 점검할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기에 적용 대상 범위 확대가 필요하다.

- 성남시 의회 제 217회 문화복지 위원회 회의에서도 관련 내용이 논의된 적이 있다. 회의록에 따르면 의료진들의 의견을 종합해 봤을 때 유치가 모두 빠지고 영구치가 나는 시기인 4학년이 구강 건강에 집중해야 하는 시기이며, 사업의 대상으로 하기에 가장 적절하다고 판단하여 〈성남시 초등학생 치과주치 의의료지원 조례〉가 제안되었다.
하지만 아래에 학술자료에 따르면 특히 중학교 2학년 시기에 경우 영구치 치열이 완성 되며, 일생의 구강건강 기반을 조성하는 때라고 언급한다. 또한, 치아우식 경험자율은 8세에서 27.2%, 10세에서 46.2%이었고 12세에서 60.5%, 15세에서 74.6%로 나타나 연령이 증가할수록 구강건강은 오히려 나빠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치아우식 경험자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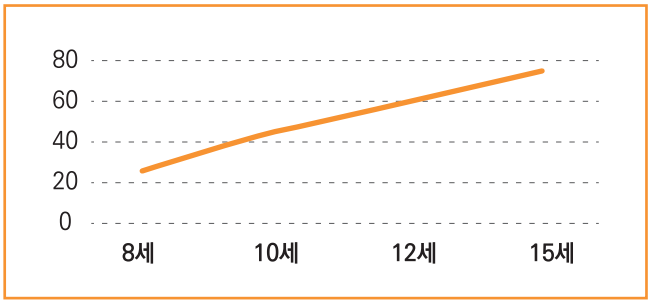

[출처] 중학생들의 구강 보건 인식이 구강 건강 상태와 구강 건강 행위에 미치는 영향, 조은숙 원광대학교 보건대학원 / 고등학생의 구강증상 인지 및 구강관리행태에 따른 치아우식경험, 남지영, 김혜진

⇒ 이에 유치가 빠지고 영구치가 나는 시기인 초등학교 4~5학년 때에 1차 구강 검사를 실시하고, 영구치 치열이 완성되고 치아 우식이 심한 중학교 2학년 때 2차 구강검진을 진행하여 변화도를 측정하고, 현재 상태를 파악할 수 있도록 제도의 보완이 필요하다.

3. 입법 제안

○ 제안내용

- '성남시 초등학생 치과주치의 의료지원 조례'의 적용대상을 초등학생에서 청소년(15세)으로 확대
  - · 1차 구강검진 : 초등학교 4~5학년
  - · 2차 구강검진 : 중학교 2학년
  - · 소요예산 (안)

구 분	초등학교 4학년	초등학교 5학년	중학교 2학년
지원기관	경기도	성남시	성남시
인구(명)	8,161	8,195	8,172
1인당 소요 예산(원)	40,000	40,000	40,000
총 소요 예산(원)	300,000,000	300,000,000	300,000,000 (예상)

⇒ 확대 지원하려는 대상인 중학교 2학년은 예산 추정 규모가 현행 4,5학년 예산과 비슷한 수준일 것으로 예상

- 적용대상이 청소년이므로 지원 대상 협의 과정에서 청소년의 입장에서의 의견을 대표하여 전달하기 위하여 청소년 유관기관도 참여하도록 하며 협의체 구성에 청소년 유관기관 대표 포함

○ 「성남시 초등학생 치과주치의 의료지원 조례」 개정

현행 조례	개정 조례(안)
조례제목개정 성남시 초등학생 치과주치의 의료지원 조례	**조례제목개정** 성남시 청소년 치과주치의 의료지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성남시 초등학생들의 예방적이고 지속적인 치의과학적 구강관리를 통하여 그들의 평생 구강건강과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포괄적인 의료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성남시 청소년들의 예방적이고 지속적인 치의과학적 구강관리를 통하여 그들의 평생 구강건강과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포괄적인 의료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치과주치의"란 등록된 초등학생에게 치면세균막검사, 구강방사선 촬영·판독, 개별 구강보건교육, 전문가 치아세정술, 불소도포, 치아홈메우기, 치석제거, 구강질환 예방치료 등 지속적 진료행위를 하는 치과의사를 의미한다. 2. "치과주치의 의료비"란 치과주치의의 지속적인 진료행위에 대한 지원비(일정금액)를 말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청소년"이란 9세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2. "치과주치의"란 등록된 청소년에게 치면세균막검사, 구강방사선 촬영·판독, 개별 구강보건교육, 전문가 치아세정술, 불소도포, 치아홈메우기, 치석제거, 구강질환 예방치료 등 지속적 진료행위를 하는 치과의사를 의미한다. 3. "치과주치의 의료비"란 치과주치의의 지속적인 진료행위에 대한 지원비(일정금액)를 말한다.

제3조(시행계획의 수립) 성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초등학생의 구강건강 향상에 필요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초등학생 치과주치의 사업 정책의 방향 2. 초등학생의 구강질환 관리를 위한 지원 3. 초등학생 치과주치의 사업 참여 치과 병·의원의 관리	**제3조(시행계획의 수립)** 성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초등학생의 구강건강 향상에 필요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청소년 치과주치의 사업 정책의 방향 2. 청소년의 구강질환 관리를 위한 지원 3. 청소년 치과주치의 사업 참여 치과 병·의원의 관리
제4조(지원대상) ① 초등학생 치과주치의사업의 지원대상은 보호자의 동의를 얻은 성남시 관내 초등학생으로 운영 기준은 매년 시장이 제3조에 따른 계획에 따라 별도로 정한다. ② 지원대상은 성남교육지원청과 협의하여 선정한다.	**제4조(지원대상)** ① 청소년 치과주치의사업의 지원 대상은 보호자의 동의를 얻은 성남시 관내 청소년으로 운영 기준은 매년 시장이 제3조에 따른 계획에 따라 별도로 정한다. ② 지원대상은 성남교육지원청, 청소년 유관기관과 협의하여 선정한다.
제5조(예산지원) 시장은 초등학생 치과주치의사업에 대하여 일정금액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예산지원)** 시장은 청소년 치과주치의사업에 대하여 일정금액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사업관리 등) 시장은 초등학생 치과주치의 사업에 대하여 관리하고 추진실적에 따른 평가 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제6조(사업관리 등)** 시장은 청소년 치과주치의 사업에 대하여 관리하고 추진실적에 따른 평가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제7조(치과주치의 선정 및 진료범위) 초등학생 치과주치의는 성남시치과의사회와 협의하여 선정 하며, 진료범위는 구강검사, 예방적 구강진료 (불소도포, 치아홈메우기, 단순 치석제거, 방사선 촬영), 구강보건교육 등으로 한다.	**제7조(치과주치의 선정 및 진료범위)** 청소년치과 주치의는 성남시치과의사회와 협의하여 선정하며, 진료범위는 구강검사, 예방적 구강진료(불소도포, 치아홈메우기, 단순 치석제거, 방사선촬영), 구강 보건교육 등으로 한다.
제8조(의료비 신청) 초등학생 치과주치의 사업에 참여한 의료기관이 비용을 청구하고자 할 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신청서를 관할 보건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의료비 신청)** 청소년 치과주치의 사업에 참여한 의료기관이 비용을 청구하고자 할 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신청서를 관할 보건소에 제출 하여야 한다.
제9조(협의체의 구성·운영) ① 시장은 초등학생 치과주치의 의료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성남시 초등학생 치과주치의사업 협의체 (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생 략) 1. 보건의료 관련 직능단체 또는 민간단체 대표자 2. 치의학·의료 관련 교수 및 전문가 3. 성남교육지원청 교수학습 국장 4. 학부모 대표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9조(협의체의 구성·운영)** ① 시장은 청소년 치과주치의 의료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성남시 청소년 치과주치의사업 협의체(이하"협의체"라 한다)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현행과 같음) 1. 보건의료 관련 직능단체 또는 민간단체 대표자 2. 치의학·의료 관련 교수 및 전문가 3. 성남교육지원청 교수학습 국장 4. 학부모 대표 5. 청소년 유관기관 대표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0조(협의체의 기능) 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사업추진을 위한 전략 및 추진계획에 관한 사항 2. 초등학생 치과주치의사업 대상선정, 진료범위, 지원액의 기준, 의료비 지급방법 등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시장이 초등학생 치과주치의사업 지원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협의체의 기능)** 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사업추진을 위한 전략 및 추진계획에 관한 사항 2. 청소년 치과주치의사업 대상선정, 진료범위, 지원액의 기준, 의료비 지급방법 등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시장이 청소년 치과주치의사업 지원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4. 기대효과

○ 기존 성남시 초등학생 치과주치의 사업의 대상을 청소년으로 넓힘으로써 성남시 청소년의 평생 구강 건강의 기반을 강화할 수 있다.
○ 가정 내 경제적 차이로 인해 발생하는 치과의료서비스접근에 대한 불평등을 줄일 수 있다.
○ 성남시 청소년 치과주치의 의료지원 조례를 시작으로 하여 앞으로 성남시의 청소년 복지가 점진적으로 확대됨을 기대해 볼 수 있고, 청소년의 건강증진을 도모할 수 있다.
○ 청소년들을 위한 체계적인 치과 의료시스템이 갖추어진 성남시로 거듭남을 통해 치과 의료증진 면에 있어 다른 지자체의 본보기가 됨을 기대해 볼 수 있다.

제5대 성남시청소년행복의회 정책연구

「성남시 학교보건실 시설 지원 조례」 제정

보건의료 TFT
김서진 김서현 김예진 김태연 신가원
신서연 이가희 이민하 황혜정 허다인

1. 문제인식

현재 전 세계를 덮친 코로나19로 우리는 감염병 예방, 건강증진과 같이 '건강'과 관련하여 더 많은 관심을 가지게 된다, 특히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다수가 모이는 시설 중 학교의 경우 감염병 확산을 막기 위해 중점적인 예방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학교 내 청소년들이 의료서비스를 접할 수 있는 '학교보건실'의 중요성은 매우 커졌다. 이와 함께 사회 계층 중 에서도 '청소년'들의 현 건강 상태, 질병 예방 등 건강증진에 대한 인식과 필요성이 늘어났다. 청소년은 신체적, 정신적 건강에 대한 가치와 책임 의식을 함양하도록 건강에 관한 올바른 지식을 얻을 필요가 있고, 스스로 건강생활을 실천할 수 있는 환경에서 생활하며 자신의 건강증진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 또한 청소년은 건강을 보호, 증진하기 위하여 다양한 의료 서비스를 안전하고, 올바르게 누릴 수 있는 권리가 있다.

○ 성남시 관내 청소년들의 건강증진을 위한 '성남시' 중심 조례의 필요성

현재 '경기도 청소년 건강증진 지원 조례', '경기도 학교보건실 시설과 기구 및 용품에 관한 규칙'과 같이 폭넓은 범위의 청소년 건강증진을 위한 조례, 규칙이 존재한다. 하지만 '성남시'를 중심으로 하여 더 구체적으로 사업을 시행 할 수 있는 성남시 관내 청소년들의 건강증진을 위한 조례 및 규칙이 부족하다.

○ 청소년들의 주요 의료서비스 공간, '학교보건실'의 문제점

특히 의료서비스의 접근에 있어서 청소년들과 가장 가까이에 존재하면서도, 많이 이용하는 주요시설인 '학교보건실'에 관하여 문제점을 인식하였다.

먼저, 학교보건실의 의약품 구입 및 투약에 있어서 학교가 전적으로 책임을 지는 만큼 의약품 구비 및 취급과 관련하여 부실하거나, 투약의 연령 금기를 지키지 않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또한 위생 상태와 관련해서도 일정 수준에 도달 하지 못하는 학교보건실이 존재한다. 이러한 문제를 바탕으로 성남시 관내 청소년의 포괄적 건강관리를 위해 보건실 시설, 용품 및 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서 공정한 예산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리고 예산지원을 통한 보건실 환경개선과 함께, '경기도 학교보건실 시설과 기구 및 용품에 관한 규칙'에 따른 실태조사, 보건실 시설 및 환경개선사업 등의 구체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2. 현황 및 문제점

○ 성남시 관내 청소년 건강증진에 관한 조례의 부재

성남시는 관내 청소년들에게 신체적, 정신적 건강에 대한 가치와 책임 의식을 함양하도록 건강에 관한 올바른 지식을 보급하고, 스스로 건강생활을 실천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 함으로써 청소년 건강증진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
현재 청소년 건강증진에 관한 조례와 규칙은 거의 경기도를 기준으로 한 포괄적인 범위로 정해져있다. 따라서 경기도 건강증진 조례로는 성남시 청소년들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기에는 부족하다. 또한 관련 조례가 존재하지만 개선하고 추가해야 할 부분이 존재하여 청소년의 건강증진에 관한 사업에 있어서 조례 제정 및 개정이 필요하다.

○ 성남시 관내 학교보건실의 환경개선 필요성

학교보건실에서는 위생관리 혹은 약과 관련한 많은 문제점들이 발생해 이를 개선하기 위한 조례가 필요하다고 느꼈다. 문제사례로는 의약품 구입 및 투약에 있어서 학교가 전적으로 책임을 지는 만큼 학교 측은 의약품 취급에 주의해야 하는데 이와 관련한 조례가 없어 실제로 의약품의 구비나, 투약 및 환경에 있어서 관리가 부실하다는 문제점이 있다. 일부 학교들은 4개월에서 최대 2년 4개월이 지난 약품을 보건실 캐비닛에 보관하거나 의료처치 도구를 담은 수레인 '드레싱카'를 비치하고있고, 학교 보건 필수 시설 및 기구 9종도 구비되지 않은 상태 등 여러 보건실 위생상태에 관한 문제점이 발생한다. 또, 학교보건실에서 사용하는 약을 각 성분에 따라 '14세 이하 사용주의', '12세 미만 사용 금지' 등 연령 금기에 따라 투약해야 하지만 학교 내에서 이 사항이 잘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 보건실 물품 구비 부실 사례

충남 일부 학교의 보건실에 유효기간이 최대 2년 4개월 가량 지난 약품이 보관·비치돼 있거나 3년이 다 되도록 침구류 세탁을 한 번도 하지 않는 등 관리가 엉망인 것으로 드러났다.
14일 충남도의회 오인철 의원(천안6)이 도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따르면 보령의 A중학교는 유효기간이 최소 4개월에서 최대 2년 4개월이 지난 약품을 보건실 캐비닛에 보관하거나 의료처치 도구를 담은 수레인 '드레싱카'에 비치하고 있었다. 또 학교 보건 필수 시설 및 기구 9종도 구비되지 않은 상태였다.

서천의 B중학교의 경우 사용기한이 2년 5개월이 지난 상처치료 약품 등 2종이 보건설에 보관비치 되어 있는 것은 물론, 2014년 9월부터 올해 1월 20일까지 단 한 차례도 침구류 세탁을 하지 않고 있었다.
이 학교는 또 보건실에 각종 교과서와 악기, 배구공 등이 보관돼 있는 등 사실상 보건실의 기능을 사실상 상실한 채 창고로 사용돼 왔다.

이밖에 청양의 C중학교는 보건실을 이전하면서 필수항목 50종 중 전용 약품 보관장·소독기·냉장고,수도시설 및 세면대, 세족기, 순간 온수기 등 기본 설비조차 갖춰지지 않았다. 오 의원은 "학생들에게 처방하는 약이 변질됐을 경우 부작용을 유발하거나 약의 효과도 장담할 수 없다"라고 우려했다. 이어 "학교보건법에 학교 설립자는 보건실을 설치하고 학교 보건에 필요한 시설과 기구를 갖추도록 했다"라며 "일부 학교의 경우 입법취지가 무색할 정도로 학교보건 관리업무가 엉망이다"라고 질타했다.

[출처] 충청투데이(http://www.cctoday.co.kr)

서울 지역 초등학교 10곳 중 7곳은 법정 학교보건실 면적을 확보하지 않는 등 학생보건에 대한 인식이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시교육청은 시내 564개 초등학교의 보건실 실태를 조사한 결과 379곳(67.2%)의 보건실은 면적기준에 미달했고 305곳(54.1%)은 침대 등 시설을 제대로 갖추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2일 밝혔다.
현행 학교보건법에 따르면 초중고교는 66㎡(26평) 규모의 보건실과 간이침대, 체중계, 응급약품 등을 구비해야 한다.
교육청별로 보면 서울 강남교육청 관내 초등학교는 보건실 면적이 25~40㎡에 불과한 것을 비롯해 49곳 중 40곳(81.6%)이 기준에 미달했다.
이어 성동교육청(77.5%), 강서교육청(75.8%), 북부교육청(75.4%) 등이 기준 면적에 크게 모자랐고 남부교육청은 48.4%로 가장 낮았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강남교육청과 학생 유입이 많은 목동을 포함한 강서교육청 관내 학교는 교실을 마련하기도 어려운 형편이어서 보건실 법적 기준을 충족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그러나 앞으로 보건실 면적을 확대하도록 적극 지도하겠다"고 밝혔다.

[출처] https://www.donga.com/news/article/all/20070803/8474176/1

⇒ **위 사례들과 같은 학교보건실의 물품 구비와 시설 관리의 부실이 일어나지 않도록 성남시는 '성남시 학교보건실 시설 지원 조례'를 제정하여 중점적으로 관내 학교보건실을 관리해야함.**

○ **세종특별자치시 학교보건실 현대화 사업(학교보건실 시설 지원 사례)**

세종시교육청은 2015년 학교보건실 현대화사업 추진을 위해 19개 학교에 1억 9천만원을 지원하였다. 2016년에는 7개 학교 (초등학교 3개교, 중학교 2개교, 고등학교 2개교)에 한 곳당 1천만원씩, 7천만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 **성남시 관내 학교보건실에 대한 예산 지원의 필요성**

의약품 구입 및 투약 그리고 보건실 환경 관리에 있어서 학교가 전적으로 책임을 지는 만큼 학교마다 의약품 구비, 그리고 학교보건실의 환경이 제각각 다름을 알 수 있었다. 대부분의 학교에서 필수는 있지만 권장은 없는 경우도 있다. 따라서 각 학교의 보건 시설 유지를 통한 학교 내 청소년의 포괄적인 건강관리와 의료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을 활성화 시키기 위하여 학교보건실에 경비를 지원함으로써 경기도 학교보건실 시설과 기구 및 용품에 관한 규칙에 나와 있는 보건실에 갖추어야 하는시설과 기구 및 용품의 기준을 충족할 수 있도록 아래의 물품들(권장 포함)을 최대한 구비할 수 있도록 지원 해야한다.

3. 입법 제안

○ **제안내용**

- 성남시 관내 초·중·고등학교 보건시설 유지를 위한 필요 경비 지원
- 학교 보건실 시설과 기구 및 용품에 관한 실태조사 실시

○ **『성남시 학교보건실 시설 지원 조례』 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기도 청소년 건강증진 지원 조례' 및 '경기도 학교보건실 시설과 기구 및 용품에 관한 규칙'에 근거하여 성남시 관내 학교에 재학하는 학교청소년의 포괄적 건강관리를 위한 보건 시설, 용품 및 서비스 제공함에 있어 효율적으로 공정한 예산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하는데 그 목적을 둔다.

제2조(정의)
1. '학교'는 초중등교육법 제3조에서 정하는 학교로 한다.

제3조(보조기준액 제한) 성남시장은 성남시 관할 구역 안에 있는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에 지원되는 보건시설경비 보조기준액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4조(보조사업의 범위) 시장이 각 학급 학교의 보건시설 유지를 위해 필요한 경비 중 보조할 수 있는 사업은 다음 각 호의 사항과 같다.
1. '경기도 학교보건실 시설과 기구 및 용품에 관한 규칙' 제2조와 별표에 따른 물품
2. '경기도 학교보건실 시설과 기구 및 용품에 관한 규칙' 제3조에 따른 실태조사
3. 보건실 시설 및 환경개선사업
4. 보건교육 연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보건실 여건 개선사업

제5조(심의위원회) 각급 학교의 보조사업의 적정하고 균형 있는 지원을 위하여 성남시 보건실 경비 보조금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를 둔다.

제6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성남시 교육업무 담당국장이 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당연직으로 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성남시의회 의원
2. 성남교육지원청 교육경비업무 담당국장
3. 학교 교육에 관하여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전문가
④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기간으로 한다.
⑤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4. 기대효과

○ 청소년들이 주로 의료서비스를 접하는 곳인 학교보건실을 〈성남시 학교보건실 시설 지원 조례〉를 통해 관리하고, 지원하면서 청소년의 건강증진에 기여한다.
○ 청소년들의 의료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이 향상된다.
○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학교 내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된 학교보건실이 시설지원을 통해 더 발전하여, 후에 발생할지도 모르는 감염병 사태에 있어서 보다 준비된 모습을 보여줄 수 있다.
○ 성남시 학교보건실 시설 지원 조례를 시작으로 하여 성남시 관내 청소년의 건강 및 의료에 관한 지원이 확대됨을 기대해 볼 수 있다.
○ 청소년들의 의료서비스의 증진은 학업능력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

제5대 성남시청소년행복의회 정책연구

「성남시 청소년 교통비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청소년 교통비 TFT

유재석 양다원 조정훈
고예진 김지유

1. 문제인식

2019년 9월 28일 첫차부터 경기도 버스 요금이 인상되었다. 기존의 현금 900원, 교통 카드 870원이였던 일반형 버스의 청소년 버스요금이 인상 이후 현금 1,100원, 교통카드 1,010원을 지불하게 되었다.
이번 버스요금 인상은 청소년의 경우 기존보다 현금 22.2%, 교통카드 16.1% 비율로 인상되었으며, 이는 성인과 청소년, 어린이로 구분되는 요금체계에서 청소년의 버스요금 인상률이 가장 높다.

[2019년 경기도 시내버스 요금조정표(시행시기: 2019. 9. 28.(토)]

구 분		교통카드				현 금			
		현행	조정안	증감	조정률	현행	조정안	증감	조정률
일반형 버스	일반	1,250	1,450	200	16.0%	1,300	1,500	200	15.4%
	청소년	870	1,010	140	16.1%	1,100	1,100	200	22.2%
	어린이	630	730	100	15.9%	800	800	100	14.3%
좌석형 버스	일반	2,050	2,450	400	19.5%	2,500	2,500	400	19.0%
	청소년	1,520	1,820	300	19.7%	1,900	1,900	300	18.8%
	어린이	1,370	1,640	270	19.7%	1,700	1,700	300	21.4%
직행좌석형 버스	일반	2,400	2,800	400	16.7%	2,900	2,900	400	16.0%
	청소년	1,680	1,960	280	16.7%	2,000	2,000	200	11.1%
	어린이	1,680	1,960	280	16.7%	2,000	2,000	300	17.6%
경기 순환버스	일반	2,600	3,050	450	17.3%	3,100	3,100	400	14.8%
	청소년	1,820	2,140	320	17.6%	2,200	2,200	300	15.8%
	어린이	1,820	2,140	320	17.6%	2,200	2,200	300	15.8%

[출처] 경기도

대부분의 청소년들은 버스를 타고 학교와 학원 등을 이동한다. 평일에 일반형 버스를 타고 등·하교 할 때와 학원을 왕복할 때 버스요금을 교통카드 기준으로 계산해보면하루 4,040원, 주말을 제외 5일, 4주를 기준으로 한달에 80,800원의 비용이 든다. 1년이면, 969,600원, 중·고교를 재학하는 6년이면 5,817,600원이라는 금액이 발생하게 된다. 이는 중·고생 한달 평균 용돈이 4만 3천원이라는 금액에 비해 교통비로 많은 지출이 발생하고, 청소년들에게 경제적 부담감을 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중고생 한달 평균 용돈은 4만 3,000원"

학생브랜드 엘리트가 1일부터 20여 일간 엘리트의 중·고등학생 및 학부모 온라인 서포터즈를 대상으로 학생들의 용돈 사용 실태를 조사한 결과, 응답한 중·고등학생의 한 달 평균 용돈은 4만3000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에는 전국 중·고등학생 326명, 학부모 98명이 참여했다.

◆ 학생의 75%가 정기적으로 용돈 받아, 평균 용돈은 4만3000원

"정기적으로 용돈을 받는가"에 대한 설문에 학생의 75%가 "그렇다"고 대답해 대다수의 학생들이 용돈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용돈을 받는 주기는 매달이 57%, 매주가 34%로 대부분 월이나 주 단위로 용돈을 관리하고 있었다.

한달 용돈을 묻는 질문에 대한 학생들의 응답의 평균은 약 4만3000원이었으며, 여기에는 식비·교통비·준비물 등이 포함되어 있다. 식비나 교통비 등은 이용 여부에 차이가 있어 편차가 크게 나타났다.

[출처] 중앙일보(https://news.joins.com/article/11928646#none) - MT교육 정도원기자 united97@

이에 따라 경기도에서는 청소년들의 교통비를 지원해 주는 정책을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지만, 지원금액이 미비하고 실효성이 떨어져 성남시만의 청소년 교통비 지원 정책 마련이 필요하다.

2. 현황 및 문제점

○ **기후문제**

현재 환경오염으로 인해 지구온난화가 생기고 있다. 환경문제가 생기는 요인은 많지만 크게 쓰레기 무단투기, 이산화탄소 등 자동차 배기가스, 일회용품 사용으로 인한 오염 등이 있다. 하지만 이중에서도 가장 영향력이 있으며 개선이 하려는 노력이 **필요한 문제 중 하나는 대표적으로 우리가 자주 타고 다니는 자동차 탄소배출이 있다.** 아래 통계를 보면 기후변화에 이산화탄소가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알 수 있다.

이를 통해 개인 자가용을 줄이고 버스 타는 것을 장려함으로써 지구온난화를 줄이고 환경보호에 기여해야한다.

[온실가스별 기후변화 기여도]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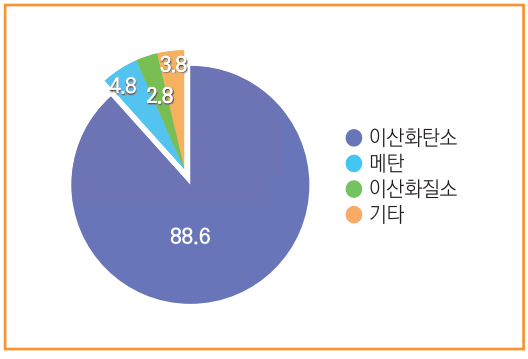

[표1. 2030년 수송부문 온실가스 감축목표] (단위 : 백만톤 CO_2 eq.)
[그림1. 수송부문 에너지소비량 및 자동차등록대수 추이]

2030 BAU	감축량	목표배출량	감축률(%)
105.2	30.8	74.4	29.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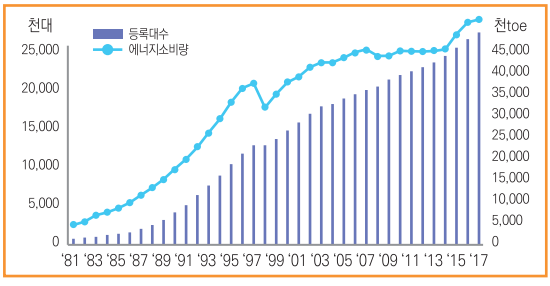

[출처] 다나와 자동차 http://auto.danawa.com/news/?Tab=F5&Work=detail&no=4358616

○ **정부의 노동시간 단축정책 vs 경기도 버스회사의 버스비 인상**

- 주 52시간 노동시간 준수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라 지난 7월부터 버스업체를 포함한 300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주 52시간 노동시간을 준수해야 한다. 특히 경기도 버스업체는 그 간 근로시간 특례업종으로 무제한 근로가 허용되었기 때문에 주 52시간제 도입에 따라 대규모 운수종사자 충원이 요구되는 실정이다.

업계는 2018년 16.4%, 2019년 10.9%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건비 부담 급증한 상황에서 추가 인력채용 여력 없다는 입장을 고수한다.

- 서울·인천과 달리 경기도만 인상하는 이유

서울·인천은 이미 준공영제 도입해 52시간제를 시행중으로 인상요인 없다. 이에 반해 경기도 시내버스는 민영제로 운영, 인력충원에 따른 비용을 전적으로 업체들이 부담해야 하는 구조이며 재원이 제때 확보되지 않으면 버스운행이 22.8% 감축 돼 노선이 폐지되거나 운행횟수가 줄어들고, 노-사 갈등과 파업 등으로 이어져 고스란히 도민들에게 그 피해가 돌아옴에 따라 요금인상 불가피하다.

[출처] 경기도뉴스포털

⇒ 이렇듯 대규모 운행감축 등으로 인한 도민들의 피해 최소화 위해 요금 인상은 불가피하다. 서울·인천과 달리 경기도만 인상하고, 청소년의 인상률이 가장 높은 현 상황에서 청소년의 교통비 지원을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 **현 버스비 지원 정책 사례**

- 경기도 내 청소년 교통비 지원 현황

지자체명	지원유무	지자체명	지원유무	지자체명	지원유무	지자체명	지원유무
수원	X	안양	X	이천	X	여주	X
고양	X	파주	X	오산	X	양평	X
용인	X	시흥	X	하남	X	과천	X
성남	X	김포	X	구리	X	가평	X
부천	X	광명	X	안성	X	연천	X
안산	X	광주	X	포천	X	동두천	X
화성	O	군포	X	의왕	X	남양주	X
						의정부	X

- 경기도 내 청소년 교통비 지원 현황

사업목적	- 경기시내버스와 마을버스 요금이 인상됨에 따라, 대중교통 이용빈도는 높지만 경제적으로 취약한 청소년들의 교통비 부담 완화
지원대상	- 경기도에 거주하는 만 13세~23세 청소년 · 신청일 현재 주민등록상 경기도에 거주(거주기간 제한 없음) · 교통카드로 경기도 대중교통(버스, 전철)을 이용한 청소년

지원금액	- 지원비율 : 신청자가 등록한 교통카드 번호로 대중교통 이용내역을 확인 하여 총 이용금액에 나이에 따른 비율을 적용하여 지원금액 산정 · 만13~18세 : 총 이용금액 × 30% · 만19~23세 : 총 이용금액 × 15% - 반기별 최대 6만원(연간 12만원 한도) · 산정금액이 6만원을 초과하면 6만원까지, 미달되면 산정된 금액만 지급
지원방법	- 청소년 본인 명의의 지역화폐로 지원금 지급 (만13세는 부모님의 지역화폐로 지급)
신청자격	- 신청일에 주민등록상 경기도에 거주하고 있으며, 해당기간 내 경기도 대중교통을 이용한 청소년
지원범위	- 경기버스(시내, 마을)을 이용한 청소년 (환승 구간 중 경기 대중교통이 포함되면 전체교통비를 이용금액으로 인정)
제외대상	- 청소년 교통비는 공적이전소득에 포함되어 청소년 교통비 지원금 신청시 다른 정부 지원금 수급에 제한 및 자격 탈락이 있을 수 있음.
신청절차	- 신청자격 : 청소년 본인, 청소년의 부모 또는 세대주 - 신청방법 : 온라인신청(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포털) (https://www.gbuspb.kr)
등록서류	- 공인인증서 : 신청하시는 청소년의 공인인증서나 부모님 또는 세대주의 공인인증서 필요 - 교통카드 : 지원금을 신청하려는 청소년의 교통카드 번호 필요 - 지역화폐 : 만14세 이상은 반드시 본인명의의 지역화폐 필수

- 일반형 버스 기준 청소년의 버스요금은 카드 1,010원, 현금 1,100원이다. 카드 사용을 기준으로 하루에 최소 왕복 요금은 2,020원이며, 5일, 4주를 기준으로 했을 때 한달 사용 금액은 40,400원이며, 이 경우 **경기도에서 지역화폐로 지원 받을 수 있는 금액은 12,120원이다.**

⇒ 제도를 도입한 취지는 좋으나 **이용금액에 30%의 비율을 적용하여 지원금액을 산정하여 청소년들이 지급받는 실제 금액은 매우 적어, 교통비 부담 완화**에 큰 도움이 되지 못하며, 형식과 허울만 있는 제도에 그치고 있다.

- 화성시 무상교통 『세이브 버스(Save Bus)』 : 청소년

사업목적	- 화성시민이 무료로 버스를 이용하는 친환경 대중교통정책으로 교통부분의 탄소배출을 줄이기 위한 혁신적 교통 정책 - 교통약자까지 언제 어디서나 누리는 보편적 이동권 보호정책 - 미래세대를 위한 지속가능한 도시 - 올해 11월부터 청소년을 시작으로 대상자 단계적 확대 검토
지원대상	- 1단계(2020년 11월 시행) : 화성시민 만 7~18세 이하 - 2단계 : 19~23세, 65세 이상 확대시행 검토 - 3단계 : 2022년 지원대상 점진적 확대 검토
지원금액	- 매월 화성시 관내 통행 목적의 시내·마을버스 이용요금
지원방법	- 화성시 무상교통 전용카드 충전 사용 ⇒ 익월(분기) 정산 후 현금(계좌) 지급 · 월(분기)별 대상자가 사용한 교통카드 비용을 정산, 검증 후 대상자 계좌 지급
신청자격	- 대상자 연령을 일단위 기준

지원범위	- 화성시 관내통행 목적의 시내 마을버스 이용요금 지원 (승하차 정류소 기준이며 관외통행과 수도권 환승 할인은 제외)
제외대상	- 중앙부처 및 타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사업에서 명시적으로 교통비를 받은 경우 화성시 무상교통사업은 중복 지원 불가 - 화성시 무상교통과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중 본인에게 유리한 사업 선택 (중복 신청 불가)
신청절차	- 대상자 본인 또는 대리인(부모·세대주)이 온라인을 통해 신청 (https://savebus.hscity.go.kr) - 무상교통(전용카드) 신청 - 전용교통카드 등록 및 사용 - 배월(분기)교통비 정산 - 교통비 지급

- 화성시의 경우 청소년의 **버스 이용요금 전액을 지원**하며, **계좌로 입금**되어 정산된 지원금을 제한없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 또한 청소년의 교통비 절감과 더불어 친환경 대중교통정책으로 탄소배출을 줄이기 위한 정책의 일환으로 진행하며, 이후 대상이 확대된다는 점에서 더욱 폭넓고 중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진행하고 있다.

⇒ 따라서 청소년의 교통비 절감 및 탄소 배출 절감을 위해 화성시의 청소년 교통비지원 정책을 벤치마킹하여, 교통비 지원 금액은 늘리되, 이를 지역화폐로 지원하는 등의 보완된 정책 마련이 필요하다.

3. 입법 제안

○ **제안내용**

- 만 12세 이상 만19세 미만 청소년에 한하여 등·하교시간에 대중교통을 청소년들의 교통비를 지역화폐로 전액 지원

○ **『성남시 청소년 교통비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성남시 내 청소년들에게 교육 기회를 보장하고 가계의 경제적 교통비 부담을 경감 하고자 교통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성남사랑상품권"이란 「성남사랑상품권 활성화 기금 설치」제2조 제4호에 따른 유가 증권을 말한다.
2. "통학 교통비"란 청소년들의 경제적 교통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교통비 지원금을 말한다.

제3조(지원 대상) 만 12세 이상 만19세 미만 청소년들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4조(지원 내용)
1. 청소년의 등·하교 시간은 6시 30분에서 9시, 15시에서 19시로 지정한다.
2. 청소년 교통비의 1회 지원 기간은 3개월을 기준으로 하여 1년을 4분기로 나누어 4회 지급한다.
3. 조례에서 정한 등.하교 시간에 버스를 이용한 청소년에 한하여 버스비를 전액 지원한다.
4. 성남시장은 분기별로 "성남사랑상품권" 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청소년 교통비 지원에 대한 지원액 및 지원 절차 등을 포함하는 지원계획을 수립. 시행 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지원계획의 추진목표와 방향
2. 지원 대상과 실태 파악 관련 사항
3. 지원액
4. 지원방법 및 절차

제6조(지급 방법)
1. 지원 등·하교시간에 버스를 탑승한 청소년들에 한하여 지원을 한다.
2. 교통비 지원 지급 방법은 "성남사랑상품권" 으로 지급을 한다.

제7조(지원중지 및 환수 조치)
1. 지원 대상자가 교통비 지원을 더 받기 위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지원 기관에서 소란을 피울 경우 그 지원 대상자에 대한 교통비 지원은 중지한다.
2. 지원 대상자가 사망을 한 경우 그 지원 대상자 에게 지원 되어야 하는 "성남사랑상품권"은 지원을 중단한다.
3. 지원 대상자가 아닌 다른 사람이 대신 "성남사랑상품권" 을 수령할 경우 "성남사랑상품권" 은 회수함을 원칙으로 한다.
4. 지원 대상자가 지원기관에 실수로 지원금액 보다 많은 금액에 "성남사랑상품권"을 지원 받을 경우 원래 지원 금액이 아닌 추가된 지원금액을 지원기관에 알리고 환수해야 한다.
5. 다른 사람의 명의를 도용하거나 허위로 신청할 경우에는 (형법) 제231조에 따라 형사고발
6. 교통카드를 타인에게 대여를 해주거나 부정 사용한 경우 지급중지 및 환수 조치를 한다.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4. 기대효과

○ 청소년들이 사용한 교통비를 지원해줌으로써 청소년이 느끼는 부담감을 줄여준다.
○ 대중교통을 장려함으로써 탄소 배출량을 줄이고 환경오염을 막을 수 있다
○ 청소년들이 사용한 교통비를 성남사랑상품권으로 지원해 줌으로써 지역상권 활성화에 이바지 할 수 있다.

제5대 성남시청소년행복의회 정책연구

「성남시 청소년 심리검사 지원 조례」 제정

청소년 심리 TFT 이주원

1. 문제인식

○ **청소년들의 심리와 감정의 무관심 증가**

- 통계청의 2018, 2020 청소년 통계에 따르면 대한민국 청소년의 3분의 1은 극심한 우울감과 불안감 등의 스트레스를 느끼고 있다. 그러나 청소년 시기에 스트레스를 받고 힘든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사회의 인식으로 인하여 청소년이 자신의 감정을 제대로 드러내지 못하고 방관하여 극심한 우울과 자살 충동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늘고 있다.

• 2019년 중·고등학생 10명 중 4명(39.9%)은 평상시 스트레스를 많이 느끼며, 10명 중 3명(28.2%)은 최근 1년 내 우울감을 경험함.
• 2018년 청소년(9~24세) 사망자 수는 전년 대비 3.8% 증가한 2천여 명이며, 사망 원인은 고의적 자해(자살), 안전사고, 악성신생물(암) 순으로 나타남.
• 2019년 청소년 고민 상담유형은 정보제공(18.2%), 정신건강(18.1%), 대인관계(16.6%), 학업·진로(12.3%) 순임

[출처] 통계청 2020 청소년 통계

[청소년(9~24세) 사망원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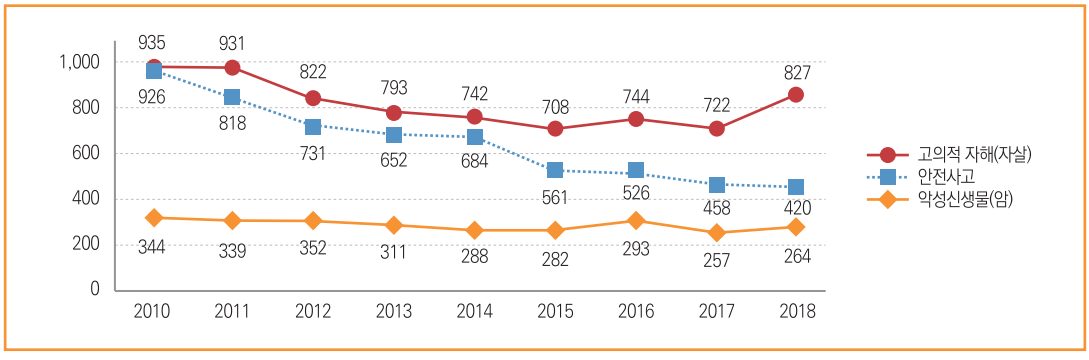

[스트레스 인지율(2019년)]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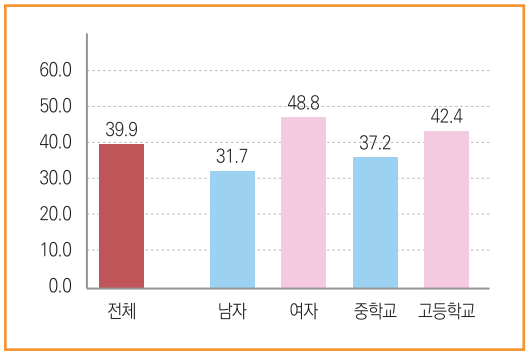

[우울감 경험률(2019년)]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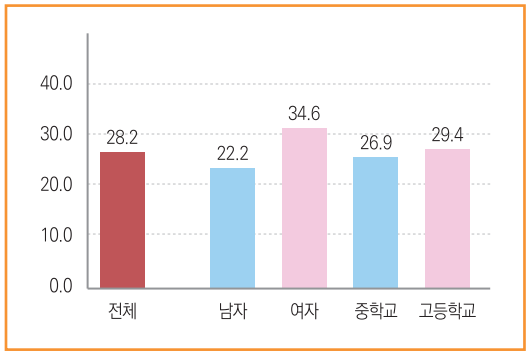

[자료] 교육부·보건복지부·질병관리본부, 「청소년건강행태온라인조사」

○ **청소년 심리 지원의 신뢰성과 안전성 필요**

- 교육부에서 주관하고, 학교의 상담실을 통해 상담·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위클래스, 여성가족부에서 주관하고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에서 위탁 운영하는 청소년 사이버 상담 센터 1388 등이 현재 존재한다.
  하지만 위클래스의 경우, 학교 내에 위치하고 있어 비밀 보장이 어렵다는 점과 1388의 경우, 온라인 상에서 이루어져 접근성이 좋지만 전문적인 상담이 힘든 부분에서 근본적인 한계를 안고 있다.

- 학교에서는 Holland 진로적성탐색검사, 한국형 MI 다중지능검사, 한국형 RIASEC 진로 탐색검사 등을 시행하여 대부분 진로와 학업, 인성 위주의 검사를 자주 진행하고 중요하게 다루는 반면에 교육청에서 실시하는 학생정서·행동특성검사를 특정 학년 대상으로만, 지정된 기간에만, 온라인으로 진행한다는 점에서 청소년의 심적 문제를 심도있게 고민하지 않는다는 한계가 드러난다.

구 분	내 용
Holland 진로적성탐색검사	· 6개의 직업적 성격유형을 측정하고, 측정된 진로유형(성격유형)에 따라 전공학과와 직업을 탐색할 수 있도록 돕는 검사 · 직업사회 경험이 적고 학업성적이 낮거나 진로성숙이 낮은 학생들에게 능력적성검사나 직업흥미검사들이 효과적인 진로적성을 찾아내지 못하는 문제점을 극복
한국형 MI 다중지능 검사	· 검사하는 지능으로는 언어지능, 논리수학지능, 시각공간지능, 신체운동지능, 음악지능, 자연지능, 자기이해지능, 대인관계지능 · 학생 자신의 강점영역과 약점영역을 확인함을 통해 자기 이해 및 진학, 진로 탐색과 관련된 유용한 정보를 제공
한국형 RIASEC 진로탐색검사	· 6개 유형의 흥미, 적성, 가치, 직업영역에 대한 선호도를 검사

[출처] 휴노 스쿨온 초중고 표준화 심리검사 서비스, 제일교육사

[학생정서·행동특성검사 관리 흐름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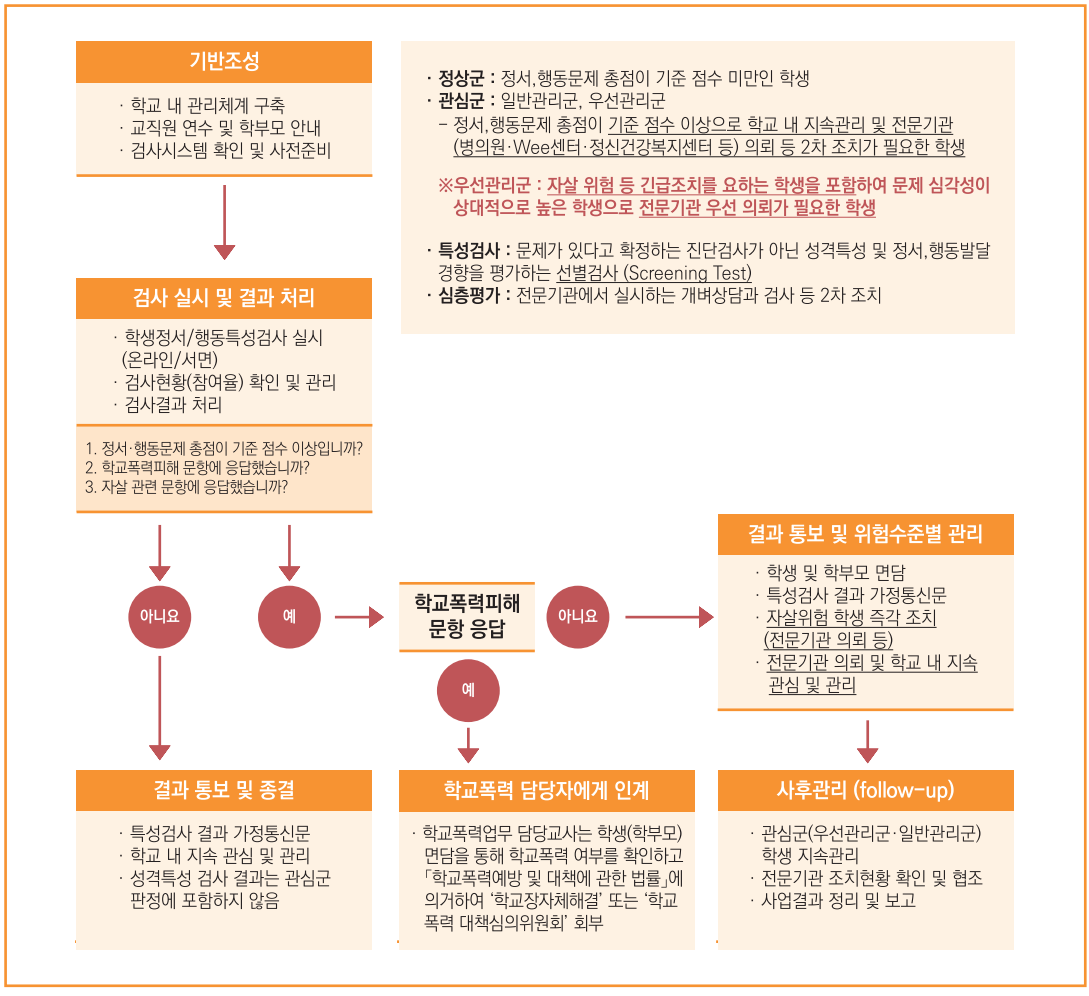

[출처] 2020 학생정서·행동특성검사 및 관리 매뉴얼

2. 현황 및 문제점

○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청소년의 정신 건강 문제**

- 코로나19로 인해 급격히 생활 패턴이 바뀌고 외출이 제한되어 집에 있는 시간이 많아지자 코로나19와 우울감을 합성한 'COVID 블루(Corona Blue)'라는 신조어까지 생겨나는 등, 심리적인 어려움을 겪는 청소년들이 늘어났다.
-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청소년,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말하다'를 주제로 열린 토론회에서 '2020 청소년 삶의 질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연구는 한도희 백석대 교수, 김윤나 서울사이버대 교수에 의뢰해 전국 중·고등학생 1,055명을 대상으로 2020년 7월 1~21일 사이 온라인 설문을 통해 이뤄졌다. 조사결과 청소년들의 삶의 만족도는 코로나19 발생 이전 6.41점(10점 척도)에서 이후 4.14점으로 2.27점 하락했다. 코로나19 유행 시기 학생들이 가진 감정은 답답함(59.7%), 불안과 걱정(27.1%), 우울함(4.6%), 두려움(3.4%) 등 부정적인 감정이 컸다.

[출처] 한국청소년재단, 「청소년,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말하다」, 2020

[코로나로 겪는 가장 큰 감정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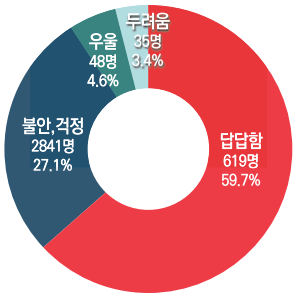

감정 – 코로나19 이후 청소년이 겪는 감정 설문 결과

[코로나바이러스 발생 전, 후의 삶의 만족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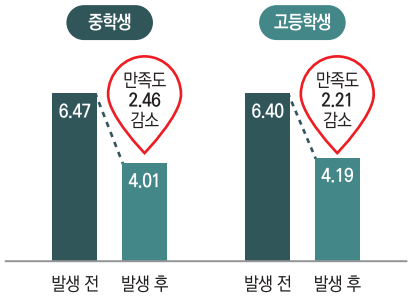

– 여성가족부 산하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3월부터 9월까지의 청소년사이버상담센터에서 실시한 우울·위축 문제 상담은 30,983건으로 전년도 17,120건 시행된 것에 비해 크게 증가하였다.
특히 우울·불안, 충동·분노조절 문제에 대한 상담은 전년도에 대비하여 85.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고, 자해 및 자살 문제에 대한 상담은 69.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0년 3월~9월 청소년사이버상담센터 상담 현황]

구 분	우울·위축	강박·불안	충동·분노조절	자해	자살문제
2019년 3~9월	17,120	7,338	952	1,562	1,660
2020년 3~9월	30,983	14,983	1,211	2,176	3,292

[출처] 청소년사이버상담센터

○ **심리 치료의 부정적 인식과 회피율 증가**

– 우리나라는 심리 치료, 정신과 진료 등을 필요로 하는 상황이어도 진료 기록이 남을까 걱정하고 남들의 시선 때문에 심리 치료를 받기를 꺼려한다.
이는 사회의 부정적인 인식과 체면을 중시하는 문화의 영향으로, 보건복지부 삼성서울병원 정신 질환 실태조사를 살펴보면 평생 살아오며 정신건강 문제로 전문가와 상의한 경험이 있는 사람은 22.20%에 불과 해 선진국에 비해 크게 낮은 수준인 것으로 분석됐다.

[정신질환을 진단받은 사람에서의 정신건강서비스 이용률의 국가별 비교 (한국:평생, 그 외:12개월)]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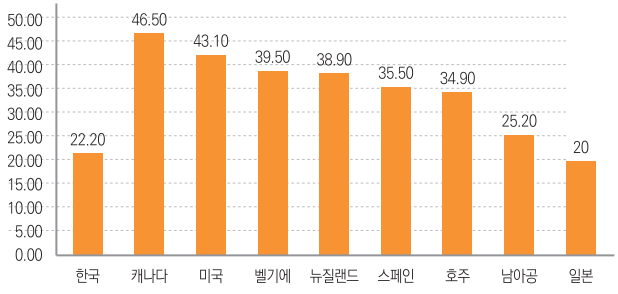

[출처] 보건복지부 삼성서울병원 2016년도 정신질환실태조사

한국에서는 체면을 중시하는 문화와 급속한 산업화로 자살률이 치솟고 있지만, 전문적인 정신 · 심리 상담 치료를 기피하는 분위기가 여전하다.
한국에서는 매일 30여 명이 자살로 생을 마감하는데, 한국의 인구대비 자살률은 미국의 3배 수준이고, 지난 10년 간 일면식도 없는 사람들이 인터넷을 통해 만나 동반 자살을 하는 현상도 크게 늘었다.
최근 몇 주간 대학총장, 아이돌 그룹 리더, 스포츠뉴스 아나운서, 축구선수, 대학생, 교수 등이 잇따라 스스로 목숨을 끊는 등 한국에서 정치인, 기업인, 연예인 등의 자살은 일상사가 되었을 정도이다.
자살의 80% ~ 90%는 우울증의 결과로 추산되고 있다. 이렇게 상황이 심각하지만, 최신 기술과 유행의 '얼리 어답터'인 한국에서 유독 서구식 상담 치료만큼은 확산되지 못하고 있다.

[출처] 인터내셔널 헤럴드 트리뷴(IHT)

○ **청소년의 심리적인 문제를 대처하지 못했을 때의 발생하는 문제점**

- 한국자살예방협회의 연구 자료를 보면 전체 자살자의 약 30%는 우울증 때문에, 50%는 신체적 질병이나 경제적 어려움, 성적 문제 등 개인적인 문제로, 나머지 20%는 대인관계에서 오는 스트레스 때문에 자살을 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따라서 심리적 문제를 대처 하지 못하면 자살 충동, 더 나아가 자살까지 이어질 수 있다.
- 우울과 불안이 지속된다면 일상적인 삶에 악영향을 끼치는 증상이 나타난다. 이러한 증상에 대해 대처하지 못하고 해결하지 못한다면 더 나아가 극단적인 행동을 초래할 수도 있는 등 일상생활이 불가능해질 수도 있다.

[출처] 우울증과 자살-서울대학교 의과대학 국민건강지식센터

청소년우울증은 수면, 식사, 신체, 사고 방식, 행동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몇 달 또는 몇 년간 증상이 계속되기도 하고 또 재발이 잘 되기 때문에 치료를 제대로 받지 못할 경우에는 조울 증상으로 장기간 고통을 받게 되거나 심하면 자살에까지 이를 수도 있게 되는 무서운 병이다.

청소년우울증 환자들의 많은 경우에 주로 몸이 여기저기 아픈 증상만 나오는 수도 있어 다른 과에서 필요 없이 장기간 검사나 치료를 받는 경우도 있다. 이런 증상에는 소화불량, 두통등의 다양한 부위의 통증, 목과 가슴에 뭔가 걸린 듯한 느낌, 변비 및 설사, 성욕감퇴 등이 종종 나타난다.

청소년우울증은 증상의 정도에 따라 증상이 심한 주요 청소년우울증과 증상이 상대적으로 덜 심한 청소년우울증인 감정부전장애로 나눌 수 있는데 주요 우울증은 일상생활을 제대로 못 할 정도로 증상이 심한 상태로서 자살사고, 환청, 망상 등을 보인다.

또한 보통의 청소년우울증과는 달리 잠을 지나치게 많이 자고 많이 먹고 몸이 천근같이 무겁고 다른 사람의 태도에 예민한 반응을 보이는 비전형 청소년우울증도 있고 계절에 따라 증상이 심해지는 청소년우울증도 있다.

[출처] 공공보건포털 G-health - 자살까지 이어지는 '청소년 우울증'…해결법은?

○ **국내·외 청소년 심리 상담 정책 및 제도 사례**

- 독일 학교심리서비스 기관 (Schulpsychologischer Dienst) / 독일의 김나지움

· 학교상담사가 각 학교당 2명이 존재
· 초기 면접 상담 실시
· 정신분석, 가족상담, 행동치료, 인지치료, 게슈탈트 상담, 학습상담 등

독일의 한 초등학교 2학년인 A학생은 수업시간에 ADHD 학생처럼 행동하였다.
그래서 담임교사는 학부모 상담을 요청했는데, A학생의 아버지는 학생의 문제행동을 담임교사의 문제로 보고 담임 교체를 학교당국에 요구했다. 담임교사의 입장에서는 억울한 일이었다. 그래서 이 문제의 해결을 학교심리서비스 기관에 의뢰하였다. 학교심리서비스 기관에서는 학교를 방문하여 수업장면에서 A학생을 직접 관찰했다.
그리고 부모의 동의 하에 A학생을 대상으로 ADHD 검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이 학생은 담임교사때문이 아니라 본인 자신이 ADHD적 요인을 가지고 있다는 판정이 나왔다. 따라서 학부모가 원하는 담임 교체를 할 필요가 없었으나, 담임교사가 그동안 아버지의 부당한 행동으로 상처를 입었고, 그로 인해 해당 학생과도 불편한 관계가 되었다는 점을 고려하여 학생의 복지 차원에서 학급담임을 교체하여 주었다.
그리고 그 학생에게는 ADHD 치료를 위한 상담 및 심리치료와 약물치료 서비스가 제공되었다.

[출처] 홍종관 대구교대 교육학과 교수(한국학교상담학회 회장)

3. 입법 제안

○ **제안내용**

- 성남시 청소년 심리 검사 비용 지원 대상 확대

· 심리/정서 검사에 해당하는 MMPI-2/A, HTP, SCT, KFD 등 최대 16만원의 비용이 드는 심리검사를 시에서 모든 청소년에게 지원해준다.

· 성남시 청소년 심리검사 비용 지원 제도의 홍보를 추진한다.

검사명		소요시간	내 용	검사료	비 고
종합심리검사		3시간 이상	지능, 인지, 정서, 성격 등 심리상태를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개인에 대한 이해를 돕는 검사입니다. - 청소년 : K-WISC-IV, K-WAIS-IV, HTP,KFD, SCT, BGT, Rorschach, MMPI 등 - 학부모 : MMPI2, SCT, CBCL 등 ※ 검사 종류는 검사 목적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160,000	신규 상담사례 신청가능
지능검사		1시간 30분 이상	인지 능력을 중심으로 심리상태, 성격 등을 탐색하는 검사입니다.	40,000	본 센터 내담자에 한해 개별 심리검사 가능
기타검사	다면적 인성검사	1시간	심리상태, 스트레스의 정도, 적응수준의 정도를 파악하여 보다 심중적인 성격을 이해하는 검사입니다. (MMPI-A, MMPI-2)	20,000	
	성격 유형검사		개인마다 타고난 심리적 경향과 그 경향이 지니는 성격의 역동을 알아내어 자신과 타인을 이해하도록 돕는 검사입니다. (MBTI, MMTIC)	10,000	
	진로검사		자신의 성격, 능력, 유능감, 직업적 흥미를 알아봄으로서 진로 선택에 도움이 되 는 검사입니다. (Holland 진로발달, 탐색검사)		
	학습검사		학업 성취에 영향을 미치는 학습동기, 학습 태도, 심리적 요인을 이해하는 검사입니다. (U&I 학습유형검사)		
	기질검사		자신의 성격 특성 및 장단점을 이해할 수 있는 검사입니다. (JTCI, TCI)		

[출처] 성남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상담지원-심리검사

- 심리 상담이나 검사에 대한 보호자의 동의 불필요 사실 강조

· 의료법 제15조 제1항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개설자는 진료나 조산요청을 받으면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지 못한다'에 따르면 청소년 스스로 검사를 받을 수는 있지만 기관이나 병원에서 거부하는 경우가 대다수이다.
따라서 보호자의 동의가 불필요하다는 사실을 다시 강조하여 청소년들이 스스로 자유롭게 검사를 받을 수 있게 한다.

- 학생정서·행동특성검사 대상 범위 및 실시기간 확대

· 청소년의 우울감 경험률과 스트레스 인지율을 학년별로 분석한 한국교육개발원의 연구자료에 따르면, 중학교 2학년 학생들의 우울감 경험률은 2015년 21.0%에서 2016년 22.7%, 2017년 24.4%, 2018년 25.7%, 2019년 27.7%로 전체 학년 중 가장 크게 늘었다.

· 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의 스트레스 인지율 또한 2015년 38.7%로 최저를 기록한 이후 2019년에는 43.2%를 기록하여 4년 연속 증가했다.

⇒ 따라서 현재 학생정서·행동특성검사의 대상인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뿐만 아니라 전원의 심리검사를 학교에서 공통으로 진행하여 검사결과에 따른 지원을 연계한다. 그리고 교육청에서 지정한 실시기간 외 청소년이 원하는 기간에 언제든지 유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 학교 밖 청소년들은 꿈드림, 성남시청소년재단 등 청소년 유관기관을 이용하여 같은 지원을 받는다.

[청소년의 스트레스 인지율 (2006~20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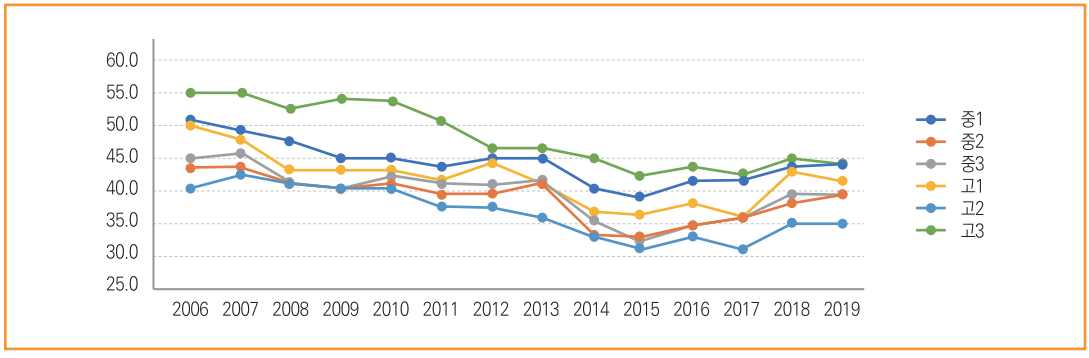

[청소년의 우울감 경험률 (2006~20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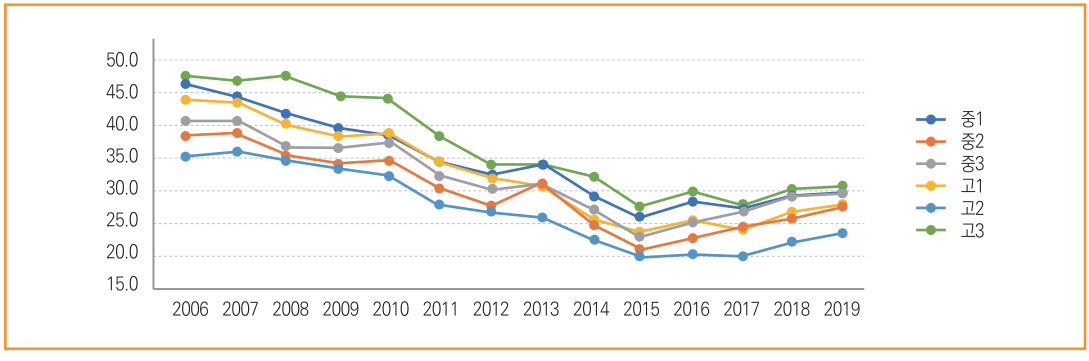

[출처]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센터 '청소년 건강행태조사로 본 청소년 우울감'

○ 『성남시 청소년 심리검사 지원 조례』 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의 심리적 문제를 사전에 인지하고 치료하기 위한 심리검사를 유도하고 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 성남시에 거주하는「청소년 기본법」제3조제1호 본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심리적 문제"란 심리적인 불안정 상태가 지속적으로 나타나 심리적 혼란을 겪는 것을 말한다.

제3조(책무)
① 성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청소년의 심리 문제를 예방하고 지원하는데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성남시교육지원청 교육장(이하 "교육장"이라 한다)은 학생의 심리 문제를 예방·지원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③ 성남시민은 시장과 교육장이 추진하는 청소년의 심리 상담 지원 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시행 등)
① 시장은 청소년의 심리 상담을 지원하기 위하여 성남시 청소년 심리 상담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심리 문제 예방의 목표 및 추진방향
2. 심리 문제 예방에 관한 시책
3. 관련 기관·단체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 방안
4. 심리 문제의 예방에 관한 교육 및 프로그램 홍보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지원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단체 등에 의견을 듣거나 자료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제5조(사업추진) 시장은 청소년의 심리 상담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심리상담, 검사 비용 전체 지원
2. 심리 검사를 위한 교내, 청소년 유관기관 프로그램 진행
3. 심리적 문제에 관한 실태조사
4. 사업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보호자의 동의 불필요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청소년통합지원체계의 활용) 시장은 청소년의 심리 문제를 예방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청소년복지 지원법」제9조에 따른 청소년 통합 지원체계를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

제7조(비밀엄수) 청소년의 심리 검사 지원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4. 기대효과

○ 청소년의 우울감, 불안감 등의 심리적 문제 해결
- 올바른 심리치료나 상담, 검사 등을 통해 위기 청소년의 문제를 예방하고 대처하여 청소년의 우울감을 감소시키고 자살률을 점차 낮춘다.

○ 심리검사 및 정신과 치료에 대한 부정적 인식 감소
○ 청소년 심리 지원의 신뢰성과 안전성 확충
○ 행복감을 느끼고 자아 정체성을 올바르게 탐색하는 청소년기를 형성

제5대 성남시청소년행복의회 정책연구

「성남시 민주시민교육 조례」 개정

청소년 정치참여 TFT 정규연 민소윤 이민하 신가원

1. 문제인식

아동과 청소년은 어리고 미성숙하다는 것을 이유로 학교 및 사회에서 그들이 마땅히 누려야 하는 시민적 권리와 자유를 제한 받고 있다. 가장 대표적으로 그들의 정치 참여 권리가 학교 규칙에 의해 통제, 제한되고 있다.
이에 일부 지자체가 학생인권조례를 제정하여 적극적으로 대처 노력을 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정치 참여에 대한 권리를 완전히 보장받기는 힘들다.

2019년 12월 27일, 공직선거법이 통과되며 국내 선거연령이 만 18세 이상으로 하향되었다. 제21대 대한민국 국회의원 선거가 시행되면서 처음으로 만 18세가 선거에 참여 하였고, 사전투표에서는 만 19세 이하 유권자 26만 명이 참여하여 청소년, 청년 유권자가 정치 참여에 가지는 관심과 열정을 증명하였다.

제21대 대한민국 국회의원 선거를 통해 청소년이 보인 관심과 열정과는 반대로 청소년들의 적극적인 정치 참여는 아직 사회적으로 허용 받지 못하고 있다. 선거관리위원회의 '만 18세 선거에 따른 정치관계법 운용기준'에서는 청소년들의 정치 참여의 계와 사회가 주고 있는 경계를 명확히 보여주고 있다.
내용에는 만 18세 미만의 선거운동과 정당 가입 불가, 학교 내 선거운동과 연설 제한 등이 있다. 투표권을 갖게 되는 나이가 하락함에 따라 청소년들의 정치활동이 활성화됨이 마땅하지만, 이러한 제한으로 청소년들은 주체적인 정치활동에 제약을 받고 있다.

이런 청소년들의 정치 참여와 권리에 관한 관심을 인식한 교육부는 여러 해 학교 현장에 민주주의 교육을 도입하려는 시도를 해왔다. 교육부는 2018년 민주시민교육 활성화를 목표로 민주교육 활성화 종합 계획을 수립하였다.

하지만 그 역시 실제로 원활하게 시행되지는 못했으며 교과서의 표현들의 청소년들의 자유로운 생각을 가둔다는 의견이 있었다. 이에 지자체 주도의 민주시민교육을 실시하고, 지자체의 의무를 명시함으로써, 학교에서 시행되고 있는 민주시민교육의 한계를 보완하여 청소년의 시민적 권리가 보장되고, 자유롭게 참여 할 수 있도록 올바른 참여와 정치의 방향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2. 현황 및 문제점

학생을 사회의 일원으로 존중하지 않거나 입시 전까지 모든 참여 활동을 유예하는 문화로 인해, 학생들이 직접 참여하고 실천 할 수 있는 정치 참여 활동이 미비하다. 청소년들이 정치에 관심을 가지고 투표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국가공무원법], [공직선거법]에 위배되지 않는 한에서 실용적이며 효과적인 시민적 경험을 청소년들에게 제공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현재 시행되는 청소년 민주시민교육 및 활동은 청소년들에게 만족함을 주지 못하며, 많은 한계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다양한 학생 자치활동, 민주시민교육 등의 실천과 참여를 통해 학생들의 시민적 효능감 제고가 필요하다.

○ **교내 학생 자치기구의 한계**

청소년이 직접 참여하고 실천할 수 있는 민주시민교육이 부족하다. 유년기에 시민으로서의 경험을 가지지 못한 것이 장래에 시민으로서 권리와 의무를 적극적으로 행사하는 데 있어 장애로 적용될 가능성이 높다.

단위학교 여건에 따라 학생자치기구를 설치·운영하고 있으나, 실질적인 결정권 부족, 행·재정상 지원 부족으로 다수 학교에서 학교 내 정치 참여 기구 라고 할 수 있는 학생자치회는 형식적인 기구로 전락했다.

관내 청소년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결과 총학생회, 학급자치회 활동으로 정치활동을 경험한 사람이 47.3%였고, 경험한 정치참여 활동이 본인의 정치관 또는 정치에 대한 관심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지 않았다고 한 응답자는 50.5%로 과반수를 넘겼다. 이는 청소년들이 경험하는 정치 활동이 청소년들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주고 변화를 일구게 하는데는 부족함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참여해보신 적이 있다면, 어떤 활동을 참여해 보셨습니까? (복수 응답 가능)	총학생회/ 학급자치회 활동	47.3%
	청소년 정치참여 기구	14.3%
	사회, 정치 관련 동아리 활동	13.2%
	공적 행사	13.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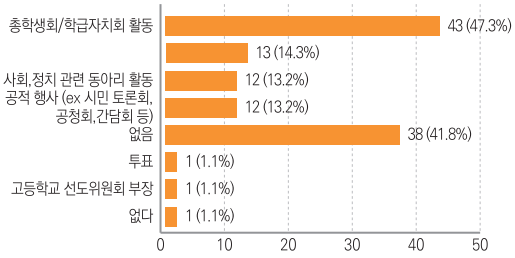

경험하신 정치참여 활동이 본인의 정치관 또는 정치에 대한 관심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습니까?	예	49.5%
	아니요	50.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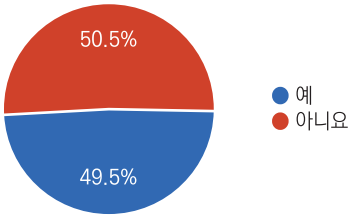

[출처] 〈청소년 민주시민 교육의 현황과 민주시민 교육 강화의 필요 제언〉 성남고등학교 김대희, 박건우, 최울

○ **민주시민교육 정책의 제한적·형식적 운영**

교육부의 발표에 따르면 일부 시·도교육청에서 민주시민교육을 위한 교원 연수를 운영하고 있으나, 강사진 부족과 제한된 연수 인원으로 희망하는 모든 교원에게 충분한 연수 기회를 제공하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또한 비민주적인 학교 구조·환경에서 민주시민교육을 실시한다면 그 효과는 반감 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민주적 학교 환경은 민주시민교육의 성공을 위한 필수조건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학교 운영에 대한 의사결정과정에 각 교육 주체의 역할이 제한적·형식적이며, 실질적 의사결정 권한이 없는 경우가 많다.

전국 시·도 교육청에서는 민주시민교육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다음은 경기도 교육청 남부청사의 작년 주요 추진 정책과 2020년 변화·강조된 사항이다.

구 분	2019년 주요 추진 정책	2020년 변화·강조 사항
실천중심 시민교육	□ 교육과정 연계 민주시민교육 □ 민주시민교육 실천 학교 운영 □ 존중과 배려의 생활공동체 성장 지원	□ 민주시민교육 교육과정 운영 □ 민주시민교육 실천학교 사례 공유와 확산 □ 민주시민교육 지역네트워크 활성화 □ 따뜻한 감성이 있는 학교문화 조성

학교민주주의 정착과 학생자치 내실화	□ 교육주체의 참여와 학교자치 확대 □ 민주적 의사결정 시스템 구축 □ 학생자치 자율성 확대 □ 청소년교육의회 구성 및 운영 □ 학생 참정권 교육 강화	□ 학교자치조례 현장 안착과 학교자치 시스템 강화 □ 교육주체의 학교교육활동 참여·결정권 확대 (교육과정, 재정, 인사) □ 학생자치 내실화와 정책참여 보장
평화통일교육 확산	□ 학교평화통일교육 활성화 지원 □ 학교평화통일교육 지원체계 구축 □ 세계·동북아 평화교육 프로젝트 운영	□ 학교평화통일교육 내실화 지원 □ 학교평화통일교육 지원체계 운영 활성화 □ 세계시민·동북아 평화교육 프로젝트 확산 □ 주제 중심 근현대사 교육 자료 개발
다문화 어울림교육 활성화	□ 다문화감수성 제고를 위한 교육과정 운영 □ 다문화가정 학생 맞춤형 교육지원 내실화 □ 다문화 국제·혁신학교 설립 기반 구축	□ 다문화 감수성 제고를 위한 교육과정 운영 정착 □ 다문화가정 학생 맞춤형 교육지원 시스템 강화 □ 다문화가정 밀집지역 교육력 제고

[출처] 경기도 교육청 2020 민주시민교육과 정책 추진 기본계획

하지만 관내 청소년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결과 실제 민주 시민 교육을 받지 않았다는 응답은 응답자의 과반수인 54.9%였다. 교육청이 민주시민교육을 활성화 시키려고 한 노력에도 불구 하고 많은 응답자들이 교육을 받은 적이 없다고 응답했다. 이는 효과적인 민주시민교육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볼 수 있다.

또한 민주시민 교육을 받았다고 응답한 응답자의 과반수가 민주시민교육이 본인의 정치관이나 정치에 대한 관심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냐는 질문에 '아니오'라고 응답하였다.

긍정적인 영향을 주지 못한 가장 큰 이유는 교육이 지루해서(44.2%), 교육 내용이 효과적이지 않아서(29.4%) 등이었다. 이를 통해 청소년들이 직접 참여하고 느끼며 실질적인 민주시민 교육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반면에 "청소년에게 민주시민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가?"라는 질문에는 응답자 86.8%가 그렇다고 답했다. 청소년들은 민주시민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실제 민주시민교육은 원활히 실행되고 있지 않으며 이루어진 민주시민교육은 청소년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크게 주지 않는다. 따라서, 청소년들이 배울 수 있고 효과적이며 청소년 모두가 참여하는 민주시민 교육이 필요하다.

민주시민 교육을 받은 적 있습니까? (교내·외 상관없이)	예	45.1%
	아니요	54.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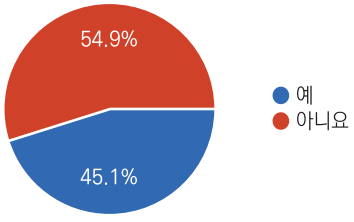

민주시민 교육이 본인의 정치관이나 정치에 대한 관심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습니까?	예	45.1%
	아니요	54.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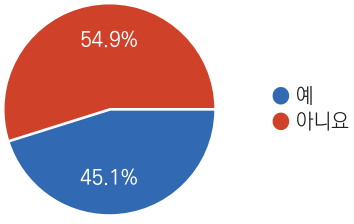

민주시민 교육이 본인의 정치관이나 정치에 대한 관심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지 못했다면, 어떤 이유 때문입니까?	교육 내용이 효과적이지 않음	29.4%
	교육이 지루함	44.2%
	교육 내용을 이해하지 못함	11.7%
	일부 정치색에 편파적임	14.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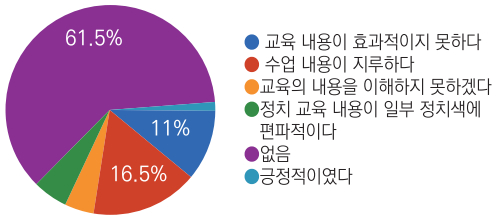

청소년에게 민주시민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86.8%
	아니요	13.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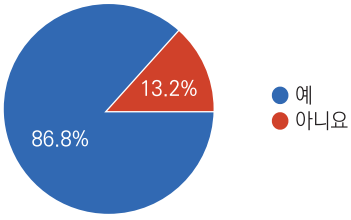

[출처] 〈청소년 민주시민 교육의 현황과 민주시민 교육 강화의 필요 제언〉 성남고등학교 김대희, 박건우, 최울

민주시민교육이 긍정적인 영향을 주지 못한 근본적인 이유를 해결할 방법을 아는 것은 현재 실시하고 있는 민주시민교육의 대상인 청소년 당사자이다. 하지만 성남시 민주시민 교육에 관한 조례에서는 민주시민교육자문위원에 청소년을 포함하고 있지 않다. 효과적인 민주시민교육을 계획, 실시하기 위해서는 청소년들이 민주시민교육자문위원으로 활동하는 것이 마땅하다.

○ 해외 민주시민교육 사례

- 호주

호주의 민주시민교육은 정부 기관인 호주 선거위원회와 그 산하의 국립선거교육센터에서 주도적으로 실시한다.
민주시민교육 내용에는 선거 과정에 대한 학습을 통해 헌법과 법률이 시민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스스로 설명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시키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정부뿐만 아니라 정당과 국회 역시 민주시민교육을 실시하며 청년들의 시민사회 참여를 촉진시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며 민간단체에서도 연구협력 등 정부의 효과적인 민주시민교육을 위해 보조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이처럼 호주는 지속적이고 활발한 민주시민교육을 실시해왔다.
그 결과, 호주에서는 선거 때마다 90%가 넘는 투표율을 보여주고 있다.

- 독일

독일의 정치교육의 중앙기관은 연방정부 내무성 관할에 설치된 연방정치교육센터이다. 정치적 판단능력, 정치적 행동 능력 그리고 방법론적 활용능력 등 3가지 요소를 기반으로 정치교육을 실시한다. 그리고 이 3가지 역량 요소를 기반으로 대학 진학 전 의무교육과정을 초등학교, 주요학교, 인문계 중고등학교, 실업학교 등 4단계로 세분화해 표준적인 교육내용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정치재단, 교회, 시민대회 등을 통해 학교 밖 청소년들에게도 정치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독일의 정치교육체계는 예산과 정책 등 행정적 지원구조가 기능적으로 잘 구축되어 있다. 그 결과, 독일 청소년들에게 권위주의적이고 군사적인 독일 나치체계의 기반이었던 이념과 사상을 제거하였고, 독일 청소년들에게 민주적인 사상을 심어주게 되었다. 또한 독일 시민들이 정치에 관심을 갖을 수 있게 되었다.

⇒ 이처럼 해외에서는 적극적인 민주시민교육을 통해 시민들의 민주정신을 향상시키고 그에 따른 투표율 증가 등의 민주시민교육의 이점을 보여주었다. 우리나라의 경우 민주시민교육이 이뤄지고 있으나 위에 제시한 호주, 독일에 비하여 민주시민교육을 시행하는 범위와 규모에서 소극적인 자세를 가지고 있어 크게 효과를 보이고 있지 않다.
따라서 학교에서 진행하는 민주시민교육을 보완하기 위한 지자체 단위의 움직임이 필요하다.

3. 입법 제안

○ **제안내용**

- 제안목적 : 민주시민교육이 시민적 합의를 달성하고 청소년의 민주교육에 대한 지자체의 책임과 의무 명시
- 제안내용
  - · 시장의 청소년 민주교육의 책임과 의무 제시
  - · 청소년 대상 민주시민교육 내용 및 방법 명시
  - · 민주시민교육자문위원회에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청소년 포함

○ **『성남시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조례』 신설**

현행 조례	개정 조례(안)
제5조(시장의 책무) ① 시장은 모든 시민에게 민주시민교육의 기회가 평생 충분히 제공되도록 민주시민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시민의 각종 생활영역에서 민주시민교육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시장의 책무)** ① 시장은 모든 시민에게 민주시민교육의 기회가 평생 충분히 제공되도록 민주시민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시민의 각종 생활영역에서 민주시민교육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민주주의의 기본원리, 정치제도, 시민의 권리·의무 등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민주시민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7조(민주시민교육 내용 및 방법) 6. 그 밖에 민주시민교육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교육 ①②③ (생 략) ④ 〈신 설〉	**제7조(민주시민교육 내용 및 방법)** 6. 그 밖에 민주시민교육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교육 ①②③ (현행과 같음) ④ 시장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민주주의의 기본원리, 정치제도, 시민의 권리·의무 등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민주시민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8조(민주시민교육자문위원회)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거나 임명한다. 1, 2, 3, 4 (생 략) 5 〈신 설〉	**제8조(민주시민교육자문위원회)**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거나 임명한다. 1,2,3,4 (현행과 같음) 5. 민주시민교육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청소년 (만 9세 이상 만 24세 이하) 2인 이상

4. 기대효과

○ 민주시민교육을 통해, 타인과 협력하며 생각할 수 있는 대인관계역량을 키울 수 있다.
○ 청소년의 정치적 권리와 인식을 향상시킬 수 있다.
○ 시민교육, 정치교육을 통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

“ 오늘을 여는 주인공, 청소년입니다! ”

제5대 성남시청소년행복의회

입법제안서

제5대 성남시청소년행복의회 정책연구

「성남시 청소년증 활성화 지원 조례」 제정

청소년증 TFT

양다원 이민하 유재석
김지유 고예진 조정훈

1. 문제인식

지난 3월, 정부에서 실시한 마스크 5부제가 시행되면서 청소년증과 학생증에 구분된 사용은 많은 사람들에게 혼란을 가져다 주었다. 이는 공적 마스크 5부제의 시행규칙에서 마스크를 구입할 수 있는 신분증에 청소년증이 제외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비록 추후의 수정으로 시행 규칙에 청소년증도 기재가 되었지만, 만 9세 이상 18세 이하 청소년 본인임을 확인하는 국가 공적 신분증인 청소년증이 바로 신분증으로 인정받지 못한 이 상황은 청소년증의 현 주소를 보여주며, 많은 문제를 인식하게 한다.

기재부 관계자는 "청소년증은 모두가 공인 신분증이라고 인식하지 않아서 (본인확인용에서) 뺐다"며 "공인 신분증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부터 판단해야 청소년증도 사용할 수 있는지 검토 가능하다"고 말했다.이 때문에 현장에선 혼란이 이어지고 있다. 일부 지역에선 청소년증을 제시하면 공적 마스크를 살 수 있는 경우도 있다. 하지만 정부의 공식 가이드라인에서 청소년증을 언급하지 않아 대부분 지역에선 청소년증이 무용지물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출처] 조해영, '40만 학교밖 청소년은 공적 마스크 제외?...본인확인서 청소년증 빠져', 이데일리,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1390726625701680&mediaCodeNo=257&OutLnkChk=Y)

청소년증은 2004년 1월부터 사정상 학교를 다니지 않아 학생증이 없는 비학생 청소년들 혹은 만 9세 이상 학생들이 금융 거래나 시험에서의 신분확인이나 청소년으로서의 각종 입장료 할인 등에서 청소년임을 증명하기 위해 생겨났다. 그런데 실상은 그런 의도와 다르게 청소년들이 학생증에 대한 인식이 떨어지고 실제 사용도 저조하다. 그래서 본래의 취지대로 청소년증이 유지 될 수 있도록 지자체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

2. 현황 및 문제점

○ 청소년증에 대한 저조한 발급률 및 관심

현재 우리 사회에는 청소년 대표하는 공적 신분증으로는 청소년증을 발급할 수 있으나, 그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과 인식은 현저하게 낮다. 청소년증에 대한 홍보는 미약하고, 사용률 또한 저조했으며, 이는 공적 신분증으로 인정받은 청소년증에 대한 무관심으로 까지 이어졌다. 청소년증의 발급률은 2018년 약 160,000건 그리고 2019년 20,000건 감소한 140,000건 정도 밖에 되지 않으며, 2020년 기준으로 지자체별 청소년증 발급비율은 2%미만은 밑돌고 있다. 이는 약 519만여 명의 청소년 중 발급 비율이 고작 4.6% 밖에 되지 않음을 보여줌 으로, 청소년증의 발급률 굉장히 낮다는 것을 알 수 있다.

[2010~2018년 청소년증 발급현황] (단위:건)

구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9년
발급건수	36,244	40,898	43,543	49,438	50,663	93,536	114,250	188,562	141,652

[출처] 김정태 "청소년대상 발급 국가공인 신분증 '청소년증' 15년째 발급률 고작10%", nsp통신

또한 학교 밖 청소년의 불편을 해소하고 학생과 비학생 청소년이 공통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시행된 청소년증의 의도와는 달리 청소년증은 비학생들에게도 큰 관심을 얻지 못했으며, 발급률은 청소년 연령의 인구에 대비하여 0.005% 수준에 불과했다.

이후 문화관광부 훈령으로 청소년증의 발급 등에 대한 규정이 제정되어 2003년 9월 18일부터 시행되었다.
하지만 청소년증이 많은 비학생에게 선호되어 확산될 것이라는 기대와는 달리 청소년 발급률이 해당연령의 청소년 인구 대비하여 0.005% 수준에 불과하다고 하였다. (정규석, 김영미, 김지영 2014)

[출처] 안미영. (2017). 청소년복지지원법에 따른 청소년증의 고찰(1). 사법행정, 58(2), 43-52.

우리 지자체의 현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성남시청소년행복의회에서 지난 9월 16일부터 10월 10일까지 성남시 내의 만13세 이상 만19세 이하의 청소년 226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청소년증에 대해 알고 있냐는 질문에 '아니오'라고 답한 청소년이 무려 49.6%(112명) 였으며, 청소년증을 알고 있다고 답변한 청소년들 중에서도 청소년증의 정확한 기능과 혜택에 대해 알고 있는 사람은 없었으며, 대부분은 청소년증을 오직 형식적인 청소년의 신분증으로만 알고 있었다.

또한 청소년증을 발급받을 의향이 없다고 한 청소년이 40.3%(91명)이였으며, 그에 따른 이유 중 '발급받아도 필요가 없을 것 같아서'가 67.4%(62명)로 가장 높은 이유였으며, 청소년증 사용 가능처에 대한 인식이 부족함에 따라 청소년증의 필요성이 없다고 느낀 청소년들이 다수였다.

[청소년증에 대한 인식 유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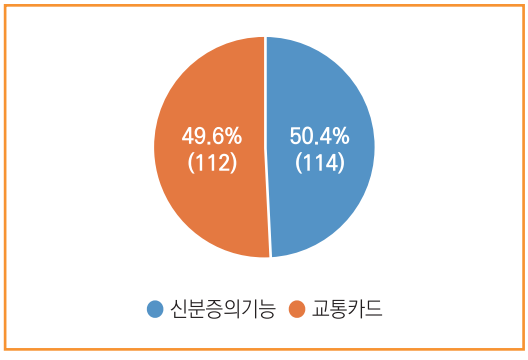

[청소년증의 정확한 기능과 혜택에 대한 인식 유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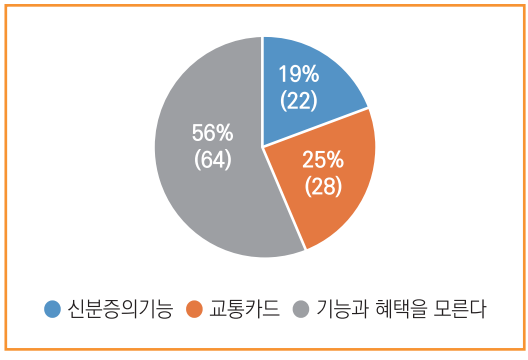

[청소년증을 발급받을 의향 유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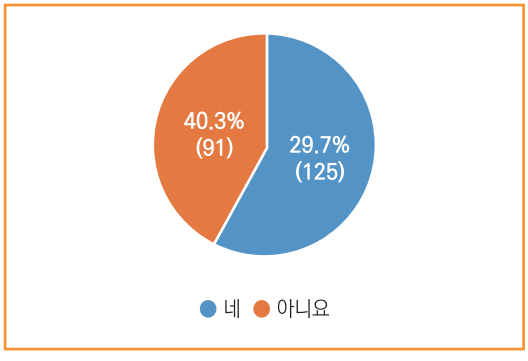

[청소년증을 발급받지 않으려는 이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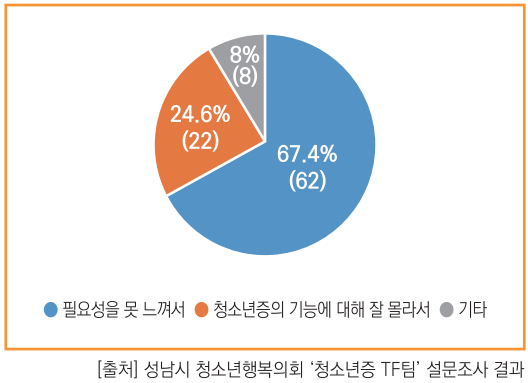

[출처] 성남시 청소년행복의회 '청소년증 TF팀' 설문조사 결과

청소년증 보유율이 낮은 이유로는 청소년증에 대한 정보의 부족과 할인영역 및 할인율 부족이 있다고 볼 수 있으며, 이러한 문제점들은 청소년증에 대한 관심 부족으로 이어졌다. 또한 청소년증의 주체인 청소년들조차도 관심을 가지지 않는 상태에서 청소년증 사용의 확대는 거의 불가한 것으로 보이며, 청소년증에 대한 인식 개선이 가장 시급하다고 볼 수 있다.

[이일현 사무관과의 인터뷰 내용 中]

"매체를 통해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있는데 청소년 본인이 선택에 의해 알아보고 오지 않는 이상 모르는 청소년증 발급이 어려운 실정이다"

[출처] 김민아, '학생증 대용 청소년증, 불량청소년 낙인 같아요', 스카이데일리, (http://www.skyedaily.com/news/news_view.html?ID=68084,2017.12.05.)

○ **청소년증 사용에 대한 부정적 낙인**

청소년과 학생증, 두 가지로 나누어진 청소년들의 신분증은 청소년을 학교 안과 밖으로 나누는 우리 사회의 가장 큰 차별적인 요소이다. 학교 밖 청소년들에 대한 보이지 않는 차별을 극명하게 드러내는 것이 바로 청소년증과 학생증의 분리이다. 이는 청소년을 학생 이라고 인식하는 사회적 문화가 아직도 존재함을 보여주며, 학교를 다니지 않는 청소년은 학교에 재학 중인 청소년과 달리 사회의 다양한 면에서 배제를 받는 듯 하는 느낌을 주기도 한다.

학교라는 하나의 작은 사회 내에서의 학생증 사용은 계속되더라도, 학교 밖의 사회에서는 통합된 하나의 신분증이 필요하며, 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청소년증이다.

학생과 비학생의 경계를 없애는 하나의 신분증이 바로 청소년증의 역할인 것이다.

[이성학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교육지원팀 실무자님 인터뷰 내용 中]

"청소년증을 내밀면 학교를 다니지 않는 불량청소년이라는 낙인이 찍힐 것을 우려해 청소년증을 발급 받아 실제로 사용하는 학생들도 사용을 꺼리는 경우가 있다."

[출처] 김민아, '학생증 대용 청소년증, 불량청소년 낙인 같아요', 스카이데일리, (http://www.skyedaily.com/news/news_view.html?ID=68084,2017.12.05.)

이러한 발급률 저조의 문제와 청소년증에 대한 외면으로 인해 청소년증은 '학교 밖 청소년들의 신분증'이라는 낙인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부정적 이미지로 인하여 다양한 혜택에도 불구하고 청소년증은 도입된지 17년이 되어가도 사용이 부진하다.

또한 아래 사례처럼 학교를 다니지 않는 청소년들중에서 청소년증을 사용을 하려고 하는데 청소년증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여 청소년증의 사용을 거부한 사례들 또한 현재까지의 청소년증 홍보가 현저하게 부족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시외버스를 탔을 때 기사님이 학생증을 보여 달라고 하셨어요. 학생증이 없다고 말씀드리고 청소년증을 보여 드리니, 이런 것은 본 적이 없다고 화를 내셨어요. 결국 저는 성인 요금을 내야 했습니다'

[출처] 여성가족부 공식 블로그 사례, (https://blog.naver.com/mogefkorea/222095550827)

⇒ 따라서 현재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가장 큰 핵심은 **청소년들에게 청소년증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심어 주고, 사용을 장려 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에 성남시 청소년증 활성화 지원 조례를 통해 성남시에서는 청소년증이 공적 신분증으로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지자체의 지원이 절실히 필요**하다.

⇒ 또한 청소년증 사용처에 대한 대대적인 홍보 부족으로 나타난 결과이며, 이를 해결 하기 위해서는 청소년증 사용 가능처에 대한 인식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청소년증 사용 가능 인증마크의 부착을 통해서 청소년증 사용처에 대한 홍보와 사용 용도에 대한 인식변화를 시도할 필요가 있다.**

⇒ 성남시 내 대부분의 학교에서 사용하고 있는 학생증의 사용 범위를 학교 단위로 축소를 하고, 학교 밖의 성남시 사회에서는 **청소년증의 사용을 촉구할 수 있도록 청소년 사용 시 혜택과 용도에 대한 인식을 높여야할 필요가 있다.**

3. 입법 제안

○ **제안내용**

- **청소년증 발급에 따른 혜택 지급**
  : 2021년도 기준 청소년증 신규 발급자와 재발급자에게 1회에 한하여 성남사랑상품권 만 원권을 지급
- **청소년증 사용 가능처에 인증마크 부착**
  : 청소년증 사용시 할인 혜택이 주어지는 사용처에 '청소년증 사용 가능 인증마크' 부착
- **성남시 내에서 청소년증 할인율 증감**
  : 성남시내의 자연휴양림, 궁.릉, 유원지, 박물관, 미술관, 공원, 자체기획공연장 이용시 발생 금액의 5% 추가 할인

○ **『성남시 청소년증 활성화 지원 조례』 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증 사용 지원 및 확대를 통하여 학교 밖 청소년들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 및 청소년들의 복지환경을 개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청소년증"이란 「청소년복지지원법」제4조 제1항에 따른 만 9세 이상 만 18세 이하의 청소년이 발급받을 수 있는 공적 신분증을 말한다.
2."성남사랑상품권"이란 「성남사랑상품권 활성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2조 제4호에 따른다.

제3조(적용 범위) 만 9세 이상 만 18세 이하의 청소년들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4조(운영 원칙) 청소년증의 사용 및 지원은 청소년들의 복지를 최대화하기 위한 원칙으로 운영하여야 한다.

제5조(시장의 책무)
① 성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청소년증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필요한 대책을 마련하는 등 행정적. 재정적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제6조(청소년증의 발급)
① 청소년증의 발급은 『청소년복지지원법 시행규칙』 제2조(청소년증의 발급신청)과 『청소년복지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청소년증의 발급)에 따른다.
② 2021년도를 기준으로 한 청소년증 신규발급자와 재발급자, 기존 발급자는 1회에 한하여 성남사랑상품권을 지급 받는다.
③ 시장은 성남사랑상품권의 지급을 지원한다.

제7조(청소년증의 내용)
① 청소년증은 교통수단, 문화시설 등에서 다양한 할인 혜택을 제공하고 있으며 교통카드 기능이 탑재되어 제한적 금융결제 기능이 가능하다.

제8조(청소년증의 사용)
① 청소년증 사용 가능 시설은 '청소년증 사용 가능 인증마크'를 부착한다.
② 시장은 청소년증 사용 가능 인증마크 사업 등을 실시할 수 있다.
③ 청소년 사용 가능 시설은 청소년증 사용이 추가적으로 할인을 한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4. 기대효과

○ 청소년증 사용의 확대로 학교를 다니는 청소년과 학교 밖 청소년 사이의 경계를 줄여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차별적, 부정적 인식을 개선한다.
○ 청소년증 사용 및 다양한 지원 확대를 통한 청소년의 복지 증진을 도모한다.
○ 청소년 공적 신분증 필요시 혼란 최소화 및 편리함을 증진한다.
· 획일화된 청소년의 신분증 기준으로 공적 상황에서의 혼란 감소

제5대 성남시청소년행복의회 정책연구

「성남시 청소년 문화바우처 지원 조례」 제정

문화지원금 TFT 채원희 김영중 이규리

1. 문제인식

'World Happiness Report 2019'에 따르면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OECD 행복지수는 최하위권 인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년들의 행복지수가 왜 최하위권인지 의문이 생겨 그 이유를 찾아보니 청소년들의 학업부담감이 가장 높았고, 그 뒤로 친구들과의 관계, 가족과의 갈등으로 나타났다. 더 심각한 것은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학업부담감이 단순히 학업 스트레스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살로 생각이 이어질 만큼 이는 심각한 사회적인 문제라고 생각했다.

청소년들의 행복지수를 낮추는 가장 큰 요인인, 학업부담감을 어떻게 덜어줄 수 있을지에 대해 고민하다가 도출한 결과로는 바로 여가문화생활이었다. 청소년들이 여가문화생활에 얼마나 시간을 보내는지 통계를 알아보다가 '아동청소년 인권실태조사'의 결과를 보게 되었다. 초등학생은 2~3시간, 중·고등학생은 1~2시간 미만으로 매우 적은 여가시간을 보내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렇다면 청소년들이 문화생활을 자주 할 수 없었던 이유로는 무엇이 있을까. 청소년들의 취미·여가생활 방해 요소로, '2020 미래사회와 청소년연구'에서 청소년들의 37.3%가 비용 부담을 꼽았고, 25.0%는 시간 부족이라고 응답했다. 우리는 청소년들의 비용 부담에 더 중점을 두어 청소년들이 비용 부담 없이 여가문화생활을 누리고 또한 학업 부담감도 조금 이나마 덜 수 있도록, 성남시에서 청소년들을 위한 문화바우처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청소년들의 OECD 행복지수 최하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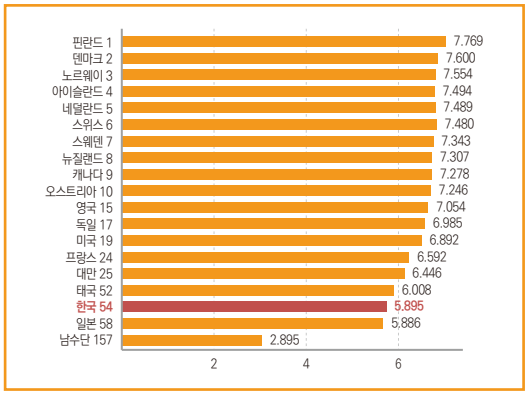

[출처] World Happiness Report2019

[청소년들이 자살을 생각하는 이유]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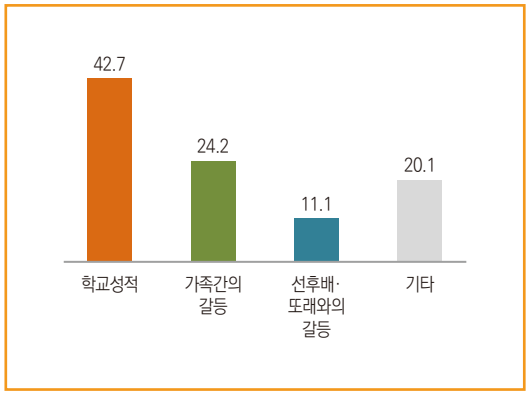

[출처] https://data.noworry.kr/255, 사교육걱정없는세상 교육통계

[청소년들이 스트레스 받는 원인]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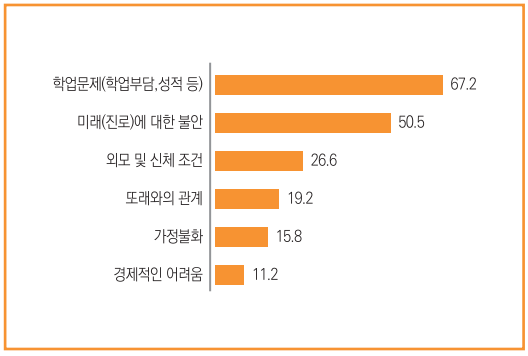

[출처] https://data.noworry.kr/255, 사교육걱정없는세상 교육통계

[청소년들의 여가활동 시간(연도별,2019년 학교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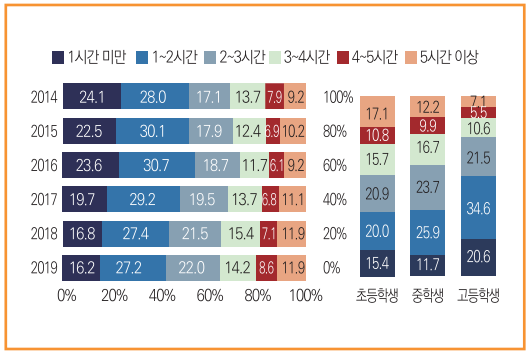

[출처]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아동청소년인권실태조사

[청소년들의 여가생활 장애요인]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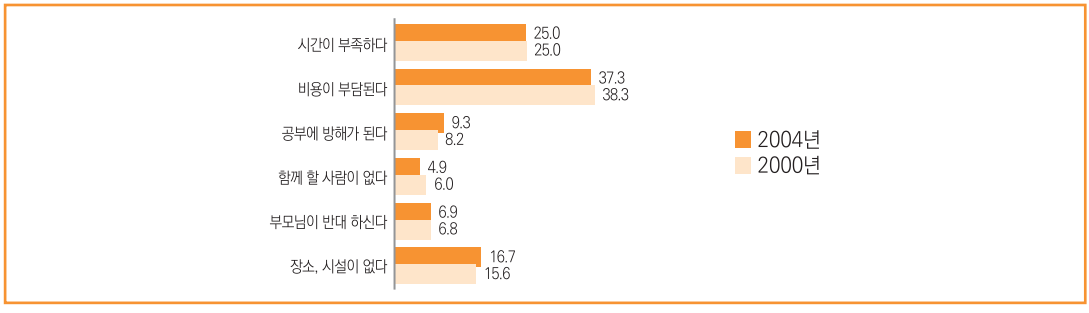

[출처] 2020 미래사회와 청소년연구

2. 현황 및 문제점

○ **타 지자체 문화지원금 운영 사례**

- 김제시 청소년드림카드

· 전국최초 청소년 수당 지급, 2020년 11월부터 지급

사업목적	- 저출산·고령화 등 사회 구조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 지원
사업내용	- 문화·체육 및 진로개발 등에 사용할 수 있도록 바우처 지원 (영화관, 공연장, 각종 체육시설, 독서실(스터디 카페), 취미활동을 위한 예능분야(음악, 미술, 무용)학원, 서점, 이·미용실, 문구점 등 가맹점으로 지정된 사업장에서만 사용 가능
지원대상	- 소득·재산에 관계없이 김제시에 주민등록 주소를 둔 만16~18세
지원금액	- 월 5만원/1인당(연 최대 60만원)
신청방법	-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청소년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 신청

김제시 청소년드림카드 지원 조례

[시행 2020. 9. 24.] [전라북도김제시조례 제1330호, 2020. 9. 24., 제정]

전라북도 김제시(체육청소년과), 540-409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김제시 청소년이 문화·체육 및 진로개발 활동을 통해 현재를 즐기고 미래사회에 필요한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하는 청소년 드림카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드림카드"란 청소년이 창의적 역량 개발 등을 위한 활동에 이용할 수 있도록 김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발급한 포인트 충전식 카드(이하 "카드"라 한다)를 말한다.
2. "가맹점"이란 카드 포인트를 이용하여 물품과 용역을 거래할 수 있도록 시장이 정한 업소를 말한다.
3. "사용자"란 카드를 발급받아 포인트를 사용할 수 있는 청소년을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
① 카드의 지원 대상자는 김제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만 16세부터 만 18세까지의 청소년으로 한다. 다만, 해당 연령이 도래하는 1월부터 12월까지를 지원기간으로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대상자 중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연도 카드 지원대상을 정할 수 있다.

제4조(지원내용) 시장은 사용자에게 매월 10만원 이내의 포인트를 카드에 충전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신청주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하 "신청인")은 카드 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따라 신청을 하는 자는 반드시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1. 지원대상자 본인
2. 지원대상자의 법정대리인
3. 지원대상자가 소속된 복지시설의 장(이하 "시설대표자"라 한다.)
4. 부득이한 사유로 제2호, 제3호 신청자의 위임을 받은 자

제6조(발급신청 등)
① 카드를 발급받고자 하는 신청인은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 및 다음 각호의 서류를 갖추어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청소년증, 주민등록증 등 지원대상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2. 신청인 신분증 및 관계 확인 증빙서류
3. 대리신청일 경우 법정대리인 또는 시설대표자의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위임장
4. 주민등록등본 1부(「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 시 생략)
② 신청서를 접수한 시장은 제3조에 따른 지원대상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고,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카드를 발급할 수 있다.

제7조(포인트 지급방법) 시장은 카드를 발급 즉시 포인트를 충전하는 방식으로 지원금을 지급한다.

제8조(매월 지급대상 확정) 시장은 제6조제2항에 따라 기 발급받은 사용자에 대해 매월 1일 기준으로 제3조의 지원대상 여부를 검토하여 포인트 지급 대상자를 확정하여야 한다.

제9조(카드의 사용)
① 시장은 문화·체육 및 진로개발 활동 등을 위해 카드를 사용할 수 있는 김제시 관할 행정구역 안의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지정할 수 있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역을 조정할 수 있다.
1. 문화시설 :「문화예술진흥법」제2조제1항제3호의 영화관, 공연장 등
2. 체육시설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제3조의 각종 체육시설
3. 진로개발 및 취미활동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제2조의2의 학원 중 독서실, 직업기술분야 학원, 취미활동을 위한 예능분야(음악,미술,무용) 학원, 서점
4. 경제지원 : 이·미용실, 문구점
5. 그 밖에 시장이 청소년 이용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장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카드 사용장소를 시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③ 카드의 사용 기한은 카드를 발급한 연도의 12월 15일까지이며, 사용 기한 이후 남아있는 포인트는 자동반납되고 환불 또는 이월되지 않는다.

제10조(사용자 준수사항)
① 사용자는 카드를 가맹점에서만 사용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카드를 이용하여 현금 또는 유가증권으로 교환할 수 없다.
③ 사용자는 카드를 타인에게 양도, 대여 또는 판매할 수 없다.

제11조(카드의 사용 중지 및 환수)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카드 지원을 중지하여야 한다.
1. 사용자가 사망, 관할 구역 외 전출, 말소 등이 확인된 때
2. 제10조에 따른 사용자 준수사항 위반이 확인되었을 때
② 시장은 지급대상이 아닌 자가 카드 포인트를 사용한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환수하여야 한다.

제12조(가맹점 지정 및 취소)
① 제9조제1항에 해당하는 업종 또는 시설을 운영하는 자가 가맹점으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별지 제3호서식의 가맹점 지정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지정한 사항을 변경·해지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시장은 제1호에 따른 가맹점 지정 신청자에 대해 카드의 사용처 적합 여부를 심사하여 가맹점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또한, 시장은 가맹점 지정 시 성별특성을 고려하여 성 불평등 소지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가맹점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맹점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위법·부당한 방법으로 가맹점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13조의 가맹점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제13조(가맹점 준수사항)
① 가맹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카드 포인트 사용을 거절하거나 사용자를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2.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없이 포인트를 차감하는 행위
3. 실제 매출금액 이상의 포인트를 차감하는 행위
② 그 밖에 시장과 계약한 사항에 대해서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준수하여야 한다.

제14조(지도·감독) 시장은 카드사업의 점검·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가맹점에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고, 가맹점은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15조(매출금의 지급) 시장은 카드 포인트 매출금액을 가맹점에서 지정한 계좌로 매월 지급한다.

제16조(카드 관리시스템 운영 등)
① 시장은 카드 관련 업무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카드 관리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을 전문업체(이하 "수탁자"라 한다)에 위탁 할 수 있다.
② 카드 관리시스템 운영비는 시장과 수탁자 간 체결한 계약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세종특별자치시 꿈키카드(진로체험 카드)

사업목적	- 청소년이 진로·직업체험 및 문화활동 등 다양한 청소년 활동에 참여 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자신의 꿈과 희망을 실현할 기회 제공	
사업내용	**부 분**	**사용내용**
	진로직업체험	진로탐험, 캠프, 진로 컨설팅, 직업상담·체험, 직업체험관 등
	문화체험	공연장, 미술관, 영화관, 문화센터 등 문화체험
	스포츠관람	국내 4대 프로스포츠(축구, 농구, 야구, 배구) 등
지원대상	- 관내 주민등록 된 중학교 1학년 재학생(만 13세 학교밖 청소년)	
지원금액	- 연 10만원/1인당	
신청방법	- 신규신청 및 최초카드 수령 · 중학교 1학년 재학생은 해당 중학교 · 학교밖 청소년 및 전입생 신규신청, 카드 재발급 신청 및 수령은 모두 읍·면·동 주민센터	

세종특별자치시 청소년 문화카드 지원 조례

[시행 2017. 1. 1.] [세종특별자치시조례 제915호, 2016. 10. 31., 제정]

세종특별자치시(아동청소년과), 044-300-492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세종특별자치시 관할구역 내의 청소년에 대한 문화카드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소년이 문화활동·직업체험 등 다양한 청소년 활동에 주체적이고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자신의 꿈과 희망을 실현할 충분한 기회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 문화카드"란 청소년이 영화·공연·연극 등의 문화활동과 직업체험에 이용할 수 있도록 금액이 기재된 증표를 말한다.
2. "학교 밖 청소년"이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을 말한다.

제3조(발급대상자) 청소년 문화카드의 발급대상자는 제6조에 따른 신청일을 기준으로 세종특별자치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중학교(시 소재 중학교로 한정하되, 시 관할구역이 포함된 학군의 인접 지방자치단체 소재 중학교는 포함한다) 1학년에 재학 중인 청소년으로 한다. 다만, 학교 밖 청소년의 경우에는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만 13세의 청소년으로 한다.

제4조(발급시기 등)
①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제6조제1항에 따라 신청을 한 사람에게 청소년 문화카드를 발급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날이 속하는 해가 각각 다른 청소년의 경우에는 먼저 신청하는 하나의 청소년 문화카드만 발급할 수 있다.
1. 중학교 1학년에 재학 중인 청소년: 중학교 1학년에 입학한 날
2. 학교 밖 청소년: 만 13세가 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3월 2일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청소년 문화카드를 발급받은 청소년이 주민등록지를 시 외의 지역으로 옮긴 사실이 확인되면 사용하지 아니한 잔액분의 사용을 중지시켜야 한다.

제5조(지원금액) 시장은 제3조에 따른 발급대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청소년 문화카드에 1원을 1점으로 환산·충전하여 발급하는 방식으로 10만원을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신청)
① 청소년 문화카드를 신청하려는 사람(발급대상자의 법정대리인을 말하되, 부득이한 사유로 법정대리인의 위임장을 첨부하여 신청하는 발급대상자를 포함한다)은 별지 서식의 신청서에 재학증명서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학교 밖 청소년이거나 발급신청서의 학교장 확인란에 학교장 직인이 있는 경우에는 재학증명서의 첨부를 생략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시장은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신청인이 발급대상자인지를 확인한 후 청소년 문화카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7조(사용)
① 제6조제2항에 따라 청소년 문화카드를 발급받은 사람은 시장이 지정하는 전국의 온·오프라인의 영화, 공연, 연극 등 문화활동 및 직업체험을 위하여 청소년 문화카드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시장은 시에 관련 인프라가 구축되었다고 판단하는 문화활동이나 직업체험 항목에 대해서는 사용장소를 시 관할구역 내로 한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청소년 문화카드의 사용장소에 대해서는 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③ 청소년 문화카드의 사용기한은 청소년문화카드를 발급한 연도의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8조(요금의 정산) 청소년 문화카드의 사용요금은 제10조에 따라 청소년 문화카드의 관리를 위탁받은 자와 체결한 위탁계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월 2회 이상 정산한다.

제9조(발급대상자의 관리) 시장은 청소년 문화카드의 발급대상자를 전산시스템 또는 대장을 통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10조(업무의 위탁)
① 시장은 청소년 문화카드 관련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청소년 문화카드 관리·운영 업무의 일부를 관련 법인, 단체 및 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업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세종특별자치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서울특별시 강서구 청소년 꿈인카드(꿈IN카드)

사업목적	- '자유학년제'와 발 맞춰 청소년의 진로·직업체험 및 문화 활동의 기회 확대 지원	
사업내용	**부 문**	**사용내용**
	진로직업체험	진로탐험, 캠프, 진로 컨설팅, 직업상담·체험, 직업체험관 등
	문화체험	공연장, 미술관, 영화관, 문화센터 등 문화체험
	문예체 프로그램	학교 방과후 프로그램, 문화·예술·체육 학원 및 교습소
	특화 가맹점	종합복지관, 청소년수련관, 예술가 등
지원대상	- 강서구에 거주하고 있는 중학교 1학년과 만 13세 청소년	
지원금액	- 연 10만원/1인당(상·하반기 각 5만원 포인트 지급)	
신청방법	- 카드 신청은 가까운 동 주민센터에서 진행 - 카드 발급 후 개인인증 등록 후 즉시 사용 가능 (https://gs.purmee.kr)	

서울특별시 강서구 청소년 지원 카드 운영 조례

[시행 2018. 11. 7.] [서울특별시강서구조례 제1201호, 2018. 11. 7., 일부개정]

서울특별시 강서구(교육청소년과), 2600-690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에게 문화·예술·진로체험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청소년 지원 카드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8. 11. 7.)

제2조(정의)
"청소년 지원 카드"란 청소년이 감성, 정서, 창의적 역량 개발을 위한 활동에 이용할 수 있는 충전식 카드(이하 "카드"라 한다)를 말한다.(개정 2018. 11. 7.)
1. 삭제 (2018. 11. 7.)
2. 삭제 (2018. 11. 7.)

제3조(지원 대상자)
① 지원 대상자는 서울특별시 강서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둔 주민이거나 「출입국관리법」 제34조에 따라 외국인등록대장에 등록 되어 있고 구에 체류지를 둔 외국인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해당 연도에 만 13세가 되는 청소년
2. 「초·중등 교육법」제2조의 중학교 1학년에 재학 중인 학생
3. 「초·중등 교육법」 제60조의2에 따른 외국인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은 중학교 1학년과 상응하는 학년에 재학 중인 학생

②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원 대상자를 전산 시스템을 통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 내용) 구청장은 지원 대상자에게 카드를 발급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연간 10만원 이내의 포인트를 충전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신청)
① 신청은 지원 대상자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이하"신청인"이라 한다)이 별지 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본인이 신청할 경우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개정 2018. 11. 7.)
② 신청서를 제출 받은 구청장은「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주민등록표 등·초본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제출한다.(개정 2018. 11. 7.)
③ 구청장은 중학교 1학년 재학 중임에도 해당 연도에 만 13세가 도래되지 않거나 이미 지났을 경우 추가 서류를 요구할 수 있다.(신설 2018. 11. 7.)

제6조(발급)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동안 제3조제1항 및 제5조제1항에 따라 카드를 발급하여야 한다.
1. 상반기: 3. 2. ~ 6. 30.
2. 하반기: 7. 1. ~ 11. 15.
② 구청장은 상반기에 카드를 발급받은 청소년이 하반기 신청 기간 시작일에 강서구에 계속 거주하고 있는 경우 별도의 신청 없이 하반기 지원금을 지급한다.
③ 하반기 신청자 중 상반기 3개월 이상 강서구에 거주한 경우 소급 지원한다.(신설 2018. 11. 7.)
① 제6조제2항에 따라 청소년 문화카드를 발급받은 사람은 시장이 지정하는 전국의 온·오프라인의 영화, 공연, 연극 등 문화활동 및 직업 체험을 위하여 청소년 문화카드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시장은 시에 관련 인프라가 구축되었다고 판단하는 문화활동이나 직업 체험 항목에 대해서는 사용장소를 시 관할구역 내로 한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청소년 문화카드의 사용장소에 대해서는 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③ 청소년 문화카드의 사용기한은 청소년문화카드를 발급한 연도의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7조(사용)
① 제6조에 따라 카드를 발급받은 청소년은 구청장이 지정하는 문화·예술·진로체험 활동이 가능한 장소에서 카드를 사용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카드의 사용 장소를 구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③ 카드의 사용기한은 발급한 해당 연도의 12월 15일까지로 한다.(개정 2018. 11. 7.)

제8조(카드시스템의 운영) 구청장은 카드 관련 업무를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카드 관리 시스템의 구축과 운영을 전문업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9조(비용의 정산) 카드의 사용 비용은 제8조에 따라 카드의 관리를 위탁받은 자와 체결한 위탁계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정산한다.

제10조(시행규칙) ① 시장은 청소년 문화카드 관련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청소년 문화카드 관리·운영 업무의 일부를 관련 법인, 단체 및 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업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세종특별자치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018. 11. 7.)

⇒ 김제시를 제외하고, 다른 지자체에서는 자유학기제와 연계하여 중학교 1학년(학교 밖 만 13세 청소년)을 대상으로 진행하고 있다. 중학교 1학년 전체에게 지급 된다는 점에서 보편적이긴 하나, 중학교 1학년이라는 대상의 제한이 있음.

⇒ 김제시처럼 폭넓은 대상(만16~18세)과 폭넓은 사용처 등 사업목적에 적합한 대상과 사용처가 마련되어야 한다.

○ **성남시 운영 사례**

- 성남시 학교 밖 청소년 바우처 복지카드

사업목적	- 은둔형 학교 밖 청소년을 발굴하고 맞춤형 지원 책을 마련해 나가 이들의 건강한 성장 지원
사업내용	- 성남시에서 공교육을 받지 못하는 학교 밖 청소년들의 자기계발을 지원
지원대상	- 신청일 기준 성남시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하는 만 16~18세 학교 밖 청소년
지원금액	- 월별 5만원 기준(분기별 최대 15만원 지급) - 모바일 성남사랑상품권 충전방식
사용장소	- 서점, 안경점, 학원 등 성남시내 1372곳 가맹점에서 자유롭게 사용가능

⇒ 성남시의 경우 학교 밖 청소년이라는 특정 대상만이 혜택이 주어진다. 성남시의 거주하는 모든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보편적 복지 차원에서, 문화지원금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가 필요하다.

3. 입법 제안

○ **제안내용**

- 성남시 거주 만16세부터 만18세 대상 문화 바우처 지원

· 1인당 20만원의 성남사랑상품권으로 지급 (연간 20만원)

· 발급받은 성남사랑상품권으로 문화생활 및 자기계발을 위해 사용

○ **『성남시 청소년 문화바우처 지원 조례』 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성남시 청소년 문화바우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소년들이 받는 학업 부담을 줄이고 문화생활로 청소년들이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 성남시에 거주하는 만 16세부터 만 18세인 자를 말한다.
2. '청소년 문화바우처'란 이 조례에 따라 청소년에게 지급되는 금전을 말한다.

제3조(지급대상 및 범위) 청소년 문화바우처의 지급대상은 성남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만 16세부터 만 18세 청소년과 학교 밖 청소년이다.

제4조(지급기준 및 지급액)
① 청소년 문화바우처는 제3조의 요건에 해당하는 청소년에게 매년 초에 지급한다.
② 제1항의 지급액은 1인당 20만 원 이내로 성남시에서만 사용이 가능한 지역화폐로 지급한다.

제5조(지급신청)
① 청소년 문화바우처를 지급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본인이 직접 신청일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있는 동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급신청 접수 및 처리는 전자적인 방법으로 할 수 있으며,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③ 본인이 부득이한 사유로 청소년 문화바우처를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보호자, 지급신청을 위임 받은 사람이 신청할 수 있다.
④ 본인 또는 대리 신청 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ㄱ. 주민등록표 초본
ㄴ. 본인 명의의 청소년증
ㄷ. 위임장 (대리 신청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제6조(지급결정·지급)
① 동장은 신청서가 접수되면 지급대상자의 사망, 전출 등 수급 자격 적정 여부를 확인하여 지급대상자를 확정하여야 한다.
② 청소년 문화바우처는 지급대상자가 지급 신청을 완료한 달의 28일에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시장이 정한 다른 날짜에 지급할 수 있다.

제7조(지급의 중지 및 환수조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청소년 문화바우처 지급을 중지하여야 한다. 다만, 지급 대상이 아닌 사람에게 지급된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
1. 지급대상자의 사망, 다른 지역으로의 전출, 주민등록말소 등의 사실이 확인된 경우
2. 지급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한 경우
3. 그 밖의 부정한 방법에 따라 지급된 사실이 발견된 경우

제8조(시행규칙)
① 청소년증 사용 가능 시설은 '청소년증 사용 가능 인증마크'를 부착한다.
② 시장은 청소년증 사용 가능 인증마크 사업 등을 실시할 수 있다.
③ 청소년 사용 가능 시설은 청소년증 사용이 추가적으로 할인을 한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4. 기대효과

○ 청소년들의 건강한 문화생활을 장려하고, 정서적 안정을 취할 수 있다.
○ 청소년들의 스트레스를 문화생활을 통해 건전하게 해소할 수 있다.
○ 문화바우처를 성남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함으로써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한다.
○ 문화바우처를 통해 청소년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 줄 수 있다.

제5대 성남시청소년행복의회 정책연구

「성남시 가출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조례」 제정

올바른 성인식 TFT

권희정 김서희 최이찬
고은교 신서연

1. 문제인식

지난 해 가장 큰 사회적 파장을 일으켰던 일명 'n번방' 사건을 우리는 잊지못한다. 'n번방' 사건은 2018년 하반기부터 2020년 3월까지 텔레그램, 디스코드, 라인, 위커, 와이어 등의 메신저 앱을 이용하여 "스폰 모집 알바" 같은 글을 게시하여 N번방 피해자들을 유인한 다음, 얼굴이 나오는 나체사진을 받아 이를 빌미로 협박해 성 착취물을 찍게 하고 이를 유포한 디지털 성범죄, 성 착취 사건이다.

'n번방' 사건에서 불거진 가장 큰 문제는 두 가지로 꼽힌다. 주 피해자층이 중·고등학생 등 미성년자였다는 점과 해킹을 통해 협박받은 피해자들 본인이 직접 사진과 영상을 촬영해 범죄의 빌미를 제공했다는 생각에 사로잡혀 신고를 하지 못했다는 점이다. 주 피해자층인 중·고등학생 중에는 숙식을 제공하고 고수익을 얻을 수 있다 하여 성 착취를 당한 가출청소년이 많았으며, 더이상 'n번방' 사건 등과 같은 범죄가 재발하지 않도록 가출 청소년들의 성보호가 필요한 시점이다.

['n번방' 피해자 연령대]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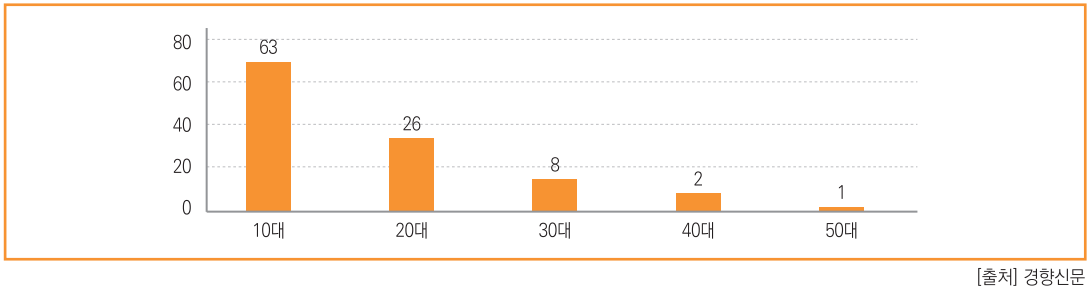

[출처] 경향신문

그러나 가출청소년 성매매 문제는 하루 아침에 갑자기 생긴 문제가 아니다. 가출 청소년들은 잘 곳과 돈을 마련하기 위해 가출 팸에 가입하게 되고, 그곳에서 약점을 잡혀 강제로 성매매를 당하는 등 위험한 외부 환경에 쉽게 노출되어 있다.

최근 성매매를 하려는 사람들이 가출청소년들에게 인터넷 채팅 앱 등으로 접근해 잘 곳을 제공 해주겠다고 속인 후 유인해 의식주를 제공한다는 명목 하에 성매매를 강요하여 근래에는 9명의 가출청소년 성매매 사건이 있었다. 이들은 인터넷으로 성 매수 남성을 구한 뒤 피해 청소년들을 차량에 태워 성매매 장소로 이동시키는 식으로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 학생 중 일부는 일당에게 마약 투약 등의 2차 피해까지 입었다.

가출청소년들의 성매매 노출 경로로는 인스턴트. 메신저, SNS, 랜덤 채팅, 인터넷커뮤니티 등이 있다.
이와 같이 가출 청소년들의 성보호를 위한 사회적 안전망 구축이 시급하다.

2. 현황 및 문제점

○ **가출 청소년 현황 : 가출을 고민한 경험 비율이 높은 여자 청소년**

여성가족부 청소년 매체이용 및 유해환경 실태조사에서 최근 1년동안 가출을 해 본 적이 있다고 응답한 청소년의 비율은 2014년 4.0%, 2016년 2.7%, 2018년 2.6%로 나타나 줄어 들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가출 청소년의 경우 특성상 정확한 수치 및 현황을 파악하기 어렵고, 설문조사 대상이 현재 재학중인 청소년을 대상으로 했다는 점에서 크나큰 의미를 가지지 않는다.

하지만 여자 청소년이 가출을 고민해 본적이 있다는 응답은 14.8%로 남자 청소년 11.0% 보다 높게 나타나 가출과 이후 문제로 이어질 위험군이 여자 청소년이 더 높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최근 1년간 가출 경험률]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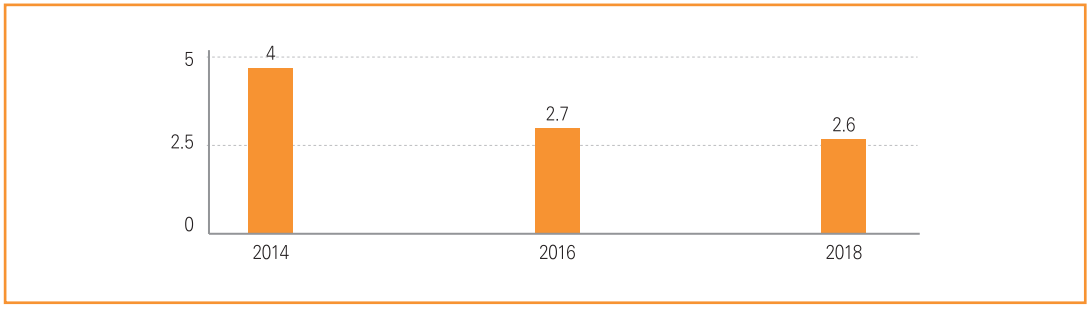

[출처] 여성가족부 「청소년유해환경접촉종합실태조사」 2014년, 여성가족부 「청소년매체이용 및 유해환경 실태조사」 2016년, 2018년

[가출을 고민한 경험] (단위 : 명, %)

구 분			사례수	있다	없다
전체		2016	15,624	13.5	86.5
		2018	15,640	12.8	87.2
성별	남자	2016	8,147	13.1	86.9
		2018	8,117	11.0	89.0
	여자	2016	7,477	13.9	86.1
		2018	7,523	14.8	58.2
학교급	초등학교	2016	4,454	9.5	90.5
		2018	4,744	8.4	91.6
	중·고등학교	2016	11,170	12.1	84.9
		2018	10,896	14.7	85.3
	중학교	2016	5,249	16.7	83.3
		2018	4,932	15.5	84.5
	고등학교	2016	5,921	13.7	86.3
		2018	5,964	14.1	85.9

※ 무응답을 제외하고 분석한 결과임
[출처] e-나라 지표 및 2018년 청소년 매체 이용 및 유해환경 실태조사 분석보고서

○ **성매매에 이용된 아동·청소년의 높은 가출경험**

국가인권위원회의 아동·청소년 성매매 환경 및 인권실태조사(2016)에 따르면 전체 응답자 103명 중 87명(84.5%)이 가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여 성매매에 이용된 아동 청소년의 가출 경험은 매우 높게 나타났음을 확인 할 수 있다.

가출경험은 만 15~16세의 경우 40명 중 36명으로 90.0%, 만 13~14세의 경우 11명 중 9명 으로 81.8%, 만17~18세의 경우 52명 중 42명으로 80.8%의 순서로 높았다.

또한 처음 성매매를 하게 된 이유(복수응답)로는 '잘 곳이 없어서' 35.0% 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돈을 준다는 유혹에 의해서' 32.0%, '막연히 돈을 많이 벌고 싶어서' 31.1%, '화장품/옷 구입을 위해' 30.1%, '친구의 권유' 29.1%, '호기심에' 27.2%, '다른 일 자리가 없어서' 26.2%, '배가 고파서' 25.2%, '강요에 의해서'와 '유흥비가 필요해서' 15.5.%, '사람 만나는 게 재밌어서' 11.7%, '부모에 대한 반항심으로', '술에 취해서', '성폭행 후 자포자기해서' 6.8%, '모름/무응답' 3.9%, '성형비 마련' 2.9%, '빚이 있어서', '기타'가 2.9%의 순이었다. 이러한 응답은 가출상태의 절박성에서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가출 경험] (단위 : 명,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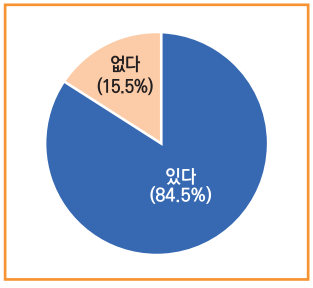

		사례수	예	아니오
전체		103	87 (84.5)	16 (15.5)
연령	만 13~14세	11	9 (81.8)	2 (18.2)
	만 15~16세	40	36 (90.0)	4 (10.0)
	만 17~18세	52	42 (80.8)	10 (19.2)
학교 재학	학교다님	62	49 (79.0)	13 (21.0)
	학교 다니지않음	41	38 (92.7)	3 (7.3)

[처음 성매매를 하게 된 이유(복수응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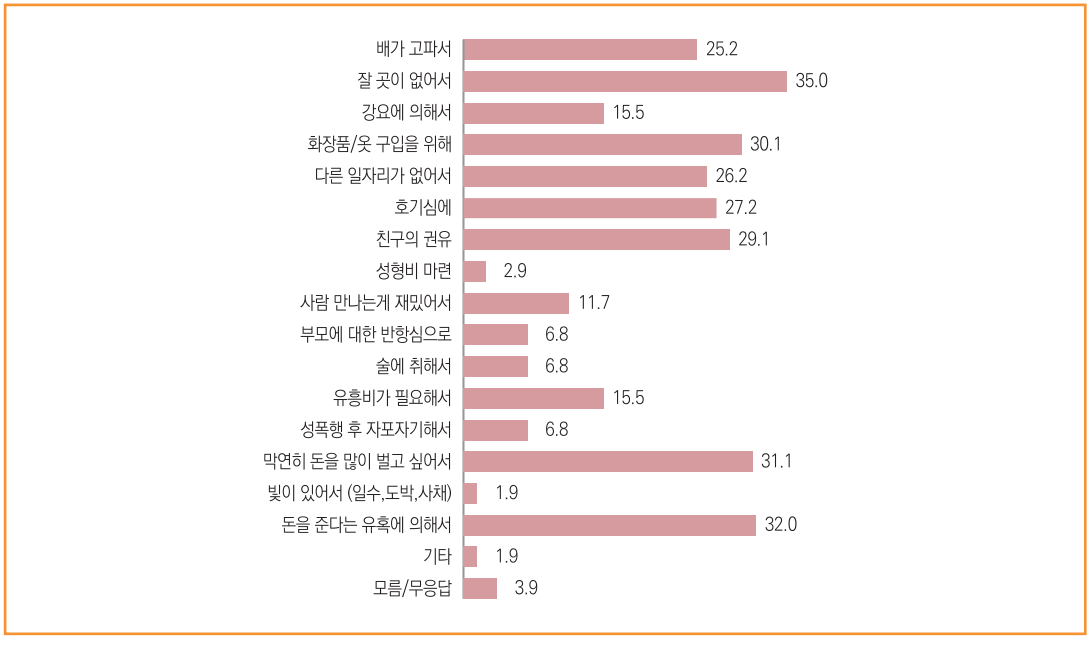

[출처] 여성가족부 「청소년유해환경접촉종합실태조사」 2014년, 여성가족부 「청소년매체이용 및 유해환경 실태조사」 2016년, 2018년

○ **가출과 성매매 유입**

성매매가 가출 후에 이루어졌는가에 대해서 절반 이상인 61.2%가 '그렇다'고 응답했으며, 가출과 상관없이 이루어졌다는 응답은 38.8%로 가출 후 성매매에 이용된 경우가 높게 나타난다. 또한 가출 후 성매매가 이루어졌다는 응답자들 중 과반수인 54.0%가 가출하지 않았다면 성매매를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응답했으며, 가출과 성매매와의 연관성이 크지 않다고 생각하는 25.4%, 모름/무응답이 20.6%로 나타났다.

[가출 후 성매매가 이루어졌는지 여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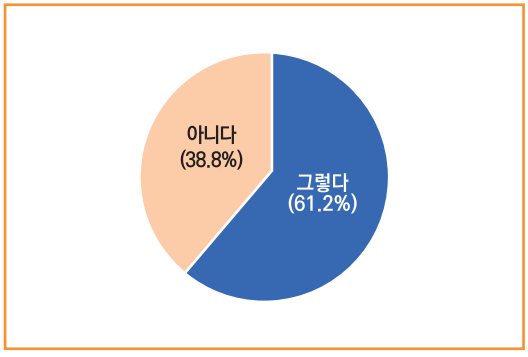

[가출하지 않았다면 성매매를 하지 않았을 여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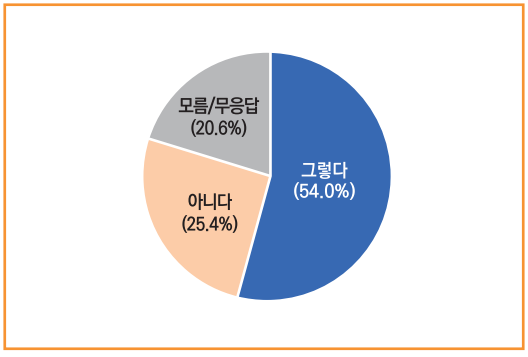

[출처] 국가인권위원회 아동·청소년 성매매 환경 및 인권실태조사(2016)

○ **가출청소년 대상 성범죄 피해**

2015 아동, 청소년대상 성범죄 동향분석에 따르면 강간, 성매수, 성매매 강요의 경우 13~15세, 성매매 알선은 16세 이상 집단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강제 추행은 13~15세(29.4%)와 7~12세(24.3%)위 초등학생 피해자가 비슷한 비율을 차지하여 상대적으로 저 연령층에서 많이 발생하였다 전체 피해 아동, 청소년의 5.1%에 해당되는 193명이 가출상태에서 성범죄 피해를 당하였으며, 범죄 유형별로는 성매매 강요 피해 아동, 청소년의 57.1% 성매매 알선 피해 아동, 청소년의 31.6%, 성매수 피해 아동, 청소년 14.4%가 가출상태에서 피해를 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 **경기도 가출 청소년 보호 현황**

- 경기도 가출청소년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16조에 따라 청소년의 가출 예방, 가출청소년의 보호·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청소년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6조(지원사업)

① 도지사는 청소년 가출 예방 및 가출청소년 보호·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청소년복지지원기관 및 청소년복지시설, 관련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가출 예방을 위한 청소년 및 보호자 교육
2. 가출청소년의 조기 발견 및 긴급 구조
3. 가출청소년 직업능력 개발, 진로지도 등 자립지원
4. 가출청소년에 대한 전문가의 상담
5. 가출청소년의 보호 등

- 청소년 쉼터 운영

: 현재 도내 청소년쉼터는 17개 시군에 32개소가 운영되고 있으며, 가출청소년이 가정, 학교, 사회로 복귀해 생활할 수 있도록 일정 기간 보호하면서 상담, 주거, 학업, 자립 등 지원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 **성남시 가출 청소년 보호 현황**

- 가출 청소년 보호를 위한 청소년 쉼터 운영 (성남시청소년일시쉼터 시(고정형) 등 5개소)
- 청소년 쉼터 상담사 배치
-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운영 : 가출 청소년, 비행 청소년(성, 도벽, 약물 등 다양한 일탈행동), 우울, 자살, 자해 등의 문제를 겪고 있는 청소년등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 타 지자체 사례
- 서울특별시 위기 십대여성 지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위기 십대여성의 건강·교육·자립 등을 위한 종합적인 서비스 제공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이와 관련된 시책을 추진함으로써 위기 십대여성이 미래사회의 건강한 민주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십대여성"이란 만 10세 이상 만 19세 이하인 여성을 말한다.
2. "위기 십대여성"이란 가출 및 성매매 피해 경험, 가정문제가 있거나 학업수행 또는 사회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등 조화롭고 건강한 성장과 생활에 필요한 여건을 갖추지 못한 십대여성을 말한다.
3. "위기 십대여성지원시설"(이하 "지원시설"이라 한다)이란 위기 십대여성의 건강·교육·자립 등을 위해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위기 십대여성에게 필요한 정책을 마련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 하여야 한다.

제4조(위기 십대여성 지원사업)
① 시장은 위기 십대여성의 건강·교육·자립과 관련하여 시책을 마련하고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수행할 수 있다.
1. 십대여성의 가출 예방 및 성매매 방지를 위한 현장상담 및 긴급구조
2. 위기 십대여성 일시보호, 숙식제공 등 일시생활서비스 및 상담지원
3. 위기 십대여성의 건강증진을 위한 검진, 질병치료, 생리대 및 위생용품 지원, 성·건강 교육 및 심리·정서지원 등
4. 위기 십대여성의 성·건강 지원을 위한 일반의약품 지원, 지역의료 돌봄체계 구축 등
5. 위기 십대여성의 학업 및 교육, 직업훈련, 일자리, 주거지원 등 자립지원
6. 청소년 유해 업소 및 매체 감시, 불법 성산업 관련자 신고, 시민활동 지원 등 위기 십대여성 성매매 방지를 위한 사회적 안전망 구축
7. 성매매 예방교육, 실무자 교육, 연구, 홍보, 캠페인 등
8. 그 밖에 위기 십대여성 지원 및 인권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위기 십대여성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한 때에는 제1항에 따른 지원을 만 21세까지 연장할 수 있으며, 지원시설의 장은 지원기간의 연장이 신속히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등에는 우선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5조(위기 십대여성지원시설의 설치·운영)
① 시장은 위기 십대여성 지원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지원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지원시설은 제4조에 규정된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한다.
③ 이 조례에 따라 설치·운영하는 지원시설의 명칭·위치 및 주요기능은 별표 1과 같다.

제6조(직업훈련 참여자에 대한 지원)
① 시장은 직업훈련 및 일자리 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위기 십대여성에게 직업훈련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기준 및 방법은 시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7조(관리·운영의 위탁)
① 시장은 별표 1의 지원시설에 대한 운영을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 비영리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원시설의 운영 및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지원시설의 위탁에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은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19. 9. 26.〉
③ 위탁 운영 지원시설의 관리·운영, 인사, 예산·회계, 재산·물품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및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한 「여성·아동권익증진사업 운영지침」(이하 "운영지침등"이라 한다)과 시장이 민간위탁사무에 대하여 따로 정하고 있는 기준 등에 따른다. 〈개정 2019. 9. 26.〉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필요한 경우 위탁 운영 지원시설의 종사자 채용 및 자격기준, 보수, 경력인정 범위 등에 대한 사항을 관계법령 및 운영지침의 범위에서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9. 9. 26.〉

제8조(관리·운영에 대한 위탁의 해지)
① 시장은 수탁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지원시설 운영의 위탁을 해지할 수 있다.
1. 이 조례를 포함한 관계 법규 또는 수탁조건을 위반한 경우
2. 지원시설의 설치목적에 위배되는 사업을 하였을 경우
3. 수탁재산의 보존과 관리를 태만히 하거나 그 사용목적에 위반한 경우
4. 그 밖에 공익상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지원시설 운영의 위탁을 해지할 경우 그 해지로 인하여 수탁자에게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이를 배상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1항제4호의 경우는 구체적 손해 발생이 명백하게 입증된 경우에 한하여 손해를 배상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지원시설 운영의 위탁과 관련하여 권한과 책임에 관한 사항은 당사자 간 협약으로 정할 수 있다.

제9조(지도·감독)
① 시장은 지원시설의 운영 전반에 관하여 지도·감독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지원시설의 운영과 관련하여 위법·부당한 사항, 운영부실 등을 발견한 경우에는 경고·시정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19. 9. 26.〉
③ 시장은 제7조제1항 후단과 관련하여 수탁자가 허위·부정한 방법으로 사업비를 지원받거나, 지원받은 사업비를 다른 용도에 사용하는 등의 경우에는 위탁기간의 진행 또는 종료에 관계없이 지체 없이 해당 사업비를 환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9. 9. 26.〉
④ 삭제 〈2019. 9. 26.〉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7287호,2019. 9. 26.〉

3. 입법 제안

○ **제안내용**

- 가출 청소년의 가출 예방 및 성매매 방지를 위한 현장상담 및 긴급구조
- 가출 청소년 일시보호, 숙식제공 등 일시생활서비스 및 상담지원
- 가출 청소년의 건강증진을 위한 검진, 질병치료, 생리대 및 위생용품 지원, 성·건강 교육 및 심리·정서지원
- 가출 청소년의 성·건강 지원을 위한 일반의약품 지원, 지역의료 돌봄 체계 구축
- 성남시 내에 청소년 쉼터 산부인과 전문의 및 간호사 의무화
- 가출 청소년의 학업 및 교육, 직업훈련, 일자리, 주거지원 등 자립지원
- 청소년 유해 업소 및 매체 감시, 불법 성산업 관련자 신고, 시민활동 지원 등 가출 청소년 성매매 방지를 위한 사회적 안전망 구축

○ **『성남시 가출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조례』 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출 청소년의 성보호를 위한 종합적인 서비스 제공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이와 관련된 시책을 추진함 으로써 가출 청소년이 미래사회의 건강한 민주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 9세 이상 19세 이하인 시민을 말한다.
2. "가출 청소년"이란 가출 및 성매매 피해 경험, 가정문제가 있거나 학업수행 또는 사회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등 조화롭고 건강한 성장과 생활에 필요한 여건을 갖추지 못한 청소년을 말한다.
3. "가출 청소년 성보호 지원시설"이란 가출 청소년의 성보호를 위해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성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가출 청소년에게 필요한 정책을 마련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가출 청소년 성보호 지원사업)
① 시장은 가출 청소년의 성보호와 관련하여 시책을 마련하고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수행할 수 있다.
1. 청소년의 가출 예방 및 성매매 방지를 위한 현장상담 및 긴급구조
2. 가출 청소년 일시보호, 숙식제공 등 일시생활서비스 및 상담지원
3. 가출 청소년의 건강증진을 위한 검진, 질병치료, 생리대 및 위생용품 지원, 성·건강 교육 및 심리·정서지원 등
4. 가출 청소년의 성·건강 지원을 위한 일반의약품 지원, 지역의료 돌봄 체계 구축, 성남시 내에 청소년 쉼터 산부인과 전문의 및 간호사 의무화 등
5. 가출 청소년의 학업 및 교육, 직업훈련, 일자리, 주거지원 등 자립지원
6. 청소년 유해 업소 및 매체 감시, 불법 성산업 관련자 신고, 시민활동 지원 등 가출 청소년 성매매 방지를 위한 사회적 안전망 구축

제5조(가출 청소년 성보호 지원시설의 설치·운영)
① 시장은 가출 청소년 성보호 지원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지원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성보호 지원시설은 제4조에 규정된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한다.

제6조(가출 청소년 자립에 대한 지원)
① 시장은 학업 및 교육, 직업훈련, 일자리 등이 필요한 가출 청소년에게 자립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지원 기준 및 방법은 시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7조(지도·감독)
① 시장은 가출 청소년 성보호 지원시설의 운영 전반에 관하여 지도·감독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가출 청소년 성보호 지원시설의 운영과 관련하여 위법·부당한 사항, 운영부실 등을 발견한 경우에는 경고·시정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4. 기대효과

○ 긴급 구조로 인해 가출 청소년이 2차 위험에 노출되지 않아 피해 예방에 도움을 준다.
○ 가출 청소년의 기본권을 보장받게 되어 안전한 청소년 환경 조성을 가능하게 한다.
○ 취약계층 청소년이 장래 바람직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하는데 도움을 준다.
○ 가출 청소년의 불안한 심리상태 호전과 진로상담을 통해 원활한 진로선택, 타인의 대한 상처 극복에 도움을 준다.

제5대 성남시청소년행복의회 정책연구

「성남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개정

올바른 성인식 TFT 김서현, 조서윤

1. 문제인식

'신림동 원룸 사건'을 비롯한 혼자 사는 여성들이 위험에 노출되는 사건들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
일부 배달원이 개인정보를 이용해 일방적인 연락을 하기도 하고, 택배 기사를 사칭해 혼자 사는 여성을 대상으로 범죄를 저지른 사건도 발생했다. 심지어 지난 7월 23일 유튜브에는 '신림동, 소름 돋는 사이코패스 도둑 CCTV 실제상황' 이라는 제목의 영상이 게재 되어 논란이 됐다. 하지만 이 영상은 택배 대리 수령 서비스를 홍보하기 위해 노이즈마케팅으로 제작된 영상으로 확인됐다. 혼자 사는 여성들의 불안감을 악용한 공포 마케팅이었던 것이다.
여성을 노린 범죄가 잇따라 발생하자 여성 온라인 커뮤니티, 각종 SNS에는 곽두팔, 육만춘, 김교살 등 억양이 센 이름이 담긴 '세 보이는 이름 리스트'가 공유되기도 했다. 택배 주문 시 혹시 모를 범죄에 노출될까 두려워 센 이름을 지닌 남성이 살거나 이런 이름을 가진 남성과 함께 사는 것처럼 보이기 위함이다. 이는 혼자 사는 많은 여성이 주거침입 등 각종 범죄에 불안을 느끼고 있음에 대한 반증이라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문제처럼, 1인 여성을 대상으로 한 범죄가 날이 갈수록 악화되고 있으며, 여러 수단을 통해 범죄를 저지르고 있다. 1인 여성들의 심리적 안정 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안전망을 구축해야 한다.

[사진자료] 신림동 원룸 사건

또한, 지난달 초 서울 강남구 논현동의 한 초등학교 인근 주택가에서 20대 여성 A씨가 퇴근길 어두운 골목을 홀로 걷다가 갑자기 튀어나온 괴한에게 성추행을 당했다. 가로등이 드문 드문 설치된 골목길이 어두워 A씨는 범인의 얼굴은커녕 어느 방향으로 도망갔는지조차 분간하기 어려웠다. A씨는 비명을 질렀지만, 인근 주민들은 습관처럼 커튼을 치고 있었고 내다보지 않았다. 100m 정도 되는 골목길엔 폐쇄회로 CCTV가 단 한 대도 없었다. 사건이 발생했다는 소문이 주변에 퍼졌지만, 사람들은 놀라지 않았다. 인근 분식집에서 일하는 박모(여·38)씨는 "학교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곳인데도 퇴폐 마사지 업소 등 유흥업소가 즐비한 동네"라며 "동네 주민이 성추행을 당해 분위기가 흉흉하지만, 평소에도 종종 있던 일 이라 다들 쉬쉬하고 마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이처럼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다양한 유형의 범죄들이 만연하고 있는 상황이고, 치안의 손길이 미치지 못하는 인근 주택가와 공원 등은 범죄 발생 가능성을 예측하고 있으면서도 무방비하게 방치되어있다. 따라서, 모든 여성들이 성범죄에 노출되어 있는 것에 대한 심각성을 인식함과 동시에 기존에 있던 성남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를 개정 함으로써 여성의 안전망을 구축해야 한다.

[출처] 조선일보

2. 현황 및 문제점

○ **사회 안전에 대한 불안도가 높은 여성**

2016 통계청 사회조사에 따르면 사회 안전에 대한 불안 비율을 조사한 결과 범죄발생에 대한 여성들의 불안 수치가 73.3%로 가장 높은 응답을 차지하였으며, 전반적인 사회 안전에 대해서도 여성의 50.9%가 불안하다고 느꼈다. 또한 여성 1인 가구의 사회 안전에 대한 인식에서도 매우불안 7.2%, 비교적 불안함 39%로 총 46.2%가 불안함을 느끼고 있었으며, 그 이유로는 범죄 발생이 37.2%로 제일 높았다.

[성별 사회 안전에 대한 불안 비율(2016)]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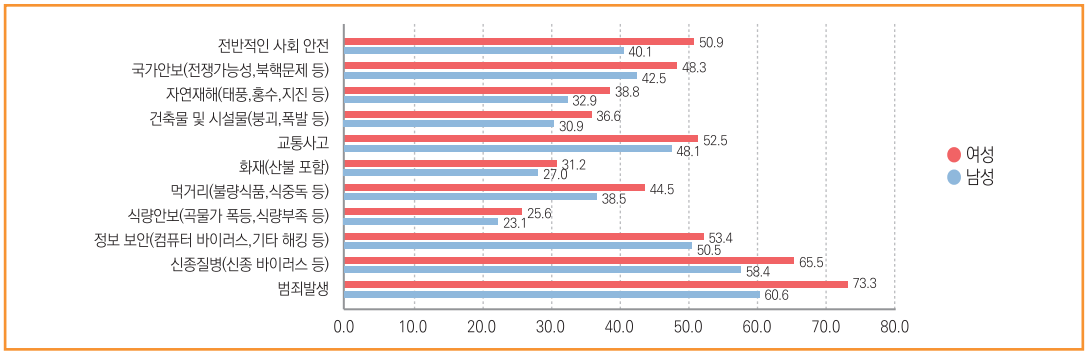

[사회 안전에 대한 인식도(2016)]

		여 성			남 성		
	계	안전	보통	불안	안전	보통	불안
전반적인 사회 안전	100.0	10.6	38.5	50.9	15.9	44.0	40.1
국가안보 (전쟁가능성,북핵문제 등)	100.0	17.8	34.0	48.3	21.8	35.7	42.5
자연재해 (태풍,홍수,지진 등)	100.0	18.6	42.6	38.8	22.9	44.2	32.9
건축물 및 시설물 (붕괴,폭발 등)	100.0	18.3	45.1	36.6	23.2	45.9	30.9
교통사고	100.0	9.3	38.2	52.5	11.2	40.7	48.1
화재(산불 포함)	100.0	17.8	51.0	31.2	20.5	52.6	27.0
먹거리 (불량식품,식중독 등)	100.0	15.9	39.6	44.5	18.9	42.6	38.5
식량안보 (곡물가 폭등,식량부족 등)	100.0	27.7	46.7	25.6	31.0	45.9	23.1
정보 보안 (컴퓨터바이러스, 기타해킹 등)	100.0	11.0	35.6	53.4	12.9	36.6	50.5
신종질병 (신종 바이러스 등)	100.0	7.8	26.6	65.5	10.9	30.7	58.4
범죄발생	100.0	6.6	20.1	73.3	12.0	27.4	60.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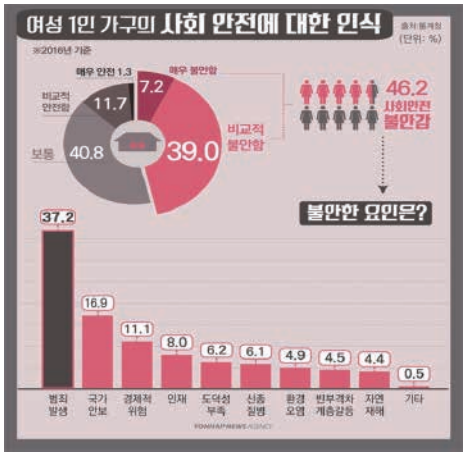

[출처] 통계청 사회조사(2016)

○ **2030 1인 가구 청년 여성의 불안전한 주거와 안전**

서울시여성가족재단에서 서울시에 거주하는 20~80대 1인 여성가구 1,8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생활실태 등에 대한 조사에서 1인 가구 2030 청년 여성 10명 중 4명 (36.3%)은 주거지 불안을 느끼며, CCTV, 방범창 등 안전시설 미비와 주거지 내부 계단, 복도 등 은닉장소가 불안의 주 원인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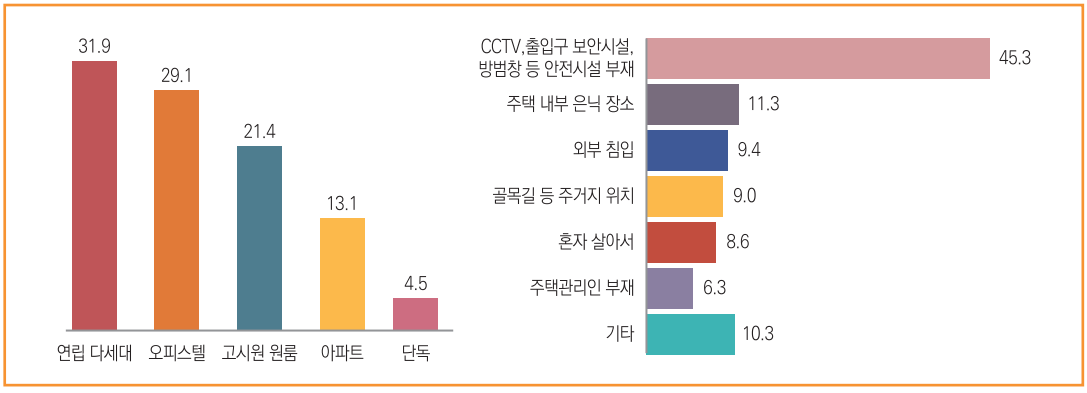

[출처] 서울특별시 홈페이지

○ **여성의 높은 범죄 피해율**

실제로 대검찰청의 강력범죄(흉악) 피해자 현황을 분석한 결과 여성이 남성보다 범죄에 더 쉽게 노출되어 있다는 것을 볼 수 있다. 즉, 여성이 남성보다 안전에 있어 더욱 위험하다는 신호이다. 여성의 범죄 피해율은 2010년대부터 2015년대까지 계속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며, 상당히 큰 차이가 있고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강력범죄(흉악) 피해자] (단위 :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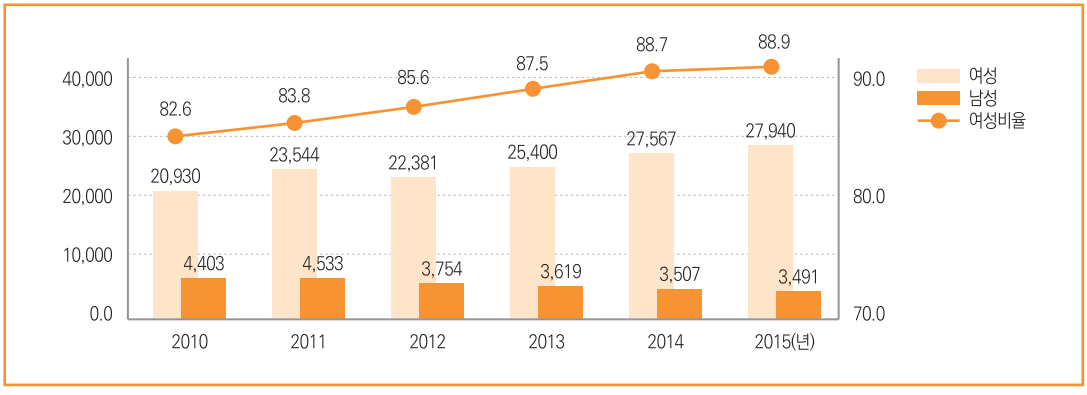

[출처] 대검찰청 범죄분석

○ **불법촬영 현황**

경찰청에 따르면 카메라 등을 이용한 불법촬영 건수는 2018년 기준 5925건이다. 성폭력 처벌법 14조에 따르면 상대방의 신체를 동의 없이 촬영하거나 해당 촬영물을 공유했을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하지만, 실제로 판결되는 형을 보면 턱없이 부족한 현실이다.

[불법촬영 발생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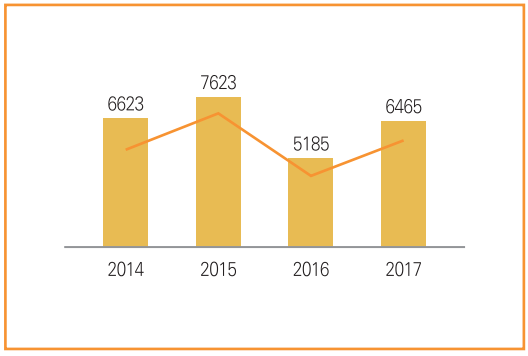

[출처] 2017 경찰통계연보

○ **스토킹에 무방비 상태로 노출된 1인 여성가구**

여성을 대상으로 한 스토킹 범죄는 2013년 312건에서 2015년 363건, 2018년 544건, 2019년 583건으로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며, 실제로 여성 1인 가구의 57%가 범죄 발생에 대해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다고 한다.
무려 10명 중 6명이 '불안감'을 안고 사는 것이다. 혼자 사는 여성을 대상으로 한 스토킹, 주거침입 행위는 그 자체만으로는 처벌이 경미하다. 폭행, 강도, 성폭력 등 추가적인 범죄가 벌어져야 강력한 처벌이 이뤄지고 있어 그 불안감은 가중될 수 밖에 없다.

[출처] 연합뉴스

3. 입법 제안

○ **제안내용**

- 여성의 안전한 생활을 위한 범죄 예방 환경 조성 사업 운영
  · 지하철 역 내 에스컬레이터에 반사경 안심거울 설치

[지하철역 안심거울 설치(잠실역, 복정역, 가락시장역)]

잠실역(반사경)	복정역(반사경)	가락시장역(미러시트)

· 1인 여성가구/원룸/주택 밀집가 등 미러시트 안심거울과 반사경 안심거울 설치를 통한 안심거울길 조성

안심거울은 부착된 거울을 통하여 뒷사람의 행동을
확인할 수 있어 불법촬영 및 범죄 예방이 가능하고,
범행 억제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음.

· 로고젝터 활성화 등

지하철역과 어두운 골목은 물론
성범죄 위험이 있는 공간에 로고젝터로 안심길을 조성하여
어두운 밤길을 밝히고, 로고젝터마다 고유번호가 있어
비상 상황 발생 시 지구대에 고유번호를 말하면
그 위치로 출동 가능하도록 구현

- 단지조성, 주택·건축 등에서 1인 여성가구 주거 안전 공간 평가

○ 「성남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개정

현행 조례	개정 조례(안)
제16조(주거단지 등) 시장은 단지조성, 주택·건축 등에서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평가하여 개선책을 수립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다양한 가족(대가족, 독신가족, 학생가족, 한부모가족, 다문화가족 등)을 위한거주 공간 2. 이웃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공간	**제16조(주거단지 등)** 시장은 단지조성, 주택·건축 등에서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평가하여 개선책을 수립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다양한 가족(대가족, 독신가족, 학생가족, 한부모가족, 다문화가족 등)을 위한거주 공간 2. 이웃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공간 3. 1인 여성가구 주거안전을 위한 공간
제17조(여성·아동 안전망 구축 및 운영) 시장은 각종 폭력과 위험으로부터 안전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아동·여성안전지역연대 사업을 통한 지역 안전망 구축 2. 범죄 및 위험 예방을 위한 주민 모니터링단 운영	**제17조(여성·아동 안전망 구축 및 운영)** 시장은 각종 폭력과 위험으로부터 안전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아동·여성안전지역연대 사업을 통한 지역 안전망 구축 2. 범죄 및 위험 예방을 위한 주민 모니터링단 운영 3. 여성의 안전한 생활을 위한 범죄 예방 환경 조성 사업 운영

4. 기대효과

○ 성폭행이나 성추행 등 성범죄를 예방하고 밤길 여성 및 행인의 범죄 불안감 해소 및 심리적 안정감을 가질 수 있다.
○ 몰카 범죄 등을 예방하고 성범죄로부터 안전한 안심도시의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다.
○ 단순히 여성이 살기 편한 거주 환경이나 도시 조성을 넘어 범죄 및 폭력으로부터 안전한 도시 설비 및 시설을 구축할 수 있다.

"오늘을 여는 주인공, 청소년입니다!"

제5대 성남시청소년행복의회

입법제안서

제5대 성남시청소년행복의회 정책연구

「성남시학생회연합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

학생회 연합 TFT 신가원 민경환 최경민 이동탁

1. 문제인식

○ **청소년의 정치적 의사표현의 한계**

청소년과 정치 참여의 거리가 멀었던 과거와는 달리, 2019년도 12월 국내 선거연령이 만 18세 이상으로 하향되는 공직선거법의 통과에 따라 청소년의 정치 참여의 길이 열리게 되었다. 이러한 대대적인 청소년 정치참여의 시작에 따라 이어졌어야 할 다양한 청소년의 참정권 행사 활동, 다시 말해 청소년이 청소년 소속, 참여 기구의 실질적인 주체로서의 활동은 커녕, 현재 청소년들의 정치적 의사표현은 억압되고 있다.

청소년의 정치적 의사표현에 대한 사회적 시선은 부정적이며, 선거관리 위원회의 규제 중심의 방침과 청소년 정치적 참여의 반대 입장인 교원단체는 청소년들의 정치적 의사표명을 향한 어두운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 현재 이러한 사회의 모습은 청소년정책 제안대회를 통한 청소년 의견수렴 방안 및 자치조직 정립과 같이 청소년 의사표명 창구의 필요성이 계속 제기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개선 방안이나 유의미한 정책적 성과를 위한 노력을 완전히 묵살하고 있음과 다름이 없다.

○ **청소년 민주주의 교육의 빈약함**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민주주의 교육은 청소년의 정치 참여로 나아가는 중요한 과정이라 할 수 있다. 현재 이러한 민주주의 교육은 대다수의 학교에서 이루어지고 있지 않으며, 진행되고 있는 경우 교육의 깊이와 학생들의 이해도는 상당히 빈약하다. 이러한 민주주의 교육의 빈약함을 보충하기 위해 학생회가 직접 교육에 관여하고 학생주도교육을 실천하는 학생주도수업 또한 중요성만 지속적으로 대두될뿐 실질적인 변화는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실질적인 민주주의 교육을 통해 학생민주주의의 중요성 강화를 이루어 학교 내에서 민주적 자치를 행사할 수 있을 것이며, 이는 학생들의 직접적인 학교 정책 현장에서의 관여에 도움이 된다.

현재 청소년의 주체적인 정치에 참여와 민주적인 의견 표출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을 때, 청소년 참정권을 더욱 강화 시키기 위해 각 학교의 학생회 사이 서로 간의 교류와 타 학생 회의 활동을 통한 배움으로 청소년의 정치 참여의 변화를 이루어내야 한다.

2. 현황 및 문제점

○ **청소년 의견 수렴 및 실현을 위한 실질적인 참여 기구의 필요성**

- 청소년의 기본권 강화

우리 사회에서 청소년의 시민적 권한은 대개 미성숙함을 이유로 한국사회에서 경시되고 있다.

청소년이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는 학교에서는 학교규칙을 통해 표현의 자유와 사생활의 비밀 보장에 관한 권리를 침해당하고 있으며, 학교 밖에서도 사회적 약자로서 노동 착취의 대상이 되는 등 자유롭고 자율적인 생활을 영위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또 청소년은 스스로의 권리를 적극적으로 변호할 수 있는 분위기나 연대를 통해 사회적 파급력을 발휘할 수 있는 인프라를 바탕하지 않고 있어 시민적 권리를 보존하는데 더욱 어려움을 겪고 있다.

- '소수'만 참여하는 청소년 참여기구

청소년 사회참여의 필요성과 요구가 갈수록 강조되고 있는 한편, 청소년의 기본권은 청소년의 정치적 역량에 대한 저평가, 청소년이 참여할 시간이 부족함 등으로 인해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 청소년 참여 기구에 대해 인식하고 참여하는 비율은 전체 청소년의 2%에 불과했다. 제도적으로 청소년의 참여를 보장하고 있으나 대개 단년 사업으로 운영되어 활동의 지속성이 부족했으며, 홍보 미비 등의 문제로 참여하는 청소년의 다양성이 부족했다.

[청소년 참여기구 운영 현황-성남시 중심]

	명 칭	역 할	성과 및 활동	정 원
1	성남시 청소년 행복의회	의회운영(상임·특별·윤리위원회, TF팀), 의제발굴, 정책연구, 입법제안, 예산심의 등	입법제안 및 반영 : 성남시 청소년 노동인권조례, 주민참여예산 청소년위원회 설치, 효성고 통학개선	35명
2	성남시 청소년 참여위원회	의견수렴 및 참여의장 운영, 청소년 정책 추진 및 이행 모니터링, 기획사업 추진, 정책제안 등	청소년 참여정책 및 사업 : 토크콘서트 주최, 청소년 참여예산제 진행	20명 내외
3	청소년 운영위원회	청소년 시설 운영 및 청소년 행사&프로그램 모니터링, 지역 내 다양한 참여활동 진행	각 지역구의 청소년운영위원회 교류 프로그램 진행, 시설장 간담회, 수련관 자문위원회 진행	20명 내외
4	분당지역 고등학교 학생회연합 BLU	분당지역 내에서 각 학교 별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캠페인, 지역 봉사활동, 청소년 행사 기획 등을 주관	차오름제, 어울림마당, 청소년 참여부스 및 행사운영, 3.1운동 및 환경인식 개선 등 캠페인 진행	제한없음 분당구 고등학교 만 해당

⇒ 대표성을 띤 참여기구로 운영되어, **소수만을 대상**으로 하며, 분당지역 고등학교 학생회 연합도 특정 지역구에만 국한 되어 운영되어 성남시 전체 지역을 포괄하고, **많은 청소년들이 참여하고 경험 할 수 있는 참여기구가 부재함.**

- 지역사회와 학교의 차이 : 학교 민주주의, 자치의 발전 가능성

학교 및 학교활동과의 큰 접근성은 사회적으로 약자이자 소수자인 청소년이 다수자의 입장을 가지게 되는 특수한 공간으로, 청소년의 권리에 대한 긍정적인 검토가 이루어질 수 있는 공간이다. 이런 학교의 성격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청소년의 참여기회를 확장시킬 수 있다. 이런 가능성은 2019년 제정된 경기도 학교자치 조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학교 청소년이 교육행정에 적극적으로 개입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다양한 권리와 참여 기회에 대해 명시하고 있으며, 청소년의 참여가 확장될 수 있는 충분한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다.

한편, 청소년의 91.5%가 학생인 지금 청소년이 겪고 있는 사회 문제와 관심을 가지는 정책 의제는 대개 교육과 학교 환경에 편중되어 있으며, 청소년의 이권에 적극적으로 관계 되어 있음에 따라 청소년의 관심과 참여를 기대할 수 있음은 물론, 실질적으로 청소년 권리를 개선하고 청소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학교의 학생참여기구를 활성화해야 한다.

행복의회에서 주최한 성남시청소년정책제안대회의 사례를 살펴보면 2018년 성남시 청소년 행복의회를 통해 발의된 정책 의제 13건 중 4건, 2018 제안대회 수상작 11건 중 3건, 2019년 성남시 청소년 정책제안대회를 통해 제안된 정책 본선 진출 10건 중 4건이 학교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정책이라는 점에서 전반적으로 학교 및 학교 환경 개선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 실효성 있는 청소년 대상 시민 정치 교육의 필요성

민주시민 교육상의 정치적 중립 문제에 있어 사회적 합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 현재, 선거연령 인하로 청소년의 참정권이 형식적인 일진보를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뒷바쳐 줄 시민 정치 교육은 적절히 제공되고 있지 않다. 따라서 기존의 [국가공무원법], [공직선거 법]에 위배되지 않는 한에서 실용적이며 효과적인 시민적 경험을 청소년들에게 제공할 필요가 있다. 학생 중심으로 운영되는 학생회를 강화하는 것을 통해 청소년들이 양질의 문제해결/합의 과정을 겪을 수 있을 것이다.

○ 사례
- 국내 사례

〈 경기도 학교자치 조례 〉

제4조(자치기구의 종류 등)
① 학교에는 자치기구로서 학생회, 학부모회, 교사회, 직원회를 둔다. 다만, 유치원, 통합학교, 소규모학교 등의 자치기구 설치에 대한 예외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② 학교의 장은 자치기구의 자치권이 훼손당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학교의 장은 자치기구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배분하여야 한다.

제5조(학생회)
① 학생회에는 학년별, 학과별, 학급별 학생회 및 그 대표로 조직되는 대의원회 등을 둘 수 있다.
② 학생회 정·부회장은 학생의 대표로서 학교운영위원회와 교무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제안할 수 있다.
③ 학생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학생 자치활동에 관한 사항
2. 학생 자치활동 예산 편성에 관한 사항
3. 학생 동아리 활동에 관한 사항
4. 학생의 학교생활에 밀접하게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학생들의 의견 수렴 및 교무회의와 학교운영위원회에 제안할 사항
5. 학생회칙의 제·개정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학교의 장에게 건의할 사항
④ 학생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학생회칙으로 정한다.
⑤ 학생회는 그 결정사항을 모든 학생에게 알려야 한다.
⑥ 교직원과 학부모는 학생회의 의사결정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2019년 11월 11일자로 공포, 시행된 경기도 학교자치 조례는 기존에 미비했던 학교 자치 관련 현행 법령을 보완하고, 현장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또한 학교자치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공하기 위해 제정되었다. 초·중등교육법 17, 30조를 근거로 한 기존의 법령은 학교자치에 관한 조직권한을 교장에게 위임하여 학교 청소년이 주체가 되어 능동적으로 활동을 꾸려나가는 모습과는 거리가 있었다.

- 해외 사례

	국가 및 단체	권한 및 지위	비 고
1	오스트리아 (Schülervertreter)	- 학교공동체회의 구성 : 학교 행사, 재판, 자율교과 과정 계획 조율 등	회의 운영방식 및 체계가 지정 되어있음,
2	일본 생도회 및 연합 (*사례: 센다이)	- 센다이 시 학생인권조례에 근거하여 단합을 통해 의사반영이고 청소년 의사표현 기구로서 학생회의 유용성 표출	
3	미국 (NatStuCo)	- 학교와 지역 사회에 봉사 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권한을 부여 - 학생들이 학교, 커뮤니티 리더십 및 의사 결정에 참여하도록 장려	

3. 입법 제안

○ **제안내용**

- **제안목적 :** 경기도 학교 자치조례를 근거로 한 학생회의 설치와 운영에 대한 사항을 정하며, 실질적이고 능동적인 학생 연대기구를 만듬으로 학생들의 목소리가 학교 현장에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한다.

- **제안내용**
  · 학생회 연합체의 설치 및 운영
    1) 현행 고등학교학생회연합의 체계를 정비하고 통합
    2) 관내 중·고등학교가 모두 소속된 학생회 연합을 구성, 성남시 내의 학생회에 자치권과 역량 부여
    3) 성남시 학생회연합의 구성 및 의결방식 규명
  · 대의적 권한
    1) 교장, 교육장, 시장 등과의 의사소통 방법, 창구 명백화

[학생회 연합 조직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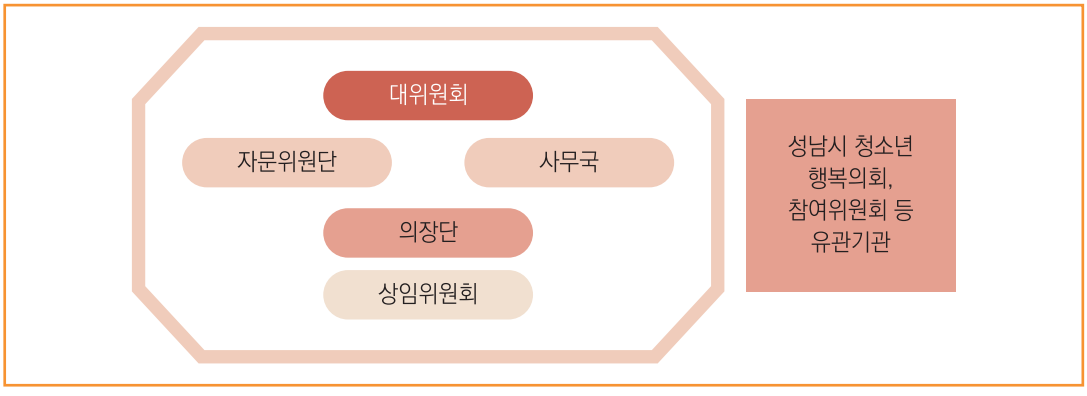

○ **『성남시학생회연합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초 중등교육법' 및 '유엔 아동 권리에 관한 협약', '경기도 학생인권조례'에 따라 성남시 소재 중등학교의 자치 및 참여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경기도 학교 자치조례'에서 정하는 학생회의 운영과 관내 학생회의 연합체인 성남시학생회총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는 성남시 내에 소재하는 '초 중등교육법' 제 2조의 중등학교, 제 60조의 3의 대안학교,
2. 제 55조의 특수학교를 의미한다. '학생'이란 제 1호의 학교에 재학중인 사람을 말한다. '학생회'는 '경기도 학교 자치조례' 제 4조에서 정한 민주적 보통선거를 통해 선출된 학생자치회를 말한다. 단, '성남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의 대표로써 선출된 학생자치회에 준하는 조직을 포함한다.
3. '학생회장'은 제 2조 4호의 회장이다.
4. '학생회장은 제2조 4호의 부회장이다.

제3조(회원의 자격)
① 성남시학생회총회(이하 '총회')의 회원의 자격은 다음과 같다. 성남시 내 중등학교에 재학중인 자, 민주적 절차를 통해 학교 내에서 대의적 권한을 위임받은 자
② 성남시 내 각 고등학교의 학생회장 및 학생부회장 보궐 시 학생회에서 권한대행을 선출할 수 있으며 연합의 의장단은 임시 회원으로서의 지위를 승인할 수 있다. 다만 학생회장 및 학생부회장의 부재 사유가 치유됨과 동시에 임시 회원은 그 지위를 상실한다.
③ 회원의 임기는 회원이 소속된 고등학교의 학생회의 임기를 따른다.

제4조(대의원회)
① 대의원회는 관내 학교 청소년에 대한 대의적 권한을 가진다.
② 대의원회 위원은 성남시 내 각 중등학교의 학생회장 1인 및 학생부회장 2인으로 한다.

제5조(의장단)
① 의장단은 의장 1명과 부의장 2명으로 구성하며 총회에서 선출한다. 당선자 결정은 과반수 이상 득표를 원칙으로 한다.
② 사무국은 의장단을 선출하기 위해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 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해서는 별도의 연합 규칙을 제정하여 이를 따른다.

제6조(상임위원회)
총회는 기본적으로 다음과 같은 상임위원회를 두며, 각 상임위원회는 그 소관에 속하는 직무를 행한다.
법제위원회, 교육위원회, 시설환경위원회, 생활인권위원회, 문화복지위원회, 교류위원회, 홍보위원회

제7조(정기회의)
① 총회의 정기회의는 매월 2회 이상 개최한다.
② 총회의 정기회의는 재적총회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정기회의에서는 각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안건에 대해 심의한다.
④ 정기회의에서 의결된 안건은 총회의 이름으로 관련 학교, 기관 및 단체에 송부하며, 입법청원이 필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법제상임위원회의 검토를 거쳐 총회의 이름으로 입법청원한다.

제8조(임시회의)
① 의장은 임시회의 집회요구가 있을 때에는 집회기일 3일 전에 공고한다.
② 임시회의에 상정되는 안건은 각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안건에 국한하지 않는다.
③ 임시회의에서 의결된 안건 중 긴급한 처리를 필요로 하는 안건은 회기 내에 관련 학교, 기관 및 단체에 송부할 수 있으며, 긴급한 처리를 필요로 하지 않는 안건은 다음 정기회의의 통과 안건과 함께 관련 학교, 기관 및 단체에 송부한다.

제9조(의견반영)
① 시장은 총회에서 의결된 안건을 시정에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하며, 정기회의를 통해 총회의 제안 반영 추이를 전달한다.
② 교육장은 총회에서 의결된 안건을 학교 행정에 적극 반영해야 하며, 정기회의를 통해 총회의 제안 반영 추이를 전달한다.

제10조(사무국)
① 총회의 활동을 지원하고 행정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총회에서 사무국을 운영한다.
② 사무국 임원의 자격은 각 학교의 학생회 산하 집행부 부장과 부부장이다.
③ 사무국장은 사무국 내부 회의를 통해 민주적인 방법으로 선출하도록 한다.
④ 사무국은 총회 본연의 의정활동에 개입할 수 없다.

제11조(유관기관)
① 총회는 각 호에 따른 청소년 참여기구들과 긴밀한 협력관계를 구성한다.
성남시 청소년 행복의회, 성남시 청소년 참여위원회, 관내 청소년 문화의 집, 동아리 연합, 기타 총회가 협력할 필요 있는 기관

제12조(자문위원)
① 총회는 총회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다양한 분야의 자문위원을 섭외할 수 있으며, 총회의를 통해 섭외 목록을 정한다.
② 자문위원의 임기는 1년이며 연임할 수 있다.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4조(운영규정) 총회의 세부 운영규정은 총회원이 자체적으로 의결하여 정한다.

4. 기대효과

○ 청소년의 정치적 기본권 강화
○ 학교 청소년을 위한 가까운 정책실현 창구가 제공
○ 청소년들에게 시민 교육/정치 교육의 기회가 제공
○ 학생들이 자치활동을 통해 권리와 의무에 대해 균형 잡힌 사고를 통해 책임과 자기 결정 역량을 함양
○ 의사표현의 자유를 실현하고 갈등을 합리적으로 해결하는 방법과 민주적인 의사결정의 기본 원리 등을 습득

“ 오늘을 여는 주인공, 청소년입니다! ”

제5대 성남시청소년행복의회

입법제안서

MEMO

MEMO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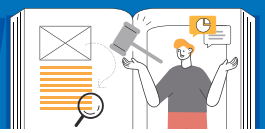

제5대 성남시 청소년행복의회 입법제안서

인　쇄 : 2020년 12월
발　행 : 2020년 12월
발행처 : 성남시청소년행복의회, 성남시청소년재단
주　소 : 성남시 중원구 둔촌대로 332(우13404)
문　의 : 031) 729-9000
http://www.snyouth.or.kr

사전 승인 없이 자료집 내용의 무단복제를 금합니다.

" 오늘을 여는 주인공, 청소년입니다! "

제5대 성남시청소년행복의회

입법제안서

성남시청소년행복의회
Seongnam city Youth Happiness Council

성남시청소년재단
SEONGNAM CITY YOUTH FOUNDATION

http://www.snyouth.or.kr
성남시 중원구 둔촌대로 332 (우13404) ☎ 031-729-9000